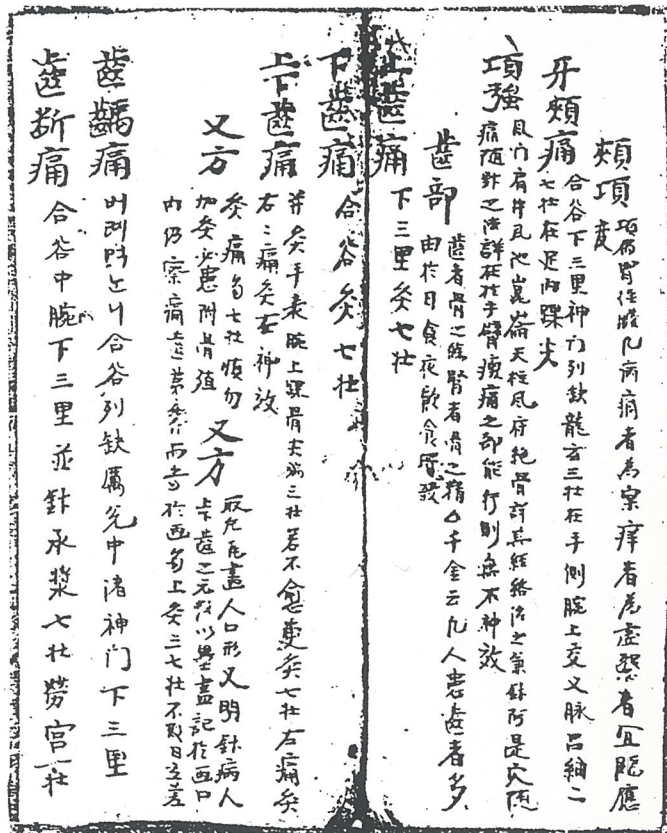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09

제28권 제1호 통권 30호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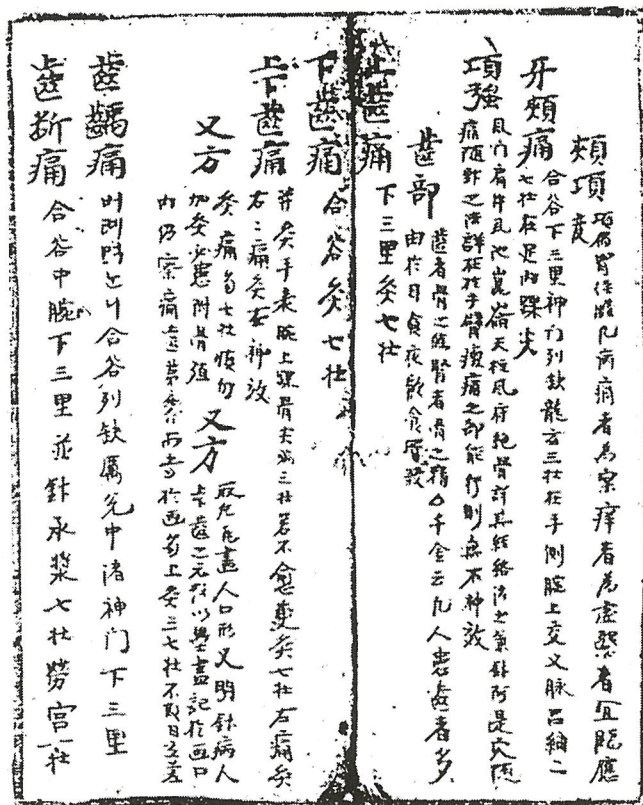
1960년 10월 7일 창립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09

제28권 제1호 통권 30호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60년 10월 7일 창립

표지 설명 : 허임(許任)의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허임은 하양(河陽)인으로서 선조(宣祖)와 광해군(光海君, 1568~1623) 시기 침술(鍼術)의 명의. 三等공신으로 영평현령(永平縣令), 양평목사(楊平牧使), 부평부사(富平府使), 남양부사(南陽府使) 역임. 인조(仁祖) 22(1644)년에 『鍼灸經驗方』 1권을 편저(編著)함.

(이 한수 중신명예회장 제공)

권 두 언

회장 배 광식

2008년 말에 희망하고 믿었던 대로, 2009년 한해는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해간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11월에 열리게 될 3차 G20 정상회의는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도록 유치하였고, 400억 달러(47조원)에 달하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정부 발주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사후관리를 현대건설·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참여한 한전 컨소시엄이 수주하였다. 삼성물산이 참여한 높이 828m의 세계 최고 높이의 부르주두바이[부르주칼리파(Burj Khalifa)로 개명] 건물이 완공되었고, 또한 약 41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효자로 의료 서비스 부문도 한 몫 할 날이 올 것이다. 제조부문에서 중국 등의 맹렬한 추격을 받는 우리로서는 서비스 분야로 산업중심이 옮겨가야하고, 그 일환으로 의료 산업화는 앞으로의 중점산업개편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한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적이고 공공적인 의료로 계속 유지해가면서, 고부가가치를 지니고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자유시장경제에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고 키워가야 한다. 의료산업에 자유로이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영리법인을 도입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해외 의료기관의 설립 등 의료개방은 반드시 선행해야 할 일이니, 공공성과 복지로서의 필수요소가 손상이 될까 너무 염려하고 주저하다가는 의료산업화에 큰 차질이 올 뿐더러 결과적으로는 전체의료의 낙후로 공공의료의 후퇴도 가져올 수 있다. 고급 의료로 선택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수요충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국내에서는 확일적인 치료밖에 받을 수 없어 해외로 나가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국부유출이 되고 있다.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필수요소는 계속 유지, 발전시켜나가되, 선택의 여지가 있는 다양한 의료분야도 인정하고 개발 발전시켜 국내의 고급 수요도 충족시키고, 해외의 의료수요도 유치해와 국가를 부강하게 해야 한다. 치과분야에서도 의료산업화 추세에 선진적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에서 1977년 의료보험 도입당시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상대적으로 심한 저평가를 받아온 근관치료부문이 여전히 정당한 상대평가로 바로잡힐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어, 치아보존 위주의 치료가 되지 못하는 의료왜곡에 일조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NiTi 파일의 실비 재료대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치과내부에서 전문의 문제가 여전히 올바른 방향의 공통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을 찾기 위한 공청회를 갖는 등 역사 찾기도 관심을 기울인 한 해였다. 공청회를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을 넓히는 데는 약간의 소득이 있었으나, 아직 더 많은 관심과 논의를 통해 깊은 지식에 바탕을 두고 대다수가 흔쾌히 찬성하는 기원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눈앞의 이익과 개인의 득실을 떠나, 역사의 추이를 올바로 감지하고, 미래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공생의 길을 찾으려 노력해야 할 때이다.

차 례

권 두 언	회 장 1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의 민족의식	
-- 『형설기념』 사진첩 머리말을 중심으로	신 재의 5
산업근로자 구강검진제도의 변천과정	변 영남 20
북한이탈주민의 구강상태 및 진료현황	신 덕재 26
특집 :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기념일에 대한 공청회	
개회사	배 광식 38
축 사	이 수구 39
주제발표	
1. 치협 창립기념일 제정경위	변 영남 40
2.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일 복원	신 재의 42
3. 치협과 서치의 연혁에 대한 소고	임 경빈 46
지정토론	
1. 현행 창립기념일에 대해	조 영수 49
2.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에 그 법통 연원을 두어야 하는 까닭	김 평일 56
3. 후학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연원에 대해 드리는 다섯 가지 질문	이 주연 59
녹취록 (주제발표, 지정토론, 자유토론)	61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일본 동창회 — 故 데지마 아기라 회장 一 週忌를 맞이하여	김 회경 68
1960년 ‘치과의사 면허소송’ 사건	조 영수 72
학회활동	82
임원명부	83

Contents

Presidential Address	1
National consciousness of the Kyungseong Medical College graduates in 1924	
- Focused on the 『In the Memory of Hyungseol』 photo album preface	Shin, Jae-Eui 5
Progress of oral health examination scheme for industrial workers	Byun, Young-Nam 20
A Survey of North Korean defector's oral condition and treatment	Shin, Duck-Jai 26
Special Feature : Public Forum on the foundation day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Opening Address	Bae, Kwang-Shik 38
Congratulatory Address	Lee, Soo-Ku 39
Presentation	
1. Detail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DA foundation day	Byun, Young-Nam 40
2. Restoration of the KDA foundation day	Shin, Jae-Eui 42
3. Notes on the history of the KDA and Seoul Dental Association	Im, Kyung-Bin 46
Discussions	
1. Current KDA foundation day	Cho, Young-Soo 49
2. Why should KDA find its origin from Hansung Dentist's Association	Kim, Pyung-Il 56
3. Five questions on the history of the KDA	Lee, Joo-Yeun 59
Recording notes	61
Japanese Alumni Association of Dental College,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Hee-Kyung 68
'Dentist license lawsuit' case, 1960	Cho, Young-Soo 72
Activities of the Academy	82
List of board members	83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의 민족의식

-- 『형설기념』 사진첩 머리말을 중심으로1)

신 재의2)

1. 머리말

항일운동은 의병이나 광복군으로 대표되는 무장투쟁과 실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애국계몽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3·1운동 후 애국계몽운동으로 국내에서는 실력양성을 위하여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건설운동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3)

애국계몽운동자들의 기본 인식은 제도권 교육을 받는 데에 있어 “어떻게 일본교육을 받느냐”가 아니라 “실력양성이 필요하다”이었다. 이것은 식민지 지배체제의 동화가 아니라 새로운 길의 모색이었다. 이것은 동화와 각성하는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었다.4)

1916년 4월 1일 근대의학교육기관의 하나인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총독부의원 의학강습소에서 분리·개편된 전문학교였다.5) 이 보다 먼저 1908년 10월 24일 조선정부는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의학교, 광제원, 대한적십자병원을 통·폐합하여 의료의 중심기관으로 대한의원을 설립하였고6), 이 대한의원에 교육부를 두어 의학 교육을 하였다.7) 1910년 9월 30일 대한의원이 총독부의원이 된 후, 1911년 2월 20일 이 총독부의원 교육부는 의학강습소로 개편된 바 있었다.8)

경성의학전문학교는 4년제 관립학교로 연건동에 위치하였다. 학생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같이

1) 본 학회 2009년도 제4차 학술집담회(2009년 11월 17일)에서 발표.

2) 본 학회 명예회장.

3) 김영호, 「3·1운동에 나타난 경제적 민족주의」,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650쪽.

오천석, 「3·1운동 이후의 민족교육」,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749쪽.

4) 오성철, 『1930년대 한국 초등교육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5) 「칙령 제80호,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제」, 《총독부관보》, 1916년 4월 1일자.

6) 1876년 개항 이후 서양의 근대의학이 들어오고, 근대의학교육이 되고,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은 이러하다. 1877년 2월 11일 일본 거류민을 위한 제생의원(濟生醫院)이 개원되었고, 이곳에서 1879년 9월 지석영(池錫永)은 서양의술인 종두법(種痘法)을 배우기도 하였다. 1885년 조선정부는 기독교 선교사 알렌(H. N. Allen)과 함께 “백성을 보살피기” 위하여 제중원(濟衆院)을 설립하였고, 1886년 3월 29일 제중원의학교를 부설하기도 했다.

1894년 9월 26일 제중원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에비슨(O.R. Avison)에게 운영권이 이관되었다. 이것은 서세동점(西勢東漸)이 조선정부에게 영향을 준 사례이기도 하였다. 조선정부 의학교의 필요성은 1896년 12월 《독립신문》과 1898년 7월 만민공동회와 1898년 11월 7일 지석영(池錫永)의 청원서에서 보여진다. 11월 9일 조선정부는 지석영(池錫永)의 의학교 설립 요구 청원서를 채택하고, 1899년 3월 24일 의학교 관제를 반포하였다. 조선정부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조선의 의료기관은 의학교와 광제원과 대한적십자사병원이 있었다. 1908년 10월 24일 조선정부는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통·폐합하여 대한의원을 설립한 바 있었다.

7) 《황성신문》, 1908년 11월 15일자.

8) 「조선총독부령 제19호, 조선총독부의원부속의학강습소규칙」, 《총독부관보》, 1911년 2월 20일자.

공부하였다.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임상실습은, 1928년 5월 28일 총독부의원이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로 개편되기까지, 총독부의원에서 실시하였다.

일제강점기 관(官)이나 관립(官立)의 의미는 부정적 면이 있었다. 관립 학교 졸업생 중에는 잘못된 가치관이나 압력, 회유에 의해 친일한 자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장세운은 경성제국대학에 관한 연구에서 졸업생 중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지배 엘리트로 편입되어 활동'한 것을 밝힌 바 있었다.⁹⁾ 그러나 '관립 학교를 졸업하였다'는 것만으로 친일을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와 기창덕, 이충호의 연구에서 보여 주는 바는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은 앞의 견해와는 다른 것이었다.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은 민족의식이 뚜렷하여 일제의 침략적 폭거와 야만적 만행에 민족적 자존과 독립의 의지를 불태운 이들이 적지 않았다. 민족적 자존심과 독립된 나라를 위하여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차별교육 시정을 요구하는 학생이었고, 구보타 타케시(久保武)의 망언에 분노하는 젊은이였다.¹⁰⁾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는 한국인 49명과 일본인 21명을 졸업시켰다. 1924년은 3·1운동 후 민족적 자존심과 독립된 나라를 바라는 마음이 고조된 시기였다. 『형설기념』 사진첩은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 중 한국인 학생 49명만의 사진첩이다. 이 사진첩은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의 한 사람인 김상후(金尙厚)의 가문에서 보관되어 온 것이다.¹¹⁾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의 『형설기념』 사진첩의 머리말은 “식민지 지배체제의 동화가 아니라 새로운 길의 모색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글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사진첩에서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의 의식으로 형제의 사랑, 차별 교육, 젊음의 포부, 사진첩 출판의 역사적 의의, 1924년 전후의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행동 상황, 그리고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의학교육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위치변화상황까지 밝혀보고자 한다.

2.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의 민족의식

『형설기념』 사진첩은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 중 한국인 학생 49명의 사진첩이다.¹²⁾ 『형설기념』 사진첩은 49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49명의 졸업생이 49쪽의 사진첩을 내었다는 것은 49명의 뜻을 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49명의 졸업생 중에 김동익(金東益), 김명학(金明學), 이선근(李先根), 이종륜(李鍾倫), 박병래(朴秉來), 백승진(白承鎭), 오대현(吳大鉉), 최상채(崔相彩), 허신(許

9) 장세운, 「일제의 경성제국대학 설립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집, 1992. 347쪽.

1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1978; 奇昌德, 『韓國近代醫學教育史』, 아카데미아, 1995; 李忠浩, 『韓國醫師教育史研究』, 國學資料院, 1998.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 『紺碧遙かに』. 1974.

11) 『형설기념』 사진첩의 소장자는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 김상후의 후손이다. 그의 고향은 평안북도 용천군(龍川郡) 양광면(楊光面) 선화동(善和洞) 30번지이다. 김상후의 이름은 그의 부친이 지었다고 한다. 끝의 후자는 후(后) 밑에 토(土)를 한 글자로 후(厚)의 고자(故字)였다. 이로 보아 그의 집안은 한학(漢學)에 능한 가문으로 추정된다. 1930년경 김상후는 평안북도 박천(博川)에서 현미경과 오토바이를 갖추고 동신의원을 개업하였다. 금석학에 관한 역사에도 조예가 있었고, 광복 후에는 건국청년회 문화국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김상후의 후손으로 아들 김평일은 치과의사이자. 『형설기념』 사진첩은 복사되어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12) 경성의학전문학교 제10회 졸업생: 甘濟龍, 姜翊駿, 奇能權, 金光鑽, 金鼎相, 金東益, 金明學, 金尙厚, 金星獻, 金永七, 金鍾夏, 金顯默, 權斗經, 張丙燁, 趙漢英, 盧永福, 李先根, 李鎭九, 李心鍾, 李鍾鎭, 李亨桓, 李熙遇, 李喜在, 林成燦, 林在苑, 明桂植, 朴東烈, 朴來完, 朴利欽, 朴秉來, 朴時英, 朴鏞洛, 朴元涉, 朴弼赫, 裴秉斗, 白承鎭, 吳大鉉, 吳東一, 尹斗憲, 尹致魯, 車瑩模, 崔相彩, 崔溶武, 崔六洲甲, 崔昌善, 河祐鏞, 許 信, 許丁默, 洪承漢 (49명)

信) 등은 의학박사를 받는 등 의학 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¹³⁾

『형설기념』 사진첩 3, 4쪽에는 되도록이면 한글로 쓴 국한 혼용문의 머리말이 있다. 이 머리말에는 한국인만의 『형설기념』 사진첩을 만든 내용을 담고 있다. 5, 6쪽에는 한국 전도(全圖)에 출신지역 위에 졸업생 이름이 있고, 『형설기념』 사진첩에 어울리게 눈꽃이 그려 있고, 경성의학전문학교 마크가 희미하게 보인다.¹⁴⁾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의 민족의식은 머리말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졸업과정에서 어려움이 표출되었다. 졸업은 형설의 공으로 조화된 선을 같이, 기묘한 탑과 같았다고 하였다.

제 曲調 제 각금 알이우것만은 이것을 綜合하면 調和된 旋律을 일우고
한개 한 개의 돌이것만, 싸아노코 보면 奇妙한 塔을 만들 수 있다.¹⁵⁾

졸업생들은 슬프고, 기쁜 마음을 가졌고, 입학 후 의학의 이론과 실재를 배우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전국에서 모인 다른 50여명이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입학하여 4년을 보내었고, 또 다시 봄이 되어 졸업하게 되었다. 의학을 공부한 4년은 슬프고 즐거운 일들이었다고 하였다.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은 실력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필요에 의하여 의학을 공부하나, 진정으로 바라는 민족적 자존심과 독립된 나라를 바라는 마음을 감추고 있었다. 학교를 “무대(舞臺)”, 학생을 “배우(俳優)”, 의학 공부를 “모의극(模醫劇)” 이라 표현하고 있다.

五十餘名の 俳優들을 한 舞臺에 끌어냈고,
시침 똑딱고 地球는 太陽을 네 번이나 돌았다.
또 다시 네 번 재 눈이 녹고 꽃이 피고 여름이 살아지고 새가 울냐고 한다.
四年 前에 開幕되었든 模醫劇은 숲은 場面 우섭은 句辭 가초가초 서거 노여 잇음이
할모니 잇는 旋律이 울림 갖고 技巧있게 싸아노흔 塔과 갖지 안느냐!¹⁶⁾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은 서로 형제의 사랑을 가졌다. 1,460일이나 되는 많은 날을 몸과 마음이 서로 화합했으니 한 부모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으나 형제와 같았고,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수록 형제의 사랑은 깊어지게 되었다.¹⁷⁾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은 차별교육으로 “넷 어머니”라 부르고 있는 것은 독립된 나라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지난날의 의학교를 생각나게 하기도 하였다.¹⁸⁾

13) 奇昌德, 『韓國近代醫學教育史』, 아카데미아, 1995. 164-169쪽.

14) 『형설기념』 사진첩의 다른 쪽은 표지, 속지, 교사, 총독부위원, 기초의학교육으로 6개 과목, 임상실습은 10개와 1개의 실, 졸업생 49명과 고인이 된 2명의 동기생의 모습이 있다.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직원 41명의 명단과 경성의학전문학교 제10회 졸업생 한국인 49명의 명단과 주소가 있다.

15) 『형설기념(螢雪記念)』 머리말.

16) 『형설기념(螢雪記念)』 머리말.

17) 『형설기념(螢雪記念)』 머리말.

18) 대한제국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대한제국의 의료기관은 의학교와 광제원과 대한적십자사병원이 있었다. 1908년 10월 24일 대한제국은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통 · 폐합하여 대한의원을 설립하고, 이 대한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정책을 편 바 있었다.

心術 만흔 庶母에게 때때로 罪업는 구박을 받고 불상한 외롭은 兄弟들
넷 어머니 심각하고 머리를 맞대고 울어본 적이 몇번이며¹⁹⁾

경성의학전문학교 같은 관립 학교는, 사립학교와는 다르게, 학교의 목표가 일제를 위한 것이었고,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이 일본인이 많았다. 때문에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은 이러한 일제의 목표와 구성원을 쉽게 만나게 되었고, 충돌하고, 차별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지난날의 의학교를 생각하게 되었다.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서의 교육은 식민세력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피식민 집단의 저항을 극소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911년 8월 공포된 조선교육령 제2조에는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규칙에 따라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고 하였다. 이 방침으로 경성의학전문학교 규칙과 1916년 4월 1일 훈령에도 “국가의 기대에 따르게” 하였다.²⁰⁾ 1922년 2월 6일 이후 일제는 제2차 교육령에 의해 ‘문화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²¹⁾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은 재학 시에 일제에 의해 차별 교육을 받았다. 1916년 4월 1일 경성의학전문학교로 분리·개편되었다. 이 때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한 일본인 학생은 중학교 5년을 다녔고, 한국인 학생은 고등보통학교 4년을 졸업하였다. 때문에 1918년 8월 13일 일본인 학생을 위한 특별의학과를 설치하였다.²²⁾ 또한 한국인 학생은 〈시간표-갑〉, 일본인 학생은 〈시간표-을〉로 구별하여 차별 수업을 하였다.²³⁾ 1920년 8월 8일 한국인 학생은 차별 없는 수업을 요구하였으나 처벌되기도 했다.²⁴⁾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서 중등교육 과정을 차별화 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거족적으로 봉기했던 항일투쟁이었으며, 일제에 의하여 침탈되었던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독립을 되찾기 위한 일대 시위운동이었다.²⁵⁾ 민족적 자존심과 독립된 나라의 의학교육을 바라던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은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경성의학전문학교 11회 졸업생 현규환(玄圭煥)은 증언하고 있다.

3월 1일, 독립선언문과 함께 함께 태극기를 후암동 일대에 뿌리고, 곧장 파고다공원으로 가려다가 만세를 부르고 나오는 인파와 종로통에서 합류했어요. 얼마 안 되어 일본순사에게 연행되어 종로경찰서로 끌려갔어요. 그대 보니 백인제 선생도 연행되어 왔더군요. 백인제 선생은 그때 경의전의 학생대표로 활약했었어요.²⁶⁾

19) 『형설기념(螢雪記念)』 머리말.

20) 「조선총독부령 제27호 경성의학전문학교규정」 제1조 2항 ; 「조선총독훈령 제16호」 경성의학전문학교장에게 보내는, 교수할 때 주의를 요하는 사항에서 수신(修身)은 칙어에 취지에 기본을 두라고 했다.

21) 오천석, 「3.1운동 이후의 민족교육」,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744쪽.

22) 「칙령 제313호,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계증개정」, 《총독부관보》 1918년 8월 19일자.

23) 「조선총독부령 제83호, 경성의학전문학교규칙증개정」, 《총독부관보》 1918년 8월 19일자.

24) 《毎日申報》, 1920년 8월 9일자.

25) 한우근,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15쪽.

26) 「한국의학의 100년사」, 《의사신문》, 1972년 6월 5일자.

이렇게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은 3·1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3·1 운동 때 구금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이 서울에서 전체 구금된 학생 152명중 31명이었다. 이는 구금된 학생의 약 20%에 해당하는 숫자이고, 경성의학전문학교 한국인 학생의 6명 중에 1명이 구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⁷⁾ 3·1운동 이후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은 크고 작은 스트라이크로 항일 운동을 하였다. 경성의학전문학교 3회 졸업생 이면재(李冕載)는 증언하고 있다.

싸우더라도 우선 공부나 하고 싸우자는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자주 동맹휴학을 했어요. 2학년이 되면서 일인 학생 25명이 편입해 오더만요. 이거 될 일입니까.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지요. 이래서 4개월을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지냈어요.²⁸⁾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일본인 학생이 많이 편입하게 되었다.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사이에는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경성의학전문학교 한국인 학생은 “외롭고”, “목이 마를수록”, “구차할수록”, “고독할수록”이라고 망국의 한을 노래하고 있었다.

各 사람이 다 외롭고 그 全体가 또 외롭았으나
그래도 밋고 의지할 대는 우리 兄弟 서로 썬
목이 마를수록 물에 對한 渴望이 더 깊고
구차할수록 돈에 對한 欲求가 만흔 것처럼
우리는 孤獨할수록 더욱 우리 끼리의 愛情이 깊혀져를 것이다²⁹⁾

27) 李忠浩, 『韓國醫師教育史研究』, 180쪽.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경성전수학교(관립)	4	5	3	·	12
경성의학전문학교(관립)	10	9	5	7	31
경성공업전문학교(관립)	4	9	1	·	14
경성고등보통학교(관립)	3	5	9	5	22
사립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3	·	·	1	4
사립연희전문학교	3	2	1	1	7
사립배재고등보통학교	3	1	2	3	9
사립휘문고등보통학교	1	1	·	2	4
사립보성법률상업학교	·	8	5	2	15
사립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1	1	2	·	4
이화학당	·	1	1	·	2
정신여학교	·	1	·	1	2
불교중앙학교	1	1	·	·	2
경신학교	·	·	·	·	학년불명3
국어보급학관	·	·	·	·	동 1
중등학교	·	·	·	·	동 2
사립조선약학교	·	·	·	·	동 3
사립중앙학교	·	·	·	·	동 6
사립선린상업학교	5	5	1	5	16
	1	7	·	·	8
계	39명	56명	30명	27명	152(15)

3·1운동 때 구금된 서울의 학교별 학생 수

주 : 조선총독부 騷擾事件報告旬報二(1919.4.20)

28) 『한국의학의 100년사』, 《의사신문》, 1972년 3월 27일자.

29) 『형설기념(螢雪記念)』 머리말.

1921년 5월 26일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은 일본인 교수에 의해 민족 차별을 받기도 했다. 구보타 타게시(久保 武)의 망언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해부실의 두개골 한 개가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京城醫學專門學校에서는 再昨日(6월 1일) 下午에 그 학교 안 第一講堂에서 선생과 학생이 격투를 하다시피 한 일이 있는데, 사실이 생기기는 지난달 26일(木) 하오에, 1年級에서 해부학의 강의를 마치고, 解剖室에서 해골의 實物을 구경하는데, 解剖室은 원래 좁은 방이므로 학생 전부가 다 들어가지 아니하고 특별히 志願하는 사람 중에서 本科 다섯명, 聽講生 여자 1명, 特別科 4명, 합계 10명이 했는데, 그 이튿날 금요일에 이르러 解剖 선생 久保교수가 교실에 들어와서 解剖室에 있는 頭蓋骨 한 개가 없어졌으니 원일이냐 하며 대번에 朝鮮人 학생인 本科學生들을 의심하는 낯빛으로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가져간 것이니 내어놓으라」 하므로, 학생들은 기가 막히어서 「그러한 일이 없다」 하였는데, 선생은 다시 「너희들 朝鮮 사람은 원래 解剖學上으로 野蠻에 가까울 뿐 아니라 너희의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정녕 너희들 중에서 가져간 것」 이라고 하며, 아무 증거도 없이 朝鮮學生에게만 향하여 좋지 못한 말을 많이 하였다 한다.³⁰⁾

구보타 타게시(久保 武)는 해부실의 두개골 한 개가 없어진 것으로 너희들 조선 사람은 원래 해부학상으로 야만에 가까울 뿐 아니라 너희의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정녕 너희들 중에서 가져간 것이라고 민족 차별을 하였다. 총독의 진행 과정에서 학교의 해결 방법도 일방적인 민족 차별을 보였다. 1921년 6월 6일 학생 9명에게 퇴학과 나머지 185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6월 7일 194명의 한국인 학생 전원은 퇴학을 요청하기도 했다.³¹⁾ 총독이 심각해지자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된 서울의 교우회와 학부형은 타협의 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6월 14일 총독 사이토 미노루(齋藤實)는 해결의 실마리를 보였고, 6월 28일 전원 등교 통지가 배달되므로 끝나게 되었다.³²⁾

등어리 때려서 박그로 쏘차널때 젓먹든 힘을 모아 반항(反抗)한 적 멧 차례(次例)냐!!³³⁾

에서와 같이 이러한 민족차별에 대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의 항거는 모든 힘을 다 모았던 것이었다.³⁴⁾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은 민족적 자존심과 앞으로 독립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지금(只今) 이 글을 쓰는 지금(只今)은” 속에 앞날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글을 쓰는 지금은 언제나 서로 圓滿하게 만날지 期約지 못하고³⁵⁾

30) 《동아일보》, 1921년 6월 3일자.

3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46-52쪽. 구보타 타게시(久保 武)의 망언에 관한 기록이 잘 정리되어 있다.

3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51쪽.

33) 『형설기념(螢雪記念)』 머리말.

34) 『형설기념(螢雪記念)』 머리말.

35) 『형설기념(螢雪記念)』 머리말.

“살(肉)과 혼(靈)”을 노래하던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은 언젠가는 육신이 죽겠지만, 혼은 살아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슬프지 않겠느냐 하며 기쁜 미래 즉 민족적 자존심과 독립된 나라를 소망하고 있음이 담겨 있었다.

나날이 살과 살이 서로 부딪치고 콧과 콧이 呼應하였으니
비록 한 쪽 肉身이 나사 써나 재 되겠으니
넷 일을 싱각든지 뒤 일을 바라보든지 엇지 슬으지 안을소냐³⁶⁾

이러한 민족적 자존심과 독립된 나라에 대한 열망은 감상적 비애 향락에 말을 멈출 수 없다고 하였다.

감상적(感傷的) 비애(悲哀) 향락(享樂)에 말을 멈출 수 없다.
돌려 생각하니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었다.³⁷⁾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은 조국의 강토를 개척할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一萬三千万里나 되는 廢墟의 재 맛은 누구의 입김으로 새 文化가 일터이며 二千萬의
荒涼한 心圖을 누구 손으로 開拓될 터이냐³⁸⁾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은 민족적 자존심과 독립된 나라를 위한 젊음의 포부로 가득 차 있었다.

동맥(動脈) 속에는 선홍색(鮮紅色)의 피가 쭉놀고,
동공(瞳孔) 안에는 형형(炯~)한 광휘(光輝)가 번적이고,
폐장(肺臟)에는 씩~한 기류(氣流)가 흐르고 있다
추수(秋收)할 곡식(穀食)이 만듦수록 추수군(秋收軍)의 맘이 더 깃분 것 갓치
예지(銳知 理論兜), 이기(利器 實際刀), 양심(良心 眞實胃)
자못 희열(喜悅)과 용기(勇氣)로 충만(充滿)함도 맛담이 그러할 것이다.³⁹⁾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은 출판의 역사적 의의를 알고 있었다. 지금 졸업생이 “맛보는 기쁨과 슬픔을” 오랫동안 이야기 할 것은 이 책뿐이라 하였다. 출판의 역사적 의의를 말하고 있었다. 언젠가 민족적 자존심과 독립된 나라를 찾고, 젊은 시절의 희열과 용기를 보여주는 이 책에 담긴 내용을 이야기 할 것이라고 하였다.

36) 『형설기념(螢雪記念)』 머리말.

37) 『형설기념(螢雪記念)』 머리말.

38) 『형설기념(螢雪記念)』 머리말.

39) 『형설기념(螢雪記念)』 머리말.

생명의 燭불이 다라갈 때 수염을 희날니고 턱땀 해안즌 어린 孫子和 갓치
 시울 진 눈고리에 맑은 이슬이 매첫다가 오목한 甁에 소회(笑回)을 지을 그때
 감개(感慨)가 엇더할소냐⁴⁰⁾

3.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위치 변화

경성의학전문학교는 대한제국 의학교의 맥을 잇는 의학 교육기관이었다. 대한제국의 의료기관은 의학교와 광제원과 대한적십자사병원이 있었다.⁴¹⁾ 1908년 10월 24일 대한제국은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통·폐합하여 대한의원을 설립하였고, 의학 교육은 이 대한의원에 교육부를 두어 실시하였다.⁴²⁾ 대한의원은 설립 후 대한의원을 진료, 교육뿐만 아니라 중심으로 의료정책을 행함으로서 의료의 중심기관이 되었다.

이 대한의원 1910년 9월 30일 대한의원이 총독부의원이 된 후, 1911년 2월 20일 이 총독부의원 교육부는 의학강습소로 개편하였다.⁴³⁾ 1916년 4월 1일 총독부의원 의학강습소는 경성의학전문학교로 분리·개편되어 대한제국의 의학교처럼 독립된 의학교육기관이 되었다.⁴⁴⁾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임상실습은 분리·개편된 후에도 총독부의원에서 실시하였다. 3·1운동 후 민족적 자긍심이 고조된 시기인 1920년과 1921년에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 운동이 있었으나 일제는 허가하지 않았다.

경성에 대학을 설립하려는 기운에 따라 경성의전을 단과대학으로 승격하려는 계획이 현실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임시교육조사의원회의 설치가 구체화 되어 온 1920년(다이쇼9년) 말에는, 약간 이르게 <동위원회에 자문과 함께 경성의전을 의대로 승격해야만 한다. 1922년(다이쇼11년)에 실현해야 함. 이와 함께 동교 교수에는 이미 일본 여러 학교에서 물색 중이다.>라는 동경전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동시에 시가 총독부의원장은 <승격은 당연>하고 <경성의전을 대학제도로 확충하는 건은, 전임 시가원장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후계자로서 그 계획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고, 조선학계의 현상을 거울삼아, 빨리 대학으로 승격하려는 긴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예산 그 외의 수속에서 1922년(다이쇼11년)도가 되지 않으면 실현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술한 것도 보도되어 있다.⁴⁵⁾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단과대학으로 승격시키려는 운동이 임시교육조사의원회의와 시가 키요시(志賀

40) 『형설기념(螢雪記念)』 머리말.

41) 『관보』 1900년 4월 28일자; 『황성신문』, 1899년 5월 29일자; 『대국신문』, 1899년 5월 30일자. 대한제국은 내부 직할로 병원을 설립하였다. 내부의 직할이었기에 내부병원이라 불렀다. 그 후 광제원이라 개칭되었다. 광제원은 1899년 4월 24일 반포된 「병원관계」(칙령 제14호)와 5월 8일에 반포된 「병원세칙」(내부령 제16호)에 의하여 6월 1일에 개원하였다.

『관보』 1899년 3월. 28일자. 의학교는 학부 직할의 내의 각종 의술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다. 1899년 3월 24일에 반포된 「의학교 관계(醫學校 官制)」(칙령 제7호)에 따르면 의학교는 내외 각종 의술을 전문으로 교수하는(제1조), 3년 연한의(제2조), 국고로 지원하는 교육기관이었다(제3조).

『황성신문』 1905년 10월 10일자. 대한적십자사병원은 궁내부에서 관장하는 병원으로 1905년 10월 15일에 개원하였다.

42) 『황성신문』, 1908년 11월 15일자.

43) 「조선총독부령 제19호, 조선총독부의원부속의학강습소규칙」, 『총독부관보』, 1911년 2월 20일자.

44) 「칙령 제80호,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계」, 『총독부관보』, 1916년 4월 1일자.

45)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 『紺碧遙かに』, 8쪽.

潔) 총독부의원장에 의하여 확인되어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대학으로 승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은 내용은 매일신보(毎日申報)에도 보도되고 있었다.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의과대학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이미 교수를 물색하고 있다더라.⁴⁶⁾

1921년(대정10년) 6월 9일부터 동경에서 개최될 전국의학전문학교장 회의에서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승격에 관한 협의를 할 것이다.⁴⁷⁾

한편 1921년 7월 미국선교사 에비슨(Avison, Oliver R)는 준비된 사립대학으로 치과의전문학교 설립 계획이 있었으나 일제는 허가하지 않았다.

齒科醫 專門學校 어비신씨가 오십만원을 닌여 설립한다고 히

세부란스 의학전문학교장 어비신(魚佐信)씨는 요선에 아즉스지 치과의(齒科醫)의 전문 양성소가 업슴을 유감으로 심성각하고 오십만원을 닌여 동병원닉에 삼기년 졸업 명도의 치과의전문학교 설립의견을 신청중이라는바 전혀 요선인의 자태를 위하고자 훔이요 닌디인으로도 희망하는 자가 잇스면 텡강성으로 입학을 식함 작명이라는 대 당국의 의향으로도 요선에 이와 갓흔 기관이 업슴으로 불원간 허가를 하고자 혼다는 바 요선인의 자태를 위하야 이와 갓흔 큰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므우 감사흔 일이라 하겟더라.⁴⁸⁾

또한 1922년 조선교육령의 개정에 따라 민립대학을 세우려했으나 일제는 결코 용인하지 않았다. 1922년(다이쇼11년) 조선교육령의 개정으로, 조선에도 대학교육이 인정되면 조선인의 손으로 대학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보다 먼저 1920년(다이쇼9년) 6월23일, 이미 보호조약에 반대해서 사임한 전 참정대신 한규호, 전 독립협회 부회장 이상재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교육회를 조직했다. 이는 조선사회의 근본적 개조에는 다수의 인재양성이 불가결하고, 조선인의 손으로 교육 문제의 해결에 나서자는 것으로 교육령의 개정과 함께, 1920년 11월 이상재는 3.1운동의 민족대표의 한 사람인 이승훈 등 47명과 발의해서 민립대학기성회 준비회를 조직했다.

1923년(다이쇼12년) 3월말, 조선교육회 회두에 취임한 이상재의 사회로 조선민립대학기성회 창립총회가 종로의 중앙청년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모인 사람은, 여자4명을 포함해 약 500명에 달했다.

결의된 민립대학설립안은, 계획을 3기로 나눠 제1기로서 토지5만평(25만엔), 법. 문. 경. 리 4과의 교사 10동, 강당 1동(42만엔), 제설비(13만엔), 도서관(20만엔), 교수양성(50만엔), 운영기금(250만엔)에 요하는 경비를 400만엔, 제2기로서 공과신설, 이과충실에 300만엔, 제3기로는 의과. 농과 신설에 400만엔을 예정해, 총액 1000만엔의 모집목표액을 세웠다. 이 기금을 모으기 위해 전기 기성회는, 경성에 중앙본부를 부. 군에 지방 지부를 두어 통상회원(1엔 이상), 특별회원(100엔 이상), 찬조회원(1000엔 이상)을 모아, 목표달성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같이 일반 민중의 기금에 의하기 때문에 이름도 민립대학이라 한 것이다.⁴⁹⁾

46) 《毎日申報》1920년 12월12일자,

47) 《毎日申報》1921년 6월 5일자.

48) 《毎日申報》1921년 7월 5일자.

49)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 『紺碧遙かに』, 6쪽.

이상재 등은 조선교육회를 조직하고, 이승훈 등 47명과 함께 민립대학기성회를 만들고, 기금까지 모았으나 일제는 허가하지 않았다. 일제는 대학설립을 “민족운동을 볼 때 이는 심히 위협시되는 것”이라 하였다. 경성제대 설립 시에 조선총독부 학부과장 마쓰무라(松村松盛)는 학교의 설립과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었다.

일찍이 경성제국대학의 설립 시에 내가 설립에 관한 용무로 東京에 갔을 때 구보다(久保田) 樞密院 고문관에게 호출되어 同大學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바, 그는 조선에는 법과대학의 필요가 없지 않은가? 오히려 그보다는 농과대학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는 민립대학 설치운동이 꽤 맹렬하여 기부금의 모집을 시작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선교사들도 사립대학 설립의 계획이 있었으며 이들 대학은 주로 법률·정치·경제 등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상 이 때 만약 官立의 법과대학을 세우지 않으면 조선에서 법률·정치·경제 등의 最高敎育은 이들 私學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당시 (조선인의) 민족운동을 볼 때 이는 심히 위협시되는 것이라고 답변하여 이해를 얻었던 일도 있다.⁵⁰⁾

이와 같이 일제는 “민족운동을 볼 때 이는 심히 위협시되는 것”이라 하여 민립대학을 허가하지 않고 대신 제국대학을 세웠던 것이다. 1924년 5월 2일 경성제국대학 관제가 발표되고, 예비 교육 과정인 예과가 개설되었다.⁵¹⁾ 이후 교육은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들의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로 진출이 많아지고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자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정일천(鄭壹千)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1927년 4월 성대(城大)의학부의 개설을 앞두고 미리부터 경의전(京醫專) 교수들의 진출이 많아지고 의전(醫專)측 교수진의 약체화가 눈에 띄게 현저해 갔다. 진출예정 교수들은 대개 몇 해 동안의 구라파 특히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이를 흔히 양행이라고 불러 기초교수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사태를 의전(醫專)측으로서는 그대로 좌시할 수가 없는 중대사이기 때문에 재학생의 총의로 학교당국에 우려를 표시하고 혹은 진정서를 내고 결국은 맹휴로까지 몰고 갔었다. 그러나 결과는 무의로 끝나고 그야말로 이른바 개정방침대로 의학교수진의 거의 전부가 제대(帝大)로 진출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제대(帝大)측은 남은 많은 TO를 일본 전국에서 유능한 교수들로서 충원되었다.

이와 반면에 경의전(京醫專)측은 일본각지에 산재한 의학교수준으로 전략된 느낌마저 들었다. 당시의 제대(帝大)는 일본의 경성제대를 비롯하여 京都·大阪·九州·東北·北海道 제대에 이어 7번째의 일본유수의 제국대학을 설립할 개정방침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 규모가 경의전에 비할 수 없이 컸었다.⁵²⁾”

50) 松村松盛, 「變り行」「朝鮮の姿」「朝鮮統治の回顧と批判」, 朝鮮新聞社, 1936, 200쪽.; 장세운, 「일제의 경성제국대학 설립과 운영」 353쪽에서 재인용,

51) 「칙령 제103호, 경성제국대학관제」, 《총독부관보》 1924년 5월 2일자.
장세운 「일제의 경성제국대학 설립과 운영」, 361쪽.

즉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들의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로 전출이 많아지고 교수진의 약체화가 눈에 띄게 현저해졌다. 때문에 경성의학전문학교 재학생은 학교당국에 우려를 표시하고 혹은 진정서를 내고 결국은 맹휴로 갔다고 하였다. 1926년 4월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은 동요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러 방안을 논의 끝에, 1928년 5월 28일 경성의학전문학교의 부속의원을 설치하도록 했다.⁵³⁾ 1926년 6월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상 의사의 양성에 기초를 둔 교육을 실시하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는 의학 연구에 주력하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다.⁵⁴⁾ 1926년 5월 1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의 수업은 시작되었다. 1928년 5월 28일 경성제국대학 관제가 개정됨에 따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총독부위원의 시설·기재 등과 상당수의 교수진이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로 가게 되었다.⁵⁵⁾ 1928년 11월 30일 경성의학전문학교의 부속의원은 규장각 부지였던 소격동으로 이전 개원하게 되어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다.⁵⁶⁾

그러나 광복 후 1946년 8월22일 법령 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 설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시에 경성의학전문학교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와 합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경성의학전문학교는 부속의원으로 12년 동안 사용해 왔던 조선총독부위원을 경성제국대학의학부에 내어주며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설립을 일제가 “민족운동을 볼 때 이는 심히 위험시되는 것”이라 볼 때 일련의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의 민족적 자존심과 독립된 나라를 바라는 학생 운동의 결과라 추론할 수도 있다. 즉 3·1운동 이후 일련의 충돌은 일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4. 맺음말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 한국인 졸업생 49명은 『형설기념』 사진첩을 만들었다. 저자는 『형설기념(螢雪記念)』 사진첩 머리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의 애국계몽운동 차원의 민족의식을 살펴보고, 그 민족의식이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은 실력양성 필요에 의하여 의학을 공부하였으나, 민족적 자존심과 독립된 나라를 바라는 마음을 감추고 있었다.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서의 교육은 구조적인 차별교육이었고, 차별교육은 민족적 자존심과 독립된 나라의 의학교육을 바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의학교육을 바라던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은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크고 작은 스트라이크는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항일 운동이었다.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은 구보타 타게시(久保 武)의 민족 차별에 모든 힘을 모아 항거하였다. 경

52) 鄭壹千, 「醫療半世紀」, 《醫協新報》, 1977년 6월 13일자.

53) 「칙령 제97호, 조선총독부제학교관제중 개정」, 《총독부관보》, 1928년 6월 1일자.

5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60쪽; 佐藤剛藏 著, 李忠浩 譯, 『朝鮮醫育史』, 형설출판사, 1993. 128쪽.;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는 기초의학, 임상의학에서 일본의 국립대학 의학부에 비해서 나쁠 것이 없는 구상을 가지고 생겨났다고 하였다.

55) 「칙령 제96호, 경성제국대학관제중 개정」, 《총독부관보》, 1928년 6월 1일자.

56) 「부고시 제438호, 경성의학전문학교부속의원 위치급개원년월일」, 《총독부관보》, 1928년 11월 27일자.

부록 2 : '머릿말' 풀이글 (*괄호 안의 소재목은 편의상 저자가 붙임).

- (선율과 답) 모든 곡조가 제 각각 알이우것만은 이것을 종합하면 조화된 선율을 이루고
한 개 한 개의 돌이지만, 쌓아놓고 보면 기묘한 답을 만들 수 있다.
- (입학과 졸업) 운명의 장난인지 전세의 인연인지 모르나,
13도 마을 마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마음이 다르고 얼굴이 같지 않은
50여 명의 배우들을 한 무대에 끌어 넣고,
시침 똑 따고 지구는 태양을 네 번이나 돌았다.
또 다시 네 번째 눈이 녹고 꽃이 피고 얼음이 사라지고 새가 울려고 한다.
4년 전에 개막되었던 모의극은 슬픈 장면, 우스운 구절을 간직하고 새겨 놓여 있음이
하모니 있는 선율이 울림 같고 기교 있게 쌓아놓은 답과 같지 않느냐.
막이 닫히고
다시 머리에는 이론의 관을 쓰고 손에는 실제 칼을 잡고 가슴에는 진실의 갑옷을 입고
4면 8방으로 각각 제 갈 길을 걸으려 할 때 우리는
슬퍼할까? 기뻐할까?
- (형제의 사랑) 하루 밤에도 만리답을 쌓는다 하거늘 일천사백육십 날을
나날이 살과 살이 서로 부딪치고 마음과 마음이 호응하였으니
한 부모의 뱃속에서 나오지야 앓았을망정 그 사이 연결됨이 형제와 무엇이 다르리!
- (차별 교육) 심술이 많은 서모에게 때때로 죄 없는 구박을 받고 불쌍하고 외로운 형제들
옛 어머니 생각하고 머리를 맞대고 울어본 적이 몇 번이며
등허리 때려서 밖으로 쫓아낼 때 젖 먹던 힘을 모아 반항한 적이 몇 차례나!!
- (깊어지는 형제의 사랑) 각각의 사람이 다 외롭고 그 전체가 또 외로웠으나
그래도 믿고 의지할 대는 우리 형제 서로뿐,
목이 마를수록 물에 대한 갈망이 깊고
구차할수록 돈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처럼
우리는 고독할수록 더욱 우리끼리의 애정이 깊어졌을 것이다.
- (졸업과 이별)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언제나 서로 원만하게 만날 지 기약하지 못하고
비록 한 쪽 육신이 생겨나 떠나 재 되겠으니
옛 일을 생각하든지 뒷 일을 바라보든지 어찌 슬프지 않을쏘나.
- (반 전) 그러나 다시 한번 돌려 생각하자
아녀자가 아닌 우리는 감상적 비애향락에 말을 멈출 수 없다.
- (조국의 현실) 일만삼천만 리나 되는 폐허의 재 맛은 누구의 입김으로 새 문화가 일 것이며
이천만의 황량한 마음을 누구의 손으로 개척할 것이냐.
- (젊음의 포부) 우리의 동맥 속에는 선홍색의 피가 뛰놀고
우리의 동공 안에는 형형한 광휘가 번쩍이고
우리의 폐장에는 짙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추수할 곡식이 많을수록 추수군의 마음이 더욱 기쁜 것 같이
우리가 건설하고 개척하고 개조할 가을이 풍부하니
예지와 이기와 양심을 가진 우리 가슴,
자못 희열과 용기로 충만함도 마땅히 그러할 것이다.
- (출판의 역사적 의의) 지금 우리가 맛보는 기쁨과 슬픔을 죽는 날까지 이야기할 자는 적은 이 책뿐이다.
생명의 촛불이 다해갈 때 수염을 휘날리고 턱 밑에 앉은 어린 손자와 같이
우리의 삼월 봄을 속속들이 그려주는 이 책을 들고
시울 진 눈가에 맑은 이슬이 맺혔다가 오목한 뺨에 미소를 지을 그 때
우리의 감회가 어떠할쏘나!!

- 1924년 3월

Abstract

National consciousness of the Kyungseong Medical College graduates in 1924
- Focused on the 『In the Memory of Hyungseol』 photo album preface

Shin, Jae-Eui

In 1924, the 49 Korean graduates of Kyungseong Medical College made the 『In the Memory of Hyunseol』 photo album. Here the writer analyzed the preface of the 『In the Memory of Hyunseol』 photo album which introspected the national consciousness of the Kyungseong Medical College graduates and its influence on the Kyungseong Medical College.

The Kyungseong Medical College students were required to study medicine; however, as they progressed, the education that they received caused them to realize the need to band together and free the country from the Japanese Imperialis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was enormously discriminatory at its basis. Contrary to the Japanese belief, it caused more desire among the Korean students to join in a national consciousness for independ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Korean medical education. The students from the Kyungseong Medical College aggressively participated in the Samil (1 March) Independence Movement and continued to contribute to the repeated regional and national movements as an expression of their eagerness for independence.

All the Korean students of the Kyungseong Medical College also strongly resisted the na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 students committed by Kubota Takeshi. The graduates of the Kyungseong Medical College came to an accord for national independence. They were well aware that there were many ways to contribute to their country and people as medical professionals. The majority of the Kyungseong Medical College graduates assessed this In the Momory of Hyungseol』 photo album as the evidentiary literature depicting their efforts and courage of their generation. The Kyungseong Medical College was later decreased in its influence and power. It is considered that the diminished power was caused by the strong self esteem and unceasing eagerness for national independence of Korea by those Kyungseong Medical College students.

The students of the Kyungseong Medical College were completely and spiritually armored with their national consciousness. Even though they studied in clinical medicine at a Japanese colonial public school under Japanese education system, their self consciousness was strengthened by the discrimination committed by Japanese Imperialism and pushed them to earn their own independent nation.

Keywords : Kyungseong Medical College, National consciousness, Japanese Imperialism, Independence

산업근로자의 구강검진제도의 변천과정¹⁾

변 영남²⁾

1. 서론

1960년대 이래 급속한 산업화 정책 추진 과정에 근로자들의 업적을 간과할 수 없다. 공업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등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했었다³⁾. 그 후 성장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생활의 균형과 복지 사회건설을 지향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근로자들의 건강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었고 특히 구강검진의 경우 초창기인 1960년대에는 생산직근로자들이 일년에 한번 받는 정기건강진단에서조차 구강검진은 제외되어 있어 한심한 시절이 있었다. 이는 치과의사들의 책임도 있겠으나 정책당국이나 일반의사들의 무책임이 더 크다 하겠다. 1970년대에 이르러 사업장 특수 건강진단이 제도화 되었다. 1981년 이르러야 산업안전보건법⁴⁾이 공포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구강검진은 역시 제외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전에 건강진단실시 근거법령인 근로기준법⁵⁾에서는 “의사”에게만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⁶⁾이 1992년 3월 25일 제정되면서 근로자건강진단은 의사(齒科醫師포함)가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齒科醫師 포함이라는 내용이 삽입되었다.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의 건의와 노력이 밑거름이 되었다. 이에 근로자구강검진제도의 전반적인 변천과정과 치과의사가 참여하게 된 경위를 연구, 보고한다.

2. 근로자 구강검진 및 구강검진의 역사

근로자에 대한 검진제도는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실시되었고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 이 법에 근거를 두고 검진이 실시되었다. 1960년대 건강검진의 종류, 대상, 항목, 주기 등이 규정 되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진단이 부분적으로 실시되었으나 구강검진은 포함되지 않았다.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으나 근로자 건강진단 항목 중에는 구강검사가 제외되어 있었다³⁾.

1) 본 학회 2009년도 제2차 학술집담회(2009년 5월 19일)에서 발표.

2) 본 학회 명예회장

3) 노동자구강검진사업단, 노동자 구강건강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보고. 1991

4)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1981

5) 노동부, 근로기준법, 1953

6)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992

1992년 3월 21일 계속적인 치과의사들의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100조 3항에 ‘근로자건강진단은 醫師(齒科醫師)가 실시하도록 齒科醫師 포함’이란 내용이 비로소 삽입되었다⁴⁾. 또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기준(제17조)이 개정되어 특수건강진단 항목에 5개 酸취급근로자 치아 및 지지조직에 대한 치과검사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어렵게 구강검진이 제도화되었다.

1995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이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고 국민의료보험법에 의거해 검진기관의 요건 즉 의료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이 법제화되었다. 1999년도에는 40세미만 지역세대주에게도 건강검진이 확대되어 대부분 성인이 건강검진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0년에는 지역과 직장조합이 통합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2008년에는 모든 건강진단 관련 법령을 아우르는 건강검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2009년 3월 22일 국가건강검진기본법이 개정되어 소정의 교육을 받아 국가검진기관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에 한해 모든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⁷⁾.

3. 구강검진에 관련된 관계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구강검진 실시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고 1982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으나 치과 의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1992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치과의사가 포함되었고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시키기 위하여 채용시 건강검진에 일반상병 구강검진이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특수건강검진에 불화수소, 염화수소, 염소, 질소, 황산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직업 구강상병 검진이 포함되기 시작해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기위한 산업구강보건제도가 시작되었다.

2) 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구강검진

1995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근로자 구강검진이 실시되었으며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이 노동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었다. 1995년 성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다 구강검진이 영유아 구강검진, 성인구강검진, 생애전환기 구강검진(만40세, 만60세), 학생구강검진으로 구분되었다.

3) 구강검진 삭제

2002년 4월 15일 건강검진 실시기준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성인)구강검진의 경우 검진수검율이 저조하고 형식적이라는 이유로 삭제했다. 이에 대해 치과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구강검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장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부당성을 제기한바 건강검진실시 기준의 재개정을(2002.5.1) 통해 구강검진이 다시 포함되게 되었다. 서치 53차 대의원총회 회무보고(2003)에 의하면 당시 서치 崔楠燮부회장은 근로자 구강검진에 관한 보고서에서 2002년 치협 집행부 교체 시기에 구강검진이 삭제되는 위기에 놓여 있어 25개 구회장 동참으로 보건복지부에 항의 방문을 통해 원상복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⁸⁾¹¹⁾.

7) 보건가족부, 국가건강검진법 2009

8)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사, 증보판, 2005, 313쪽

4) 2009년 국가건강검진법 개정

2009년 3월 22일, 국가건강기본법이 개정되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구강검진기관 지정을 받도록 해 검진체계를 정비했다. 종전은 신청제로(국민건강보험법 고시) 구강검진은 모든 치과병의원에서 당연 지정제로 가능했으나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으로 지정된 구강검진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모자건강법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 ③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구강검진
- ④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 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
- ⑥ 산업안전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 ⑦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 ⑧ 암관리법에 따른 건강검진
- ⑨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⑩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검진중 제8조에 따른 국가검진위원회에서 정하는 건강검진.

4. 치과의사 검진참여 과정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치과의사는 포함되지 않아 구강검진은 제외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한국치정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치과의사들의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86년 8월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신민철)는 당시 치무이사 邊榮男의 주창으로 '근로기준법 제 71조 근로자 건강진단자를 醫師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령의 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도 근로자 건강진단 항목 중 구강검사가 제외되어 있어 개정'하여 줄 것을 협회심사(36, 45-272호)로 노동부에 건의 조치하였고 관계 부처 및 민정당 정책입안자들과 접촉하여 치협의 건의사항이 관철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나 산업보건계 의사들의 반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⁹⁾.

1987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회장 윤홍렬) 건의문¹⁰⁾중 치과인력의 적정수급 문제 중 보건사회부 및 지방행정부서에 구강보건담당관을 임용하여 행정 원활을 기할 것과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실에 치과진료실을 설치하도록 추진요망 등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건의문을 제출했으나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구강검진은 없었다는 사실을 착각한 듯하고 협회로부터 건의문에 대한 회신은 86년부터 구강검사가 제외되어 있어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건의 추진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1991년 한국치정회(회장 金東順) 기획위원 邊榮男 등은 노동부 실무자인 산업보건계장 李永文

9)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사, 1995, 725쪽

10)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사, 1995, 719쪽

(현 산업보건협회 사무총장)과 평소 교분이 있어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공감하여 오던 중에 직업병 예방대책을 수립한 노동부 산업보건과장 김성중(현 경제사회발전과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도움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이 시작하게 되었으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원진레이온 직업병 발생사건을 계기로 수립된 직업병 예방종합대책이 1991년 6월 14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됨에 따라 종합대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근로자 건강진단 항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안을 수립하던 중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치정회 등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1991년 8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조사한 원진레이온 역학조사와 1991년 9월 노동자 구강검진사업단 구성, 1991년 10월 6개 도시 29개 사업장 1,911명에 대한 구강검진 및 설문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건의하였고 치과의사가 건강진단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법령에 반영토록 노력했다. 그러나 대부분 의사들로 구성된 노동부 직업병심사의위원회에서 치과의사 검진 참여를 적극 반대하여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해 미결 상태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직업병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한 노동부 산업보건과장 김성중은 치과의사 근로자건강진단 참여를 고심하면서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부분 2교대 작업이고 주휴일은 월2회 휴무이므로 근로자가 조기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 치아가 손상된 사례”가 있음을 직업병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이들을 설득하여 결국 근로자 僱用時 건강진단과 유해인자 酸취급 근로자에 대한 치아검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1992년 3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100조 3항) 및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기준 개정(제 17조)을 통해 특수건강진단항목에 특수 화학물질 중 불화수소 등 5개 유해인자 취급자에 대해 치아 및 지지조직에 대한 치과검사가 실시케 되었다¹¹⁾. 5개 유해인자는 0.1%불화수소, 황산, 질산, 염산, 염소 또는 동(同)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를 말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윤홍렬, 부회장 정재규, 사무국장 최동철, 한국치정회 기획이사 변영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한영철을 비롯한 임원등 많은 치과의사와 노동부 산업보건계장 이영문과 노동부 산업보건과장 김성중 등 여러분들의 긴 세월동안 노고의 결정체로 이루어진 것이다.

5. 산업구강보건과 관련된 치과의사 단체¹²⁾

1)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1980년대 들어 산업재해와 직업병실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고, 1987년 10월 연세 민주치과의사회 창립, 1988년 4월 청년치과의사회 창립, 1988년 7월 15세 소년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하면서 산재추방운동이 확산되었다. 그 후 전국에 푸른치과의의원(구로, 광주, 군포, 인천, 성남, 부산) 개원, 1989년 4월 26일 청년치과의사회와 연세민주치과의사회 통합으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설립,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원들의 원진레이온 노동자 역학조사 참여(1991.8)와 결과발표, 노동자 구강검진사업단 구성(1991.9) 6개 도시 29개 사업장 근로자 1,911명에 대한 구강검진 및 설

11) 이영문, 제도개선에 따른 치과의사검진참여, 산업보건협회

12) 조영수, 산업구강보건의 역사와 전망 1998

문조사(1991.10-12) 등 적극적인 활동은 자연스럽게 구강보건협의회 출범으로 이어졌다.

2) 산업구강보건협의회(1992-1997)

산업구강보건협의회는 1992년 4월 25일 창립되어(회장 한영철) 이후 만 5년 동안 한정된 인원과 빈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연 12~15차례의 운영위원회 개최, 산업구강보건협의회 회지 연 1회 발행(1992-1996 총5권), 매년 3-4차례 총15회(27연제)의 정기 학술집담회 및 회원 연수, 제41차 종합학술대회(1996.6) 발표 등 자발적이고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염산 등 특정화학물질 취급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의 치아 및 주위조직에 대한 구강검진 전문가회의(1994.6.17. 노동부)에서 연2회 치과검사 의무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였고, 1995년 보건예방산업에 '구강검사'가 채택되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구강건강진단사업의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2회(1995.11, 1996.10)에 걸쳐 주관하였다.

그러나 치과계의 구강검진체계 미비 및 대학 차원의 연구 부족, 전문적인 진단치료기관이나 산업보건계와의 관계 부재, 정책과 제도 미비 등 모든 면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동력은 소진되었으며 1997년 사단법인이라는 새로운 틀이 갖추어지면서 임의단체 산업구강보건협의회는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다.

3) 사단법인한국산업구강보건원(1997-현재)

1997년 3월 19일 발기인대회 이후 1997년 5월 3일 창립된 한국산업구강보건원은 노동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고, 우리나라 산업구강보건 분야의 독보적 조직으로 조사연구, 학술활동, 학술대회 개최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제 1기 (1997.5-) 이사장 김종배, 총무이사 한영철
- 제 2기 (2000.6-) 이사장 문혁수, 총무이사 김현덕
- 제 3기 (2003.6-) 이사장 김종배, 총무이사 김현덕
- 제 4기 (2006.6-) 이사장 김광수, 총무이사 이흥수
- 제 5기 (2009.4.18) 이사장 김광수, 총무이사 최종호

설립발기인대회는 1997년 3월 19일(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강당에서 개최되었고 창립총회는 1997년 5월 3일(토)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설립발기인 대표 김종배 교수의 개회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기택 회장의 축사(정재규 부회장 대독), 한국노동보건연구소 양길승 원장의 격려사가 이어졌고 김광수 박사의 설립 취지안 낭독이 있었다. 안건으로 정관 채택,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¹³⁾.

社團法人 한국산업구강보건원 설립취지문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실태가 심각한 정도

13) 한영철, 사단법인 한국산업구강보건원설립허가신청서, 산업구강보건협의회 1997

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근로자의 구강건강은, 기업과 정부의 관심이나 제도적인 뒷받침보다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작업환경의 유해인자가 인체와 만나는 첫 관문이 구강이며, 구강내에 발현되는 제 증상을 통해 직업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구강건강은 중요합니다. 산, 당분, 중금속등에 의해 유발되는 직업성 구강병이나 악안면영역의 산업재해 등은 산업보건의 주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방적 관리는 물론 실태파악조차 미비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사업장 치과진료실이나 사업장 구강보건관리자와 같은 공공부문의 치과의료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근로자들이 치과진료를 받으려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1992년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중 산취급근로자에 대한 구강건강진단이 의무화된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와 기업의 무관심, 제도자체의 취약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집단구강검진을 통한 사업장근로자의 구강건강실태 파악, 구강건강교육 및 상담, 직업성 구강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산업구강보건관련제도의 정비, 바람직한 산업구강보건관리 및 정책 등, 정부, 기업, 학계 모두가 합심하여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장근로자의 구강건강증진은 국민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구강보건문제에 전념할 산업구강보건 전문인력과 실천주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社團法人 한국산업구강보건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1997. 3. 19

발기인 일동

참고문헌

1. 노동자구강검진사업단, 노동자 구강건강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보고 1991
2. 노동부, 근로기준법, 1953
3.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1981
4.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992
5. 보건가족부, 국가건강검진법 2009
6. 조영수, 산업구강보건의 역사와전망 1998
7.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사, 725쪽 1995
8.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사, 719쪽 1995
9. 한영철, 사단법인 한국산업구강보건원 설립허가신청서, 산업구강보건협의회 1997
10. 이영문, 제도개선에 따른 치과의사검진참여, 산업보건협회
11.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사, 증보판 313쪽, 2003

북한이탈주민의 구강상태 및 진료현황

신 덕재¹⁾

1. 서 론

북한이탈주민(이하 새터민) 정착지원 시설(이하 하나원)이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²⁾에 의거하여 1999년 7월 8일 경기도 안성에 설치됐다.³⁾ 새터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인 하나의원이 하나원내에 1999년 7월에 설치되어⁴⁾ 새터민의 구강질환 검진 및 진료를 시작했다. 새터민에 대한 치과진료는 1999년 10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새터민이 외부 치과에 나가 진료를 받다가 2000년 9월부터 현재까지는 외부 진료팀이 하나원을 방문하여 새터민의 구강질환 검진 및 진료, 치료를 하고 있다.⁵⁾

북한이탈주민의 구강상태 및 진료현황은, (사)열린치과의사회가 2003년 9월2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하나원 본원과 분원에서 실시한 새터민의 구강질환 검진 및 진료, 치료 내용을 신경치료, 보존치료, 외과치료, 치주치료, 보철치료, 기타로 분류하여 파악한 새터민의 구강상태, 치과진료 및 치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⁶⁾

(사)열린치과의사회의 새터민 치과진료내역서를 보면 하나원 본원에서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4,326건, 하나원 분원에서는 2004년부터 2008년말 까지 1,462건을 진료하여 도합 5,788건을 진료했다.⁷⁾ 이는 2003년도부터 2008년 말까지 하나원 진료 현황 15,210건의⁸⁾ 38.0%이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하나원 본원 및 분원의 종합진료내역을 분석해 보면 총 5,788건 중 신경치료 721건(12.5%), 보존치료 791건(13.7%), 외과치료 1,130(19.5%), 치주치료 644건(11.2%), 보철치료 2,289(39.2%), 기타치료 210건(3.6%)로 나타났다.⁹⁾ 이 분석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신경치료, 보존치료, 외과치료, 치주치료가 56.9%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새터민의 구강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¹⁰⁾

-
- 1) 열린치과의사회 감사,
 - 2) 하나원 제공(전정희 간호사). NAVER 백과사전
 - 3) 하나원 제공(전정희 간호사). NAVER 백과사전
 - 4) 하나원 제공(전정희 간호사). 2004년 5월 31일자 한겨레
 - 5) 하나원 제공(전정희 간호사).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 6)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 7)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 8) 하나원 제공(전정희 간호사)
 - 9)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 10)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03-'04년도 치주치료가 29.4% 임.

- ② 보철치료가 39.2%에 이르는 것은 새터민의 치아상실율이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¹¹⁾
 ③ 하나원 입소자의 97-98%가 치과질환자이다.¹²⁾

위와 같이 하나원에 입소한 새터민의 대부분이 치과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데 반해 새터민에 대한 치료 1인당 치료비 예산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¹³⁾ 앞으로 새터민의 구강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는 1인당 치과치료비 증액과 더불어¹⁴⁾ 다른 질환 예를 들면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¹⁵⁾ 결핵,¹⁶⁾ B형 간염,¹⁷⁾ 성병 및 부인병,¹⁸⁾과 같은 질환을 함께 치료하여야 한다. 새터민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터민의 사회적 불안과 고민을 불식시키고¹⁹⁾, 확고한 취업을 통해 생활환경의 안정이 필요하다.²⁰⁾ 또한 새터민이 하나원을 나간 후에도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하며²¹⁾, 사회적 인식을 바꿔 새터민에게 희망을 주고²²⁾, 빠른 시일 안에 사회적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어야겠다.

2. 본론

1) 하나의원 설립 및 변동상황

새터민의 구강상태의 검진과 진료,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원 내 하나의원이다. 하나의원이 어떻게 설립, 발전해왔는지 알아봄으로서 새터민의 진료체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다.

- 11)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 2005년 10월 15일자 오마이뉴스 "젊은이 중에 어금니가 없는 경우가 많다" ; 2008년 5월 25일자 한국일보 "어금니가 없어 밥을 그냥 넘기다시피 했다"
- 12) 하나원 제공(전정희): 치과치료건수(17,154)/입소자수(12,804)×100=133.9% : 2008년 5월 25일 자 한국일보 "하나원 입소자 11,515명 중 96%인 11,116명 치과진료를 받다" ; 2008년 6월 14일자 동아닷컴 "하나의원 치과의사 정혜원씨가 '100명중 97-98%가 치과질환자'라 증언"
- 13) 하나원 제공 (전정희 간호사) ; 감소현황: 2005년(101,023원), 2006년(70,606원), 2007년(64,022원), 2008년(63,867원)
- 14) 2009년 2월 15일자 조선닷컴 " 하나원 고정빈원장의 AFP통신과의 인터뷰 '하나원 의료예산 가운데 절반을 탈북자들의 이 치료에 사용한다.'고 했다"
- 15)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관련 기사:2007년 9월 28일자 뉴시스, 2008년 9월 25일자 연합뉴스, 2008년 10월 2일자 데일리 앤케이.
- 16) 결핵 관련 기사: 2007년 9월 28일자 뉴시스, 2008년 9월 25일자 연합뉴스,
- 17) B형간염 관련 기사:2007년 9월 28일 뉴시스, 2008년 9월 25일자 연합뉴스,
- 18) 성병, 부인병 관련 기사: 2007년 9월 28일자 뉴시스, 2008년 10월 2일자 세계일보,
- 19) 2004년 8월 16일자 프레시안 "탈북자 국내생활 비참. 80%가 극빈자" ; 2005년 3월 16일자 대전일보 "새터민의 54%는 입국 후 폭행, 임금체불, 성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20) 2005년 3월 16일자 대전일보 "29%가 가장 어려운 점은 취직이라고 답했다. 하나원이 200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새터민 중 실업자가 40.8%" ; 2007년 2월 13일자 뉴시스 " 조사 대상자의 46.1%가 무직이며 직업이 있는 응답자 중 정규직 7.2%, 자영업 4.6%로 나머지는 비정규직과 단순 노동자들로 고용형태가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2008년 3월 10일자 연합뉴스 " 하나원 75-103기(2006.1.12-2007.11.2) 탈북자 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23.7%(145명)만 "있다"고 답하고 76.3%(467명)는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91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 21) 하나원 제공(전정희 간호사): 하나원 퇴소 후 건강관리 단체-천주교민화위, (사)열린치과의사회,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안양시 치과의사회, 북한 장애인 후원재단, 서울대 차병원 대학병원 치료사업부, 한국 심장재단, 서울 아산병원, 셀트리온 복지재단, 새조위.
- 22) 2004년 6월 6일자 한국일보 "탈북자의 건강, 우리가 책임집니다." ; 2006년 5월 25일자 네이버뉴스 "사람 대접 받는 것 같아 병 안 고쳐도 좋아요: 2006년 5월 2일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정착을 돕는 시민단체 새조우(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가 국립의료원에 제안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 의료상담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북한이탈주민 진료센터'를 개설했다."

먼저 하나의원의 연혁을 알아보자

1999년 7월 하나원 내에 간호사 1명이 근무하는 ‘건강관리실’ 개설.

2000년 - 2003년 본관 지하에 간이 치과진료실 운영.²³⁾

2003년 2월 - 2008년 2월 본관 2층에 치과진료실 운영.

2004년 5월 31일: 하나의원 개설 - 공중보건의 5명 배치, 하나의원 확대 개편 운영, 내과 한방과 치과 등 3개과 설치 운영.²⁴⁾

2006년 5월 23일 :하나원 부속의원 의료기관 신고 - 의료법 31조(의료기관의 개설특례 : 기관장 명의 의료기관 개설) ²⁵⁾

2008년 5월 정신과 공중보건의 추가 배치: 내과, 한방과, 치과, 정신과 등 4개과 설치 운영.²⁶⁾

다음은 하나의원 내 치과진료소 설치 상황을 알아보자.

하나원 초기에는 서울 개인병원을 방문하여 치과문제를 해결.²⁷⁾: 참여 개인치과의원- 누가선교회, 엄인석 치과, 강남치과(강운근), 안성치과(정상희), 연산치과(김대기)²⁸⁾

1999년 10월 독지가 박선부 여사의 치과진료대(Unit Chair) 1대 및 일반 진료기구를 기증받아 하나원 내 간이치과 진료실 설치.²⁹⁾

2000년 9월 치과진료실 설치를 위한 자원 조달 :1,050만원 (치과의료 선교회 : 200만원³⁰⁾, 대한사회복지회 김명우회장 : 500만원³¹⁾, 천주교 안성성당 이상돈 신부:250만원, 희년선교회 임용석 목사:100만원)³²⁾

하나원 본관 건물 지하에 치과병원 시설(14평)설치 -삼우치재 최병철 사장: Unit Chair 2대, 아말감 Mix기 1대, 스케일러 2대, Mirror, Forcep, Compressor 등 기구 및 장비 기증, 설치.³³⁾

2000년 4월-8월까지 치과의료선교회 소속 분당 형치과, 서울 송영한 치과에 교육생이 이동하여 진료 받음.³⁴⁾

치과진료실을 본관 지하에 설치하면서 치과진료는 자원봉사자가 하나원을 방문하여 진료하도록

23) 하나원 제공 (전정희 간호사)

24) 하나원 제공 (전정희 간호사). YTN 2004년 5월 28일. ; 2004년 5월 31일자 한겨레 ‘그동안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협력병원의 도움으로 교육생들에게 진료를 실시했는데 하나의원의 개원으로 좀더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2004년 6월 6일자 한국일보 ‘김원장(29), 최한석(30, 이상 내과 전문의), 김진백(치과), 김정훈(28), 구자춘(27 이상 한의사) 하나의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25) 하나원 제공 (전정희 간호사). 의료법(제36차 일부개정 2009.1.30 법률 9386호)

26) 하나원 제공 (전정희 간호사) ; 2008년 6월 14일자 동아닷컴 ‘오준호(29 한의사), 전진용(32 신경정신과), 윤재영(30), 양홍석(30 이상 내과), 정해원(24 치과의사)

27) 하나원 제공 (전정희 간호사),

28) 하나원 제공 (제금숙 간호사).

29) 하나원 제공 (전정희 간호사).

30) www.dmfc.org

31) www.sws.or.kr

32) www.jubieekorea.org

33) 하나원 제공 (전정희 간호사)

34) 하나원 제공 (전정희 간호사)

원칙을 정하고 치과진료실을 개방하여 사용.³⁵⁾

2003년 2월 본관 2층 치과진료실 설치(본원 Unit Chair 4대, 본원 Unit Chair 2대)³⁶⁾

2003년 9월 21일 열린치과의사회에서 치과진료 자원봉사 실시.³⁷⁾

2) 새터민의 치과 진료 현황

새터민이 1963년부터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하여 2004년까지 6,304명에 이르고 있다. 새터민은 1994년부터 갑자기 늘어나 2000년부터 더욱 급증하여 매년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³⁸⁾ 하나원에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입소인원과 치과치료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1)³⁹⁾

연도별	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일반 치료	1,068	1,325	1,314	1,564	2,895	3,908	4,204	876	17,154
보철 치료	47	205	217	229	370	448	449	96	2,061
입소 인원	1,111	1,175	1,935	1,316	1,856	2,530	2,881		12,804

표1. 새터민 치과진료 현황표 (단위 명)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원에 입소한 새터민의 수가 2008년까지 1,2804명인데 반해 치과 치료를 받은 건수는 2008년까지 1,6278명으로 127%의 치료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하나원에 입소한 새터민의 구강상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원의 치과의사도 입소자의 97-98% 치과질환자라고 증언하고 있다.⁴⁰⁾

(1) 새터민의 구강상태

새터민의 치과 진료 현황을 보다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새터민의 구강상태를 알아보자. (사)열린치과의사회가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실시한 진료내역을 보면 치주치료가 28.1%로 가장 높다. 이는 구강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나타낸다.(표-2)⁴¹⁾

년도	신경치료	보존치료	외과치료	치주치료	보철치료	기타
2003년	11.8%	16.0%	16.0%	29.2%	20.8%	6.2%
2004년	11.0%	14.7%	14.7%	29.4%	22.9%	7.3%
2005년	14.1%	21.9%	17.9%	25.7%	15.0%	5.3%
평균	12.30%	17.53%	16.20%	28.10%	19.57%	6.27%

표 2. 2003-2005년 진료내역 (하나원 본원) (단위%)

또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진료내역을 살펴보면 보철치료가 38.7%로 가장 높다. 이는 새터

35) 하나원 제공 (전정희 간호사)

36) 하나원 제공 (전정희 간호사)

37) 하나원 제공 (전정희 간호사), ;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실 ; '열린뜻'지 (2003년 10월호)

38) 2005년 3월 16일자 대전일보

39) 하나원 제공 (전정희 간호사)

40) 2008년 6월 14일자 동아닷컴:치과의사 정해원" 1000명 중 97, 98명은 치과질환자 이다"

41)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민의 치아상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3)⁴²⁾

년도	신경치료	보존치료	외과치료	치주치료	보철치료	기타
2006년	22.2%	18.3%	22.6%	8.6%	25.6%	2.7%
2007년	14.0%	15.7%	23.1%	5.1%	39.3%	2.8%
2008년	8.5%	9.3%	22.5%	7.3%	51.3%	0.9%
평균	14.90%	14.43%	22.73%	7.00%	38.73%	2.13%

표 3. 2006-2008년 진료내역 (하나원 본원)

(단위%)

표2와 표3을 보면 2003-2005년에는 치주질환이 많아 스케링(Scaling)을 많이 했으나 2006-2008년에는 외과치료와 보철치료가 많다. 이는 발치를 하고 보철치료를 많이 했다는 뜻이다.⁴³⁾ 전체적으로 하나원에 입소하는 새터민의 구강상태는 열악하고 위험한 수준이다. 2006년-2008년 사이에 보철치료가 많은 것은 하나원에 입소한 교육생들이 2003-2005년에 입소한 교육생보다 보철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많아서 이다. 그 이유는 정착금의 감소와 더불어 하나원 퇴소 후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보철에 대한 치료비 부담 때문이다.⁴⁵⁾

(2) 새터민의 치과 진료 현황

(사)열린치과의사회에서는 2003년 9월 21일부터 현재까지 하나원의 새터민에게 치과진료를 해 왔다. 이번 진료내역에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한 치과치료를 (사)열린치과의사회가 하나원을 방문한 날짜별로 치과진료부를 정리했다. 그 일부를 예시하면 표4, 표5와 같다.⁴⁶⁾

순번	이름	기수	진료내역	담당의사
1	김**순	116	상하악 RPD(부분틀니) 장착	최용철
2	김**실	116	3본 PFM(포세린) 장착	차영남
3	최**순	116	하악 RPD 조정	이수백
4	문**애	116	상하악 RPD 장착	이수백
5	정**녀	116	가장착	이승훈
6	허**순	116	근관충전, 2본 PFM 인상채득	이의경
7	강**옥	116	상악 RPD 인상채득	신덕재

표4. 2008년 8월 24일 진료내역 (하나원 본원)

42)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43) 2009년 2월 15일자 조선닷컴 "하나원 고경빈 원장 AFP와 회견 내용 '하나원 의료예산 가운데 절반을 탈북자들의 이를 치료하는데 사용' 한다."

44) 2008년 5월 25일자 한국일보 새터민 인터뷰 내용:홍영숙(36. 여. 가명) "어금니가 없어 그냥 넘기다시피 했는데 치료를 잘 해 주셔서 이제 맛있게 씹어 먹는다." ; 정영희(36. 여. 가명) "빠진 윗니에 사기치아를 넣으니 아주 감쪽같다." ; 2005년 10월 19일자 오마이뉴스 :치과에서는 지난해만도 정부예산 6천만원을 들여 98명의 새터민에게 틀니 등 보철치료를 해줬다

45) 2005년 3월 16일자 대전일보 새터민 중 실업자가 40.8% ; 2007년 2월 8일자 동아닷컴, 탈북자 10명 중 3명 실업자 - 월소득 100만원 이하 78% ; 2007년 2월 13일자 뉴시스: 월수입 100만원 미만 - 조사 대상의 46.1%가 무직 2008년 3월 10일자 연합뉴스: 최근 입국 탈북자 10명 중 8명 직장 없어 - 76.3%가 직장이 없다고 답변.

46)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순번	이 름	기수	진 료 내 역	담당의사
1	조**훈	105	3본 메탈 인상채득	김현주
2	채**범	105	5본 PFM 장착	장준혁
3	김**문	105	4본 PFM 장착	장준혁
4	전**철	105	하악 RPD 장착	장준혁
5	박**수	105	상악 RPD 장착	장준혁
6	김**희	105	3본 PFM 인상채득	김현주
7	김**철	105	7본 PFM 인상채득, 발치	윤양하
8	신**성	105	3본 메탈 인상채득	장준혁
9	왕**길	106	발치, 하악 RPD 인상채득	김현주
10	허**규	106	발치, 상악 RPD 인상채득	윤양하
11	김**일	106	상하악 RPD 인상채득	장준혁
12	김**봉	106	상악 틀니 인상채득	윤양하
13	김**일	106	3본 PFM 인상채득, 발치, 하악 RPD 인상채득	윤양하
14	장**길	106	상악 RPD, 하악 RPD 인상채득	장준혁
15	박**관	105	5본 PFM 장착, 근관충전	윤양하

표5. 2008년 12월 8일 진료내역 (하나원 본원)

표4, 표5와 같이 (사)열린치과의사회가 하나원에서 진료한 날짜수는 총 251일이고 총 진료건수가 5,788건이다. 본원에서 환자를 가장 많이 본 날은 2008년 1월 13일 45명을 보았으며 본원에서 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한 날은 2007년 11월 10일 29명이었다. 본원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진료를 한 참여 치과의사 수는 530명, 참여 봉사자 수는 703명, 총 봉사일 수는 165일이다. 또 본원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진료를 한 참여 치과의사 수는 187명, 참여 봉사자 수는 293명, 총 봉사일 수는 86일이다. 하나원 본원과 분원을 합한 참여 치과의사 수는 717명, 참여 봉사자 수는 996명, 봉사일 수는 251일이다(표6). 즉 (사)열린치과의사회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하나원 본원과 분원에서 총 251일간 연인원 1,713명이 새터민을 위해 진료하였다.47)

년도	구분	참여 치과의사 수	참여 봉사자 수	봉사일수
2003년	본원	22	37	7
2004년		47	66	17
2005년		52	68	18
2006년		96	154	37
2007년		125	165	41
2008년		188	213	45
2004년	분원	6	7	2
2005년		34	45	12
2006년		35	63	19
2007년		46	80	24
2008년		66	98	29
합 계		717명	996명	251일

표6. 진료참여 치과의사, 자원봉사자 수 및 봉사일수

47)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월 일	신경치료	보존치료	외과치료	치주치료	보철치료	기타	합 계
10월12일	2	5	7	12	6		32
10월19일	1	4	6	6	5		22
11월09일	1	5	5	3	2	5	21
11월16일	2	5	3	8	2		20
12월14일	1	2	1	6	8	3	21
12월21일	10	2	1	7	7	1	28
합 계	17	23	23	42	30	9	144
백분율	11.8%	16.0%	16.0%	29.2%	20.8%	6.2%	100%

표7. 2003년도 종합진료내역(하나원 본원)

월 일	신경치료	보존치료	외과치료	치주치료	보철치료	기 타	합 계
01월12일	1	3	2	2	11		19
01월26일	2	2	3	1	15		23
02월02일	1	1	2	3	12		19
02월16일	2	3	2	1	12		20
03월08일	1	1	3	1	2	2	10
03월22일	2	3	4	1	13	1	24
04월22일	2	4	2	2	16		26
04월26일	1	3	5	2	14	1	26
05월10일	3	2	2	1	15		23
05월24일	1	2	3	3	17		26
06월14일	1	3	3	2	17		26
06월28일	2	2	1	3	16		24
07월12일	1	3	3	1	10		18
07월19일	1	1	2	1	4		9
07월26일	1	3	2	2	7	1	16
08월09일	1	1	2	1	4	1	10
08월16일	2	2	3	3	5		15
08월23일	1	1	3	3	7		15
09월06일	2	2	4	1	6		15
09월20일	1	1	2	1	5		10
09월27일	1	1	5	1	4		12
10월11일	1	1	3	1	4		9
10월18일	2	1	3	1	6		13
10월25일	1	1	5	2	4	1	14
11월08일	1	2	2	1	6		12
11월22일	2	3	2	1	7	3	18
12월13일	1	1	1	1	1	1	6
12월20일	1	2	4	2	1		10
12월27일	1	2	4	1	5		13
합 계	40	57	81	46	246	11	481
백분율	8.3%	11.9%	16.8%	9.6%	51.1%	2.3%	100%

표8. 2008년도 종합진료내역(하나원 본원)

표-4, 표-5와 같은 진료부를 다시 월별로, 치료건수를 신경치료, 보존치료, 외과치료, 치주치료, 보철치료, 기타로 분리 정리했다. 월별로 분류된 치료건수를 년 단위로 정리하여 종합진료내역을 만들었다.⁴⁸⁾ 그 일부를 예시해 보면 표-7, 표-8과 같다. 기타에는 일반검진, X-선 촬영, 포기, 교정, 치

아과민, 수리, 가접착 등이 포함된다. 49)

하나원 본원과 분원의 2003-2008년 종합진료내역 중 1년분만 예시하였다. 본원에서의 치료건수는 2008년도에 1,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원에서도 역시 2008년도에 481건으로 가장 많았다.⁵⁰⁾ 표-9와 표-10은 하나원 본원의 2003-2008년 종합진료내역과 하나원 분원의 2004-2008년 종합진료내역을 총괄적으로 예시하고, 그림 1, 2는 그래프로 보다 명확한 종합진료내역 모습을 보여준다.⁵¹⁾

년 도	신경치료	보존치료	외과치료	치주치료	보철치료	기 타	합 계
2003년	17	23	23	42	30	9	144
2004년	39	52	52	104	81	26	354
2005년	45	70	57	82	48	17	319
2006년	220	182	224	85	254	27	992
2007년	171	191	281	62	478	34	1,217
2008년	111	121	292	97	667	12	1,300
합 계	603	639	929	472	1,558	125	4,326
백분율	13.9%	14.8%	21.5%	10.9%	35.0%	2.9%	100%

표9. 2003-2008년 종합진료내역 (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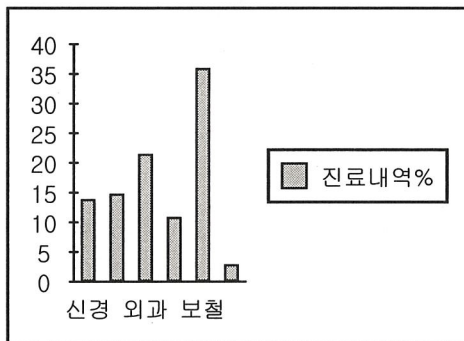


그림1. 2003-2008년 본원 종합진료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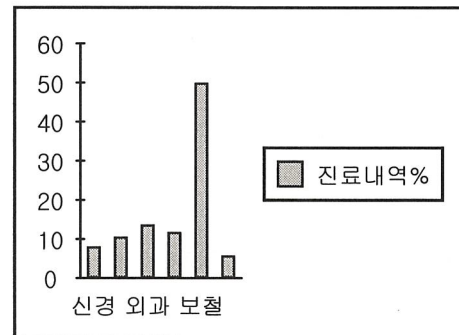


그림2. 2004-2008년 분원 종합진료내역

년 도	신경치료	보존치료	외과치료	치주치료	보철치료	기 타	합 계
2004년	5	8	12	9	7	5	46
2005년	17	20	23	47	49	27	183
2006년	24	32	42	35	181	17	331
2007년	32	38	43	35	248	25	421
2008년	40	57	81	46	246	11	481
합 계	118	155	201	172	731	85	1,462
백분율	8.1%	10.6%	13.7%	11.8%	50.0%	5.8%	100%

표9. 2004-2008년 종합진료내역 (분원)

하나원 본원의 2003년-2008년도 종합진료내역과 하나원 분원 2004년-2008년도 종합진료내역을

48)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49)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50)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51)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살펴보면 (표-9와 표-10, 그림-1과 그림-2) 특이점은 본원과 분원 양쪽 모두 보철치료가 현격히 많다는 것이다. 표11, 그림3은 하나원 본원과 분원 전체의 종합진료내역이다⁵²⁾

분 류	신경치료	보존치료	외과치료	치주치료	보철치료	기 타	합 계
본원 '03-'08	603	639	929	472	1,558	125	4,326
분원 '04-'08	118	155	201	172	731	85	1,462
합 계	721	794	1,130	644	2,289	210	5,788
백분율	12.5%	13.7%	19.5%	11.2%	39.5%	3.6%	100%

표 11. 하나원 본원, 분원 종합진료내역

지금까지의 자료를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면 (사)열린 치과의사회의 회원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하나원 본원과 분원에서 251일 동안 치과의사 717명, 자원봉사자(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기자재상) 996명, 6년간 총 연인원 1,713명이 하나원의 새터민에게 치과진료를 했다.⁵³⁾

(사)열린치과의사회는 2003~2008년까지 총 5,788건의 치과진료를 하였다. 그중 신경치료 721건(12.5%), 보존치료 794건(13.7%), 외과치료 1,130건(19.5%), 치주치료 644건(11.2%), 보철치료 2,289건(39.5%), 기타 210건(3.6%)이었다.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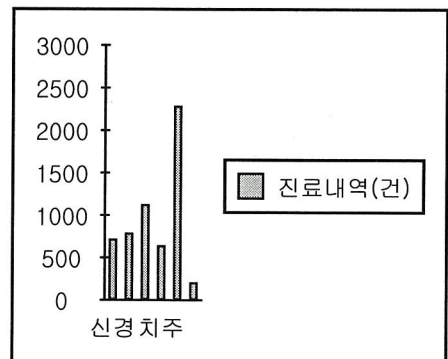


그림3. 하나원 본원, 분원 종합진료내역

이를 다시 분석해 보면 1일 평균 6.8명의 (사)열린치과의사회 회원들이 하나원을 찾아 새터민을 위해 치과진료봉사를 했고, 또한 1일 평균 23.0건의 치과진료를 했다. 진료내역을 분석해 보면 신경치료 12.5%, 보존치료 13.7%, 외과치료 19.5%, 치주치료 11.2%, 보철치료 39.5%, 기타 3.6%로 보철치료가 다소 높으나 대체적으로 치과질환이 고르게 치과이환율을 나타내고 있다. 보철치료율이 높은 것은 새터민 본인들의 치아상실이 많아 보철치료의 필요성이 높기도 하지만, 2006년 이후 보철치료가 급격히 높아진 것은 하나원 입소자들이 이미 하나원을 퇴소한 새터민들로 부터 치과보철은 퇴소 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정보를 알아 치과보철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치과보철 치료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외과치료율이 다음으로 많은 것은 치주질환이 심하다던가, 신경치료를 못할 정도로 치아우식증이 심해서 발치를 요하는 경우라던가, 어쨌든 발치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구강상태가 나빴다는 것을 나타낸다.⁵⁵⁾ 치주치료의 특이상을 보면 2005년 이전에는 치주치료율이 대단히 높다. 이는 북한이탈 이전에는 치주질환에 대해 관심과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지냈다는 것

52)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53)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 2008년 5월 25일자 한국일보: "하나원 전체 입소자 1만 1,515명의 96%인 1만 1,116명에게 진료를 했다" ; 2008년 5월 25일자 한국일보, "열린치과의사회 회원들이 하나원 본원에서 주4회 하나원 분원에서 주3회 진료한다"

54)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 2009년 2월 15일자 조선닷컴: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영양부족 상태라 어금니가 없는 탈북자들이 많아 의치 치료를 해주고 있다" ; 2009년 2월 18일자 조선닷컴: "하나원의 새터민들이 질환 중 치과관련 질환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55)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을 나타낸다. 2006년 이후에 온 새터민은 일정기간 제3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새터민이 많은 관계로 제3국 체류 중 구강청결상태에 관심과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⁵⁶⁾

치과질환 이환율은 하나원 입소자의 96%,⁵⁷⁾ 100명중 97-98명⁵⁸⁾ 등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새터민에 대해 정신적 치료, B형 간염치료, 부인병치료, 안정적 사회 정착과 더불어 지속적 치과치료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3. 결론

1963년 이후 2008년까지 약 11,515명의 새터민이 하나원에 입소하여 1999년 7월 이후부터 하나원에서 입소자의 96%인 11,116명이 치과치료를 받았다.⁵⁹⁾ (사)열린치과의사회가 2003년 9월 21일부터 2008년 말까지 북한이탈주민의 구강상태와 진료현황은, 251일 동안 총인원 1,713명의 회원들이 하나원의 새터민에게 총 5,788건의 치과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일 평균 6.8명의 (사)열린치과의사회 회원이 하나원을 찾아, 1일 평균 23.0건의 치료를 새터민에게 했다는 뜻이다.

2003년 9월21일부터 2008년 말까지 새터민에게 치료한 5,788건을 신경치료, 보존치료, 외과치료, 치주치료, 보철치료, 기타로 분류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경치료 721건(12.5%), 보존치료 794건(13.7%), 외과치료 1,130건(19.5%), 치주치료 664건(11.2%), 보철치료 2,289건(39.5%), 기타 210건(3.6%) 이다.⁶⁰⁾ 이상과 같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① 하나원 입소자의 96-98%가 치과질환자로 심각한 수준이다.⁶¹⁾
- ② (사)열린치과의사회 회원 1,713명이 251일 동안 진료봉사를 했다.
- ③ 총 진료건수는 5,788건으로 신경치료 721건(12.5%), 보존치료 794건(13.7%), 외과치료 1,130건(19.5%), 치주치료 664건(11.5%), 보철치료 2,289건(39.5%), 기타 210건(3.6%) 이었다.
- ④ 보철치료 건수가 가장 높았다.(39.5%)⁶²⁾
- ⑤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결핵, 부인병, 등 다른 질병과 더불어 지속적인 치과치료가 필요하다.⁶³⁾
- ⑥ 새터민의 구강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 취업과 사회적 안정이 필요하다.⁶⁴⁾

(사)열린치과의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의 구강상태 및 진료현황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한 진료내역을 통해 위와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56)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57) 2008년 5월 25일 자 한국일보.

58) 2008년 6월 14일 자 동아닷컴.

59) 2008년 5월 25일 자 한국일보.; 하나원 제공 (전정희 간호사)

60)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61) 2008년 5월 25일 자 한국일보.; 2008년 6월 14일 자 동아닷컴.

62) (사)열린치과의사회 자료집.

63)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관련기사:2007년 9월 28일자 뉴시스, 2008년 9월 25일자 연합뉴스, 2008년 10월 2일자 데일리 앤케이. ; 결핵관련 기사 : 2007년 9월 28일 뉴시스, 2008년 9월 25일자 연합뉴스. ; 부인병 관련 기사: 2007년 9월 28일자 뉴시스, 2008년 9월 25일자 세계일보.

64) 관련기사: 2005년 3월 16일자 대전일보, 2007년 2월 13일자 뉴시스, ; 2008년 11월 12일 자 인천일보: "사회적응 교육-희망의 산실" "2개월 교육과정 사회진출 자신감 고취" "편견 속 구직고통-후원회 보증 큰 힘."

Abstract

A Survey on North Korean Defector's Oral Condition and Dental Treatment at HANAWON* during 2003-2008

Shin, Duck-Jai

Yollin Dental Society Corporation (Y.D.S corporation) members surveyed N.K defector's oral condition and dental treatment at HANAWON during 2003-2008 year.

The results of this survey are these followings.

1. The N.K refugees' 96-98% are dental disease patients seriously.
2. Y.D.S corporation 1,713 members treated 11,515 N.K refugees(defectors) during 251 days.
3. The total treatment cases were 5,788 cases. Among them, the endodontic cases were 721 cases(12.5%), the preservative dentistry cases were 794 cases(13.7%), the oral surgery cases were 1,130 cases(19.5%), the periodontic cases were 664 cases(11.5%), the prosthetic cases were 2,289 cases(39.5%), the other cases were 210 cases(3.6%).
4. The prosthetic cases were the highest, 39.5%
5. The dental treatment for the N.K defector should be continued together the treatment of another disease, for example, psychological disease, TB, venereal disease.
6. For the improvement of N.K defector's oral condition, we need N.K defector's stable job and the social stability.

* HANAWON is asylum for North Korean defector to set up in South Korea life, which locates at ANSUNG province.

특집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기념일에 관한 공청회

일 시 : 2009년 9월 9일 (수) 19:30

장 소 :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회의실

제 1부 개회식 및 주제발표

사회: 대한치과의사학회 조영수 부회장

개회사 : 대한치과의사학회 배광식 회장

축 사 :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

주제발표

좌장: 대한치과의사학회 배광식 회 장

1. 치협 창립기념일 제정경위

변영남 (대한치과의사학회 명예회장)

2.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일 복원

신재의 (대한치과의사협회사 편찬위원장)

3. 치협과 서치의 연혁에 대한 소고

임경빈 (대한치과의사학회 명예회장)

제 2부 토 론

지정토론

좌장: 대한치과의사학회 배광식 회 장

1. 현행 창립기념일에 대해

조영수 (대한치과의사학회 부회장)

2.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25년 4월 15일 한성치과의사회의 창립에

그 법통 연원을 두어야 하는 까닭

김평일 (대한치과의사협회사 편찬위원)

3. 후학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연원에 대해 드리는 다섯 가지 질문

이주연 (대한치과의사협회사 편찬위원)

일반토론 및 패널답변

개 회 사

배 광 식 대한치과의사학회장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내외 귀빈께 감사드립니다.

광복 직후인 1945년 12월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전신인 조선치과의사회가 창립하였고, 이후 30여 년이 지난 1981년 4월 제 30차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창립기념일을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별 이의 없이 지내오다가 2004년 8월 협회사 편찬위원회에서 창립기념일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나왔고, 이듬해 대의원 총회에서 언급된 바 있으며, 작년말 협회사 편찬위원회에서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어 금년 제 58차 대의원 총회에 변경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의 부족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미래에의 정확한 방향설정과 굳건한 발걸음은, 역사의 진실에 충분히 맞닿아 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탄탄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백년대계를 위해, 치과의사회의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정통성을 확립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청회는 많은 분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배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의견들은 대체로 현행의 10월 2일, 한성치과의사회의 창립일인 1925년 6월 9일과 광복 후 조선치과의사회의 창립일인 1945년 12월 9일을 창립기념일로 하자는 세 가지로 수렴될 듯 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이니만큼 어느 특정한 창립기념일을 결정한다기 보다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충분히 합리적인 창립기념일의 정착에 일조가 될 수 있다면 공청회의 의의는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창립기념일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좋은 일인 만큼, 시종 화기에애한 가운데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 사

이 수 구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바쁘신 가운데도 치과계의 현안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회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치협이 역사적 뿌리를 다시 한 번 고찰하고 정립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기념일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처럼 의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치협은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의 창립을 역사적 시초로 보고, 이를 창립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역사적 뿌리에 대한 논의가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정통성 등의 문제로 현재의 창립기념일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학회 등이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학회에서는 치협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 연구해 왔고, 치협 내부적으로도 협회사편찬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의 공청회는 이처럼 축적된 자료 및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치협의 역사적 기원을 학술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치협 역사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우리들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발표 및 토론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발표 및 논의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고견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발표 및 토론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치협 창립기념일 제정경위¹⁾

변 영남²⁾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0차 대의원 정기총회

일시: 1981.4.25

장소: 경주보문단지 내 관광센터 국제회의장

회장: 지 헌택

의장: 이 중수

일반안전 제16호 치협 창립기념일 제정안(서울, 군진지부)

* 요지 :

- 개인, 단체, 국가 등 모든 곳에 생일이 있으나 치협은 아직 생일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제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가져야 함

*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일

* 박 명규 군진대의원 :

- 16호 창립기념일 제정(안)은 서울과 군진에서 내었는데 어떤 대의원들은 웃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안 설명이 필요 없다고 본다. 다만 밑에 있는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일, 이 날로 정했으면 어떻겠는지, 또는 6월 9일로 정했으면 어떻겠는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 여러 가지 역사자료가 있을 테니 타당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아니면 이 안을 채택하느냐를 오늘 결정해 달라.

* 이 중수 의장 :

- 16호의 치협 창립기념일을 제정하자는 안이다. 자체적으로 찾고자 하는 날짜는 있지만 집행부에서 선정하기로 하고 치협 창립기념일을 제정하자는 동의안이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겠는가? 제안자 측에서는 토론을 안 하겠다고 했다. 바로 표결해도 좋겠는가?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치협 창립기념일을 제정하자는 안(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장일치로 보입니다.

1)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기념일에 대한 공청회(2009.9.9) 주재발표 1.

2) 대한치과의사학회 명예회장

지 헌택 협회장 :

- 날짜 정하는데 여러 의견이 있어 고충이 많았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든 긴 역사를 갖는 것이 좋다. 대외적으로도 역사가 긴 것이 좋고 회원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총회발의안 대로 조선치과의사 창립기념일로 정했다.

< 자 료 >

○ 조선치과의사회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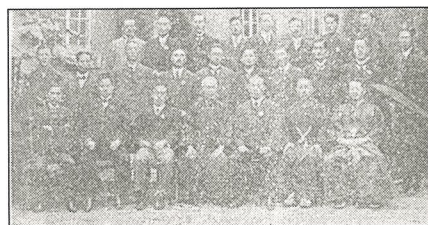
- 경성치과의사회(함 석태 등 수명의 한국치과의사 포함)에서 발기한 전선(全鮮)치과의사회 창립총회가 1921년 10월 2일 長谷川町 銀行集會所에서 오전 8시부터 개최되었다.
- 경성치과의사회회장, 창립위원, 전선(全鮮) 각도 대표 23명, 개인 참여에 의한 임의친목모임, 1941년 의사회법에 따라 법정단체가 됨.
- 1930년 김 연권 이사, 이 성모 평의원
- 1941년 조 동흠 조선치과의사회 부회장, 1943년 함 석태 부회장 보선

○ 당시 한국인 치과의사현황

- 한일합방 당시(1910년)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과의사가 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1905년 이후 일본 통감부에서 입치영업허가를 얻은 입치사 수명이 있었을 뿐이다. 1914년 한성에는 일본인 치과의사 5-6명 감리교 선교치과의사 한대위가 있었다.
- 함 석태(咸錫泰) : 1912년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 졸업, 1914년 총독부 치과의사 면허 제1호 취득, 남부곡교 삼각동 부근 개업
- 김 창규(金昌圭) : 동경치과의학 전문학교 졸업, 총독부 면허 10호, 1919년 광화문 개업
- 이 희창(李熙昌) : 1921년 무교에서 개업, 총독부 면허 17호
- 한 동찬(韓東燦) : 1917년 동경치과의학전문학교 졸업, 총독부면허 9호, 평양에서 개업
- 임 택룡(林澤龍) : 1922년 이희창 1년 후배, 세브란스병원 치과 근무

○ 경성치과의사회 창립 - 1912년 1월 16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 - 1921년 10월 2일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창립 - 1922년 경
 한성치과의사회 창립 - 1925년
 조선치과의사회 창립 - 1941년 5월

조선치과의학회 창립 - 1919년
 경성치과의학회 창립 - 1932년 10월 29일
 조선치과의학회지 창간 - 1925년 6월 15일
 경성치과의학회지 창간 - 1932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한성치과의사회를 부활·계승하였다¹⁾

신 재의²⁾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이 될 수 없다.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1921년 10월 2일 조선에 있는 일본인 치과의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성격은 임의 단체였으나, 공법인으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일제의 위생행정사무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하였다. 설립 목적은 입치사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정적인 도움을 얻기 위함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입치사와 관계에서 활동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일제와 협의하였다. 1921년부터 일제는 이것을 치과의사시험제도로 해결하려 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입치사의 단속, 제도의 폐지와 치과의사시험제도 폐지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로 치과의사시험제도는 폐지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다시 개정되어 일제강점기 말까지 연장되었다.

충치 예방 활동은 치과의사회가 마땅히 할 일이었다. 이러한 충치 예방 활동에도 일제는 깊이 관여하였다. 충치 예방 활동은 '충치예방의 날' 행사와 관계가 깊다. 1928년부터 1936년까지 '충치예방의 날' 행사는 치과의사회가 주체가 되고 일제, 치약회사는 후원을 하는 시기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가 행사 계획을 세우고 지방 치과의사회는 그 계획을 실천하였다. 1937년부터 1943년 이후까지 '충치예방의 날' 행사는 치과의사회보다 일제와 치약회사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 충치 예방 활동은 '시국 정세'의 영향으로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협력하여 행사를 하며 특징적인 것은 군대의 교련을 이따기에 도입한 "치마교련"이라는 것까지 마련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 회원은 처음에는 개인적 소신에 따라 임의로 참석하는 단체였다. 그러나 1932년 10월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각 지방의 치과의사회의 연합체인 조선연합치과의사회로 전환되었다.

1939년 말 일제의 금사용 규제는 치과치료의 제한으로 작용하였다. 금사용 규제가 강화되어 치과의사는 대용할 다른 재료를 찾아야 했다. 일제는 대용합금을 개발하게 하고 개발된 제품을 시연하며 치과의사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장려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조선치과의학회와 경성치과의학회와 같이 개발된 대용합금을 학문적으로 알리기까지 했다. 치과재료의 부족으로 조선치과용품상조합은 영업 통제에 의하여 치과재료를 배급하게 되었다. 1941년 이후 조선총독부는 고시으로써 공정판매가격을 결정했으나 치과재료의 수급은 원활하지 못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에서 일제의 정책과 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한 단체였다. 일제는 1940년 '시국 정세'를 구실로 도별 치과의사회를 발족시

1)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기념일에 대한 공청회(2009.9.9) 주제발표 2.

2)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사편찬위원장

켰다. 법정치과의사회 설립의 전제로서 단체의 통제 및 자재배급, 업권의 옹호와 발전이 그 목적이 라고 하였다.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에는 관권에 의한 강제가 작용되었고,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 이 후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 도별 치과의사회는 권리는 제한되고 의무는 강화된 식민지 상황에서 적 합한 형태였다. 그리고 법정치과의사회를 만들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구호에 그쳤다.

한국인만으로 조직된 한성치과의사회는 실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애국계몽운동단체의 하나였다.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는 한국인만으로 조직된 치과의사회로 실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애국계 몽운동단체의 하나였다. 설립한 구성원의 동기는 이러하다. 함석태는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로서 치의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증진시키려 했고, 또한 후진의 앞길을 열어주는 책임과 사회에 봉사 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회원들은 배움의 과정에서 한국인만의 치과의사회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한성치과의사회는 조직과 체계를 갖춘 전국적인 치과의사회였다. 1928년 한성치과의사회는 각 부서를 결정하여 회의 체계를 확립하였다. 설립 시에는 회장과 총무뿐이었으나, 1933년 12월 31일 총회에서는 부회장이 추가되었고, 이사와 평의원제를 채택한 것은 회의 체계를 확립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회원은 20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1925년 함석태(咸錫泰), 안종서(安鐘書), 김용진(金溶 璫), 최영식(崔永植), 박준영(朴俊榮), 조동흙(趙東欽), 김영권(金然權)이었고, 1926년 문기옥(文箕玉), 박준대(朴準大), 이수만(李壽萬)이 가입하였다. 1927년 신헌식(申獻植), 신응현(申應鉉)이 가입하였고, 1928년 박명진(朴明鎭), 장지원(張志遠), 김종찬(金鐘贊), 남수희(南壽熙), 신인철(申仁澈), 이유경(李有 慶), 김용봉(金溶奉), 이천흥(李天興)이 입회하였다. 1933년 이동환(李東奩), 정보라(鄭保羅), 김종환 (金鐘煥), 조경호(趙敬鎬)사 평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936년 안병식(安炳植), 한도수(韓道洙), 이수만 (李壽萬), 김철용(金喆庸)이 선출되었다. 평의원제를 채택한다는 사실은 많은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 원으로 평의원을 선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35년 9월 25일 한성치과의사회가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강압에 의하여 가맹하게 되었다. 1935년 조선연합치과의사회의 지방 치과의사회 확대 계획에 따라 한성치과의사회도 가입하게 된 것 이었다. 가맹한 이유는 1928년 과거 평양에서와 같이 강제 입회해야 하는 법정치과의사회가 곧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1939년 이후에는 박명진이 회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한성치과의사회가 경성치과의사회와 합병할 때의 이사장은 조동흙이었고, 회장은 박명진이었다.

한성치과의사회의 설립 시에는 친목기관으로 매주 만날 수 있었다. 한성치과의사회에서는 임상 적 토론으로 실패담 또는 성공담 등을 통하여 상호간에 지식을 교환하는 정도이었으나 회 운영이 잘되었다고 증언되고 있다. 그러나 회원이 증가되고 회의 체계가 확립되자 회(會)의 목적이 친목 이 외에 학술연구, 구강위생계몽, 회원복리로 발전하게 되었다.

1942년 10월 1일 한성치과의사회는 해산되고, 경성치과의사회가 설립되었다. 이 경성치과의사 회는 한국인의 한성치과의사회와 일본인의 경성부치과의사회 통합으로 이루어졌으나, 일본인 치과 의사가 일방적으로 회를 주도하게 하여 한국인 치과의사는 회의 소수 구성원에 지나지 않았다. 결 과적으로 한국인의 치과의사는 단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일제는 한국인만으로 조직된 치과 의사회로 실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애국계몽운동의 하나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보다 일주일 전 1924년 9월 24일 31년간 지속해왔던 일본인의 경성부치과의사회는 해산식을 거행했다. 특기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많은 수의 표창을 한 일이었다. 특별 공로자 3명, 회장이나 부회장을 역임한 일반공로자 10명, 평의원이나 이사 역임자 17명에 대한 표창을 했다. 반면에 한성치과의사회의 해산은 기록조차 찾을 수 없었다.

돌이켜 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일제의 위생행정사무에 공헌하는 단체였다.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는 한국인만으로 조직된 치과의사회로 실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애국계몽운동단체의 하나였다. 내선일체라는 명목으로 한성치과의사회는 해체되고 한국인 치과의사는 단체 활동을 못하게 되었다. 이렇듯 일제와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한성치과의사회와 한국인 치과의사를 꺾박하였다. 도별 치과의사회는 권리는 제한되고 의무는 강화된 식민지에서 적합한 형태였다.

광복과 함께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이 땅에서 단절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이 땅에서 단절되었다. 주도하던 일본인은 자취도 없이 물러갔고, 한국인 치과의사는 모두 다 같이 단절을 선언했다. 광복 후에 조선치과의사회를 결성한 치과의사들은 한결 같게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조선치과의사회를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과 멸시(서병서)”, “과거 36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악독한 압박과 질고(박명진)”, “왜 제국주의의 강압적 식민정책(문기옥)”, “일본 침략주의적 구속(박용덕)”, “폭악간인 착취적인 일본 팃소(한택동)”, “그 지독한 일본인, 일본 사람들 차별 아래에(이유경)”, “압박아래 눈물을 먹어 가며 비참한 생활(차문식)”, “경제적 착취, 치욕적(이덕현)” 라고 표현되는 압박과 착취의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 치과의사회였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인 치과의사에 의한 조선치과의사회(1945.12.9)는 한성치과의사회를 부활·계승하였다.

1945년 12월 9일 광복과 함께 한국인 치과의사에 의한 한국인 조선치과의사회는 이 땅에서 설립되어 한성치과의사회를 부활·계승했다고 하였다. 한성치과의사회 설립 시의 총무였고, 광복 후 조선치과의사회의 설립 시의 회장이었던 안중서, 1939년 이후에 한성치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광복 후 조선치과의사회의 설립 시의 깊이 관여하였던 박명진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던 신인철은 오늘의 대한치과의사협회 기원을 한성치과의사회에 두고, 한성치과의사회를 부활·계승했다고 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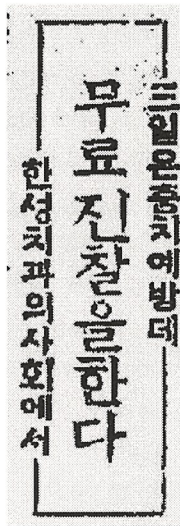
대한치과의사협회 초기는 한성치과의사회 회원에 의해 주도되었다.

1945년 12월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신인 광복후 조선치과의사회장의 회장은 초대 안중서, 2대 박명진, 3·4대 김용진, 제5대 안중서가 역임하였다. 1952년 3월 법정단체가 된 후 회장은 초대 안중서, 2·3대 김용진, 제4대 안중서, 제5대 한동찬(한성치과의사회원이 아님). 제6대 안중서, 제7대

김용진, 제8-9대 이유경(1968년 10월 18일)으로, 이들은 한성치과의사회 회원이었다. 이와 같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초기 23년간을 한성치과의사회 회원에 의해 주도되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은 재고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원을 1921년 10월 2일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의 창립에 두고 각종 행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가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그들만을 위하여 한국인 치과의사의 권리를 제한하고 핍박한 단체라고 할 때, 이 땅에 존재했고 한국인 치과의사가 소수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은 재고되어야 한다.



치협과 서치의 연혁에 대한 소고¹⁾

임 경빈²⁾

지난날 한반도에 '서구치과의학 전래과정에 대한 고찰'이라든지 '한민족 치과의사단체의 출현' 등에 대해 거론하자면 일제강점기일지라도 한민족 출신 서구식 치과의사들의 활동상이 얼마든지 주제가 될 수 있으며 평가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들의 활동이 대한민국 치과계 발전에 기여한 바도 지대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활동상이 곧 대한민국 치과계 일원의 활동상으로 서둘러 간주되는 것은 위험하다. 자칫 한국사와 치협사는 마치 다른 동그라미 속에 존재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동일인일지라도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승인한 조선치과의사회(후일 전조선치과의사회로 개칭) 및 산하 일개지부의 회원으로서의 활동과 대한민국의 등록법인단체인 치협이나 산하 한지부의 회원으로서의 활동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은 유사하더라도 국제사회로 활동무대를 넓히면 국적 등 서정체에 대한 인식 및 위상의 차이가 너무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건국 60주년을 맞고 있는 지금 명실공히 대한민국 치과계를 대표하는 치협과 대한민국 치과계의 상징성을 지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라 칭함)의 연혁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로 건국 60주년을 맞는데 ㅅㅅ해당국의 법인단체인 치협은 창립 87주년을, 그 산하단체인 서치는 창립 83주년을 표방, 무려 수십 년이나 앞서고 있는 때문이다. 아마도 치협은 조선치과의사회(이하 '조치')의 창립(1921)에, 서치는 한성치과의사회(이하 '한치')의 창립(1925)에 연유한 것으로 보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주지하는바 개항 전 한방의학 범주 내에 속해있던 조선시대 치과시술은 의녀들에 의존하였다. 서양식 치과의학의 편린이나마 한반도가 접하게 된 시기는 19세기 말로 밝혀져 있다. 그리고 서양식치과의사의 출현은 개항기 인천으로 내선(來鮮)한 일본인 노오다 오찌(野田應治)로부터 비롯되었다 (1895년 청일전쟁 1년 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땅에 치과의사 단체가 존재하지 않았었다. 때문에 서양식 치과의사단체의 출현은 일제 강점기로부터이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에 출범한 '조치'나 '한치'에의 연원설이 일견 일리 있어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조치·한치·치협·서치의 성격과 위상에 그리고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치'와 '한치'에 다가가 본다.

먼저 '조치'의 성격과 위상에 주목하기로 한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에 래선한 일본인 치과의사들 몇몇이 경성(서울의 일제하 명칭)에서 구락부 형태의 치과의사 모임을 만들었다(1909, 함방 1년 전). 이것이 한반도에 출현한 최초의 치과의사 단체인 경성치과의사회 (이하 '경치')의 모체였다

1)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기념일에 대한 공청회(2009.9.9) 주제발표 3.

2) 대한치과의사학회 명예회장

(1912. 1. 16).

그 후로 한반도 곳곳에 일본인 및 외국인 치과의사들이 래선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반도 최초의 서구식 치과의사 교육기관인 경성치의학고에서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배출되어 그 활동이 한반도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그러자 '경치'가 모태가 되고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힘을 합쳐 중앙집권적 '조치'를 발족시켰다(1921. 10. 2).

즉 한반도에서 활동하던 일본치과의사들의 주도하에 한민족 출신 서구식 치과의사들을 포함하여 그들 모두의 친목·학술·연마·권익옹호를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의 출범이었다. 그러하더라도 전 일본치과의사회의 한 지부의 성격이었을 뿐이므로 국가의 대표성과는 거리가 먼, 제법 규모가 큰 하나의 일본 지역치과의사단체 수준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한치'의 모습에 주목해본다. '한치'는 일제하 일본에 유학하여 치과의사면허를 획득한 한민족 출신 서구식 치과의사와 경성치과전문학교에서 배출된 한민족 출신 재경 치과의사들을 위주로 일제 강점기인 1925년 발족되었다. 발족당시는 소수였던 관계로 모두가 회원이며 간부였었다.

발족당시 회원들은 이미 재경 일본인 치과단체였던 경성치과의사회의 회원이었다. 다만 시대상황과 구성원이 신학문인 서구식 치의학의 습득한 신지식인이었으며, 경성에 굳이 한민족출신으로만 구성된 단체를 발족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방공간에서 새로이 발족하는 한성치과의사회(1945.11.)와 조선치과의사회(1945.12.9)의 창립주역이었음을 감안할 때, 미루어 짐작되는 성격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1925년 발족당시 은밀히 태극기를 걸어놓고 출범하였다는지, 발족과 더불어 어디엔가 등록된 단체였는지, 임의단체였는지 가늠할 흔적이 없어 이 땅에 출현한 최초의 한민족출신 서구식 치과의사단체였다는 것 외에 그 성격과 위상을 알 수 없다. 아무튼 경기도에 속한 일개 도시에 존재하던 치과의사 단체였다는 자료만이 남겨져 있다.(도지부 산하단체와 수도지부간의 위상 차이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같은 '한치'는, 일본이 전시동원체제로 전환되며 총독부의 명에 의해 슬며시 경성치과의사회에 해체 흡수됨으로써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 버렸다(1942). 그 후 머지않아 일본의 식민지배가 종말을 고하였다.

주지하는바 해방공간에서의 '한치'는 은연중 부활의 의미를 가미한 듯 다시 동명의 치과의사회로 발족되었다(1945.11). 하지만 부활이 곧 일제로의 회귀로 오해될 수 있어 일제강점기 '한치'의 계승임을 표방하기도 결끄러웠던 데다가 이른바 국대안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대안을 반대하는 '한치'와 국대안을 찬성하는 적지 않은 회원들이 아예 경성치과의사회를 창립(이하 '경치'), 떨어져 나감으로써 일그러진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1946.9).

이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한치'의 맥락이 어느 쪽으로 이어지는지 분간조차 어려운 난맥상을 드러낸 셈이 되고 말았다.

이같은 치과계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대안이 수용되면서 치과계의 내분도 수습되고 '한치'와 '경치'가 하나로 합쳐 비로소 서울시치과의사회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1946.12.22). 해방공간의 서울에서 양두의 괴물 같던 서울의 치과의사들이 서울시치과의사회로 이름하여 또 다른 새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 국대안을 반대하던 '한치'의 목소리가 자연히 잦아들게 되는 변화는 피할 수 없었다. 동시에 강점기 한치의 모습은 더더욱 희미해지고 말았다(1946.12.22). 없어졌다가 복원되는 듯하더니 이내 일그러지고 소리내기조차 어려워지면서 1947.1 좌우익 대결의 여파까지 곁들여

‘경치’부활 → 재분열 → 1948.4.15 비공개적이었지만 좌익과 결별을 전제조건으로 하고서 ‘서치’로 재결합, 재편의 재편을 거듭하는 우여곡절 속에 한치의 모습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잇단 변화를 거듭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로 행정구역의 승격에 따라 회의 명칭이 당연히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1925년 발족한 ‘한치’는 나름대로 복잡한 궤적을 남기게 됨으로 ‘서치’와 맥락을 이으려면 궤적 상으로나 성격상으로나 보충설명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건국 6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치협이 연혁 87주년을 계속하여 기념하려면 국권의 상실기에 발족한 까닭에 불가피 외형상으로는 일본치과의사회의 한 지부로 출발 할 수밖에 없었지만 묵묵히 미래를 도모하던 웅지가 어느 구석엔가 간직되어 있었다고 뒷받침할 자료발굴이 요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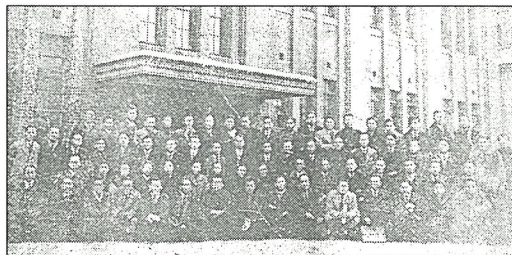
따라서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도 중요하지만, 치협과 ‘조치’, ‘서치’와 ‘한치’의 맥락이 이어지려면 움직일 수 없는 자료의 뒷받침이 따라주지 않고서는 아무래도 매끄러울 수가 없겠다.

그러나 맥락관계를 떠나면 치협과 서치의 발족과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일제 강점기 한치의 역할이 뚜렷해지는 것은 엄연한 사실(史實)이다.

해방과 더불어 불우한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새 역사를 가꾸고 꽃피우는 치협과 서치의 저력이 바로 국권상실의 아픔을 딛고 신학문을 수용하여 연마하며 한 분야를 개척해낸 일제 강점기 ‘한치’가 주축인 선학의 학습 결과에 바탕하고 있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까닭이다. 그 학습의 결과가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 것을 참고하려던 대한제국의 건국이념’을 이어받은 후학들에 의해 계승되어 신생 대한민국 치과계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이 밝혀지는 과정 중 비록 울밑에선 봉선화의 모습 같던 ‘한치’였지만 그 꽃잎에서 결코 빛바래지 않는 은은한 빛깔은 분명히 발견된다.

물론 이같은 선후학 간의 모습이 두고두고 대한민국 치과계 발전의 동력이 되리라는 믿음 또한 오래도록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해방공간의 와중에서 발족하였으며 곧 이어 밀어닥친 6.25 등 국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미국의 치의학을 수용하는 치협과 서치의 모습도 지난날 선학들의 그것을 빼닮은 것 같아, 보는 이의 감회가 남다르게 된다. 그러니까 조국의 운명과 궤를 같이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신생 대한민국 치과계의 모습이 참으로 유연할뿐더러 끊임없이 은근과 끈기를 뿜어내기에 외람되어 치협과 서치의 족적을 따라가 보았다.

차체에 강호제현의 고견이 제시되어 본고의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거나, 정정이 뒤따라 치협과 서치의 연혁이 분명해지는 계기가 되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현행 치협 창립기념일에 대해¹⁾

조 영수²⁾

1. 현행 창립기념일,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창립기념일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진작부터 제기되어 왔으나³⁾, 최근 협회사편찬위원회, 대의원총회 등 공식적 장(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창립기념일인 1921년 10월 2일은 조선치과의사회가 창립된 것을 시점으로 한 것으로 이 단체는 일본인 회장이 주도하고 한국 치과의사들은 어떤 역할을 한 바도 없다 ... 1925년 한국인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한성치과의사회를 최초의 창립으로 봐야 한다”⁴⁾

2004년 8월,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병태)의 문제 제기로 제54차 정기대의원 총회(2005.4)에 창립기념일 변경의 건이 상정되었으나 “협회 창립기념일 연혁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며 현행대로 둘 것을 강력히 주장”⁵⁾하는 한 대의원의 발언으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4년이 지난 2008년 12월 협회사편찬위원회(위원장 신재의)에서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되었다.

“현재 협회가 정하고 있는 설립일은 조선치과의사회의 설립일(1921.10.2)이며 이 단체는 한국 치과계의 활동을 오히려 억압했다는 관련 기록이 있다...한성치과의사회(1925.6.9)에 대한 연구를 보충한 뒤 협회 설립일 변경에 관해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자”⁶⁾

2009년 2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하였고⁷⁾, 3월 협회사편찬위원회에서는 “협회 설립일 변경에 관해 숙의하고, 민감한 문제인 만큼 ‘협회 설립일 변경의 건’의 치협 정기총회 상정 여부는 오는 4월 7일 열리는 치협 임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⁸⁾.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2009. 4.25)에 일반의안으로 제출되었다.

1)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기념일에 대한 공청회(2009.9.9) 지정토론 1.

2) 대한치과의사학회 부회장

3) 임경빈.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에 대한 小考. 大韓齒科醫史學會誌 1994; 15(1):41-52.

4) ‘창립일 재검토 대의원총회 상정,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 제반사항 검토’ 치의신보 1295호 2004. 8.30.

5) 변석두 대의원 장시간 지적 ‘눈길’ 치의신보 1356호, 2005.4.28

6) ‘일부 위원 재구성 준비 만전, 협회사편찬위원회 회의’. 치의신보 1699호. 2008.12.22

7) ‘협회마크·창립일 변경 재검토, 4월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키로’ 치의신보 1716호. 2009.2.26

8) ‘위원들 업무·진행 일정 등 정보 공유, 협회사편찬위원회 회의’. 치의신보 1724호. 2009.3.26.

치과의학교'를 명시하고 있음도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다²⁷⁾.

지금의 서울대학교는 1946년 8월 국립종합대학안(案)에 따라 경성대학(옛 경성제대)과 전문학교(관립 8, 사립2, 그중 경성약전은 1950년)를 통합하여 만들었다. 당시 국립서울대학교 11개 단과대학들이 현재 내세우고 있는 '연혁'을 보면 법대(1895), 농대(생명과학대, 1906), 약대(1915), 치대(1922)는 해방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으나 나머지는 해방 이후를 기원으로 삼고 있다(표2). 일제가 만든 경성제대와 각종 전문학교를 모태(母胎)로 하였음은 공통적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연도를 미군정기 1946년으로 삼은 대학과 대한제국기 또는 일제 식민지기로 삼은 대학은 식민성에 대한 시각과 해석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표2. 서울대학교 단과대학 홈페이지의 연혁에 명기된 설립시기

단과대	설립	통합 (1946년 기준)	비고
법과대학	1895	경성제대 법문학부 법과계통(1926), 경성법학전문학교(1923)	법관양성소
문리과대학	1946	경성제대 법문학부 문과계통, 이공학부 이과계통	인문대 등(현)
공과대학	1946	경성제대 이공학부 공과계통,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농림학교
의과대학	1946	경성제대 의학부(1926), 경성의학전문학교(1916)	
농과대학	1906	수원농림전문학교	생명과학대(현)
상과대학	-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영대(현)
사범대학	1945	경성사범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	
예술대학	1946	경성음악학교(1945)	음대, 미대(현)
치과대학	1922	경성치과의학교(1922),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1929)	
약학대학	1915	조선약학강습소(1915), 경성약학전문학교(1930)	1950년

2) 말레이시아, 필리핀 치과의사협회

국제 치과계에 치협이 능동적으로 등장한 첫 공식 무대는 1967년 제5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APDC) 서울 총회였다. 그 이전 APDC 총회 개최지는 동경(1차 1955, 3차 1961), 마닐라(2차 1958), 싱가포르(4차 1964)였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가 아시아에서 개최된 것도 동경(1982)을 필두로 마닐라(1986), 싱가포르(1990), 홍콩(1995)이 서울(1997)을 앞선다. 일본을 제외하면 모두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 서양근대 치과의료가 도입된 나라들이다.

18세기 후반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는 1957년에 독립하였으나 말레이시아 치과의사협회(Malaysian Dental Association)는 그 연원을 식민지 시기인 1938년에 두고 있다. 창립 초기는 영국인들이 이끌었으며, 1963년에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였다²⁸⁾.

필리핀은 16세기 이래 스페인, 20세기 말 이래 미국, 1942~45년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필리핀치과의사협회(Philippine Dental Association)는 2차 대전 이후 창립되었으나 1908년의 "필리핀치

27) 서울대학교치과대학 '화보(畫報) (1922-1989). 1989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사 (1924-2006). 2007.

28) http://www.mda.org.my/01_about_05history.htm

과의사회(the Sociedad dental de Filipinas)"를 전신(前身)으로 삼고 있다. 역시 초기부터 미국식으로 치과의사법, 제도와 조직, 술식 등을 이식받아 발전해 왔으며 2008년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Centennial Year"였다²⁹⁾.

이 나라들의 경우 식민지 경험은 치과의사협회의 연혁에 아무런 혼선이나 논란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의 식민 경험은 우리가 겪은 것과 다른 특수성이 있었을 것이다. 만일 조선의 식민 모국(母國)이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어느 국가였다면 창립기념일을 둘러싼 논란의 양상은 적잖이 다르지 않았을까?

5.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20세기 초 일본에 의해 조선에 이식(移植)된 치과의료의 성격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한다. 당시 치과의료는 식민 모국의 내지인(內地人)을 위한 것이었고 결국 식민지배에 기여하였음을 강조하는 시각과, 선진적인 일본 치과의료의 이식이 해방 후 우리나라 치과의료 발전에 토대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시각이다³⁰⁾. 이는 우리 근대사에서 식민기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 즉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이 치과의료 분야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성치과의사회(1925~1942)와 조선(현합)치과의사회(1921~1945)는 두 시각을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창립기념일을 둘러싼 식민성의 연막을 걷어내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민족주의적 당위론이나 실용주의적 현실론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유연하고 건강한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현행 창립기념일을 유지하든 새로 제정하든 그 과정의 참여자가 소수에 그친다면 어떤 결정도 의미는 퇴색된다. '무관심처럼 나쁜 것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다'고 하였던 35년 전의 지적이 다시 반복될 뿐이다.

1981년에 현행 창립기념일 제정이 가능했던 것은 '상향식 총회' 도입으로 지부 의견이 적시(適時)에 반영될 수 있었던 덕분이었다. 지금 회원 대부분은 창립기념일에 대해 잘 모르며 관심도 적다. 현행 창립기념일의 재검토에 관련된 모든 것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여론을 폭넓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29) http://www.pda.ph/version2/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6&Itemid=53

30) 조영수, 식민지 조선의 치과의업자(齒科醫業者): 1905-1945. 大韓齒科醫史學會誌 2006; 25(1):51-106.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25년 4월 15일 한성치과의사회의 창립에 그 법통 연원을 두어야 하는 까닭¹⁾

김 평일²⁾

- ① 조선치과의사회는 1921년 10월 2일 조선에 있는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일제식민치하 조선의 위생 행정사무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고, 입치사와 차별화를 위한 행정적인 도움을 얻기 위함도 그 목적이었다.
- ② 한성치과의사회는 1925년 4월 15일 한국인만으로 조직된 치과의사회이다. 경성치과 의학교 제1회 졸업생인 젊은 치과의사들이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 선생을 중심으로 모여 치의학에 대한 사회 인식의 증진, 후진양성,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결성된 순수 한국인만의 치과의사회로 당시 전조선의 조선인 치과의사의 정신을 대표한다.
- ③ 1935년 9월 25일 한성치과의사회가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맹하게 된다. 조선연합치과의사회의 지방 치과의사회 확대 계획에 따라 한성치과의사회도 가입을 피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이는 1928년 평양에서와 같이 강제 입회해야 하는 법정치과의사회가 곧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 추정된다.
- ④ 일제는 1940년 '시국 정세'를 구실로 도별 치과의사회를 발족시켰다. 법정치과의사회 설립의 전제로서 단체의 통제 및 자재배급, 업권의 옹호와 발전이 그 목적이라고 하였다.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에는 관권에 의한 강제가 작용되었고,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 이후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 도별 치과의사회는 권리는 제한되고 의무는 강화된 식민지 상황에서 적합한 형태였다.
- ⑤ 1942년 10월 1일 경성치과의사회가 설립되었다. 이 경성치과의사회는 한국인의 한성치과의사회와 일본인의 경성부치과의사회 통합으로 이루어졌으니 일본인 치과의사가 일방적으로 회를 주도하게 하여 한국인 치과의사는 회의 구성원에 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성치과의사회가 폐쇄당한 결과가 되었다.
- ⑥ 한성치과의사회는 함석태, 박준영 선생 등에 의한 조선인의 구강 건강에 대한 사회적 봉사, 교

1)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기념일에 대한 공청회(2009.9.9) 지정토론 2.
2) 대한치과의사협회사 편찬위원

육, 계몽에 많은 노력과 업적을 남겼음이 여러 문헌상에 남아 있다.

- ⑦ 함석태 선생은 1919년 9월 2일 제3대 총독 사이토의 마차에 폭탄을 던지신 애국지사 강우규 의사의 어린 손녀 강영재를 일제강점기에 양녀로 키운 사실은 민족과 동포를 사랑한 면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실이다. 또한 선생께서는 우리 문화재를 수집하여 조선과 동포 사랑의 의지를 보였다. 선생의 동포사랑을 새롭게 조명해 밝히는 것도 우리들의 남은 과제다.

☞ 위 일곱 항목을 살펴보면 보면 조선치과의사회는 회원의 이익보다는 일제식민통치 당국인 총독부의 위생행정사무에 공헌하는 일본인을 위한 단체였다. 이에 반하여 한성치과의사회는 한국인만의 치과의사회 활동의 필요성으로 조직된 단체로 일본인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단체였다. 그들은 1842년 내선일체라는 명목으로 경성부치과의사회와 통합하여 경성치과의사회를 만드니, 한성치과의사회를 해체하기 위함이었다.

☞ 이렇듯 일제와 조선치과의사회는 한성치과의사회와 한국인 치과의사를 꺾박하였다. 도별 치과의사회는 권리는 제한되고 의무는 강화된 식민지에서 적합한 형태였다. 일제는 치과용품 재료 배급 통제로 치과의료에 제약을 주는 일을 하기도 했다.

☞ 한성치과의사회에서 “한성”은 서울만을 대표한 것이 아니다. 한성치과의사회 회원 가운데에는 지방 치과의사가 회원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한성치과의사회는 전 조선의 치과의사를 포괄하는 진정한 의미의 유일한 한국인 치과의사 단체였다. 이런 의미에서 해방 직후 새로 탄생한 “조선치과의사회(대한치과의사회 전신)”는 당연히 한성치과의사회의 범통을 이은 한국인 치과의사 단체라고 할 수 있고 조선치과의사회(대한치과의사회 전신)는 한성치과의사회의 “부활”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 안중서 선생은 한성치과의사회 설립시 총무였고, 광복 후 조선치과의사회의(대한치과의사회 전신)설립 시의 회장이셨다. 안중서 선생은 오늘의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연원을 한성치과의사회에 두어야 한다고 밝히었다. 이 같은 주장은 광복 후 조선치과의사회(대한치과의사회 전신)의 설립시에 깊이 함께 관여하신 박명진 선생(1939년까지 한성치과의사 회장), 신인철 선생도 같은 주장이셨다.

☞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기원을 삼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치과의사가 만든 조선치과의사회는 광복 후에 결성된 조선치과의사회와 이름만 같을 뿐 압박과 착취의 식민시대 일본인 치과의사회였다. 조선인 치과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거부감을 표시한 것이 현재 남아 있는 문헌상에 상세히 드러나 있다.

①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과 멸시

② 과거 36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악독한 압박과 질곡

- ㉔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적 식민정책
- ㉕ 일본 침략주의적 구속
- ㉖ 착취적인 일본 팻쇼
- ㉗ 지독한 일본인, 일본 사람들 차별
- ㉘ 압박 아래 비참한 생활
- ㉙ 경제적 착취, 치욕적

- 이상 신재의 논문 “한성치과의사회와 구강위생계몽활동” 참고 문헌 44번에서 51번까지의 8개 항목 표현임

☞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원을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의 창립에 두고 각종 행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조선치과의사회가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그들만을 위하여 한국인 치과의사의 권리를 제한하고 꺾박한 단체라고 할 때, 이 땅에 존재했고 한국인 치과의사가 소수 참여했다 하더라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으로 하기에는 그 법통이 지극히 혼란스럽고, 역사적 수치심마저 불러일으킨다고 하겠다. 특히 역사에 밝은 일본치과의사들이라면 대한치과의사회의 법통 연원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할 터이니 뒤늦게나마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이 모든 일은 잘못된 과거사다. 후배 후손들에게 물려줄 바른 역사와 바른 법통으로 바로잡아야 함이 시급하다. 과거사 바로 잡기,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후학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연원에 대해 드리는 다섯 가지 질문¹⁾

이 주연²⁾

한 단체의 역사적 연원(origin)을 따지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다음 세 가지 질문에서 시작해본다. 첫째 ‘한 단체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가?’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치과의사회(1921~)³⁾, 한성치과의사회(1925~)⁴⁾, 조선치과의사회(1945~)의 시작과 끝을 알아야 한다. 또 지금은 없어진 그 단체들의 무엇이 현재의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계승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치과의사단체의 창립목적과 활동내용, 조직형태, 조직주체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둘째, ‘단체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를 활동주체라고 할 때, 현 대한치과의사협회로의 성장을 주도해온 주체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은 각 단체의 인적계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⁵⁾).

셋째, 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모체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이며, 이 요건들이 당대 역사적 정황과 조응하는가?’하는 점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을 대표하는 전국적 규모의 사단법인체이다. 반면 일제 식민기 일본인 치과의사 주도의 조선치과의사회(1921~)와 피지배민족인 조선인들의 한성치과의사회(1925~)가 차지할 수 있는 위상과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다.

경성치과의사회(1912)의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지방의 개인회원들을 영입해 창설된 조선치과의사회(1921)는 총독부의 후원 하에 전국적인 중앙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반면 한성치과의사회는

1)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기념일에 대한 공청회(2009.9.9) 지정토론 3.

2) 대한치과의사협회사 편찬위원

3) 일본인 치과의사들 주도로 창립된 조선치과의사회(1921)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1932)로 개편하였다가 전시(戰時)에 도별치과의사회로 개조한 후에도 법정치과의사회로 승격되지 못하였다. 결국 전시 막바지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해체되어(1944.10.1) 관선 조선치과의사회로 만들어졌다가 해방과 동시에 해체되었다.

4) 한국인 치과의사들만의 모임이었던 한성치과의사회(1925-1942)는 친목, 학술, 조선인 구강보건위생 향상을 목표로 조직과 활동수준을 높여 일본인들만의 지역치과의사회인 경성부치과의사회와도 독립적인 활동을 해나갔다. 그러나 일제는 1942년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의 시국정세를, 조선치과의사회는 ‘법정치과의사회 결성’이라는 당위적인 명분을 앞세워 한성치과의사회를 압박해 해체하고 경성치과의사회로 흡수 통합하였다

5) 1930년 조선연합치과의사회 회원 413명중 한인치과의사는 111명이었다.

식민기(1925-1945) 경성치과의학회(전문학)교 배출 치과의사 1,635명 중 일본인은 1,080명(66%), 한국인은 555명(34%) cf) 의사는 전체 4,417(1943)중 한국인 3,116명(71%).

해방직전 일본인 치과의사수는 654명, 조선인 치과의사수는 501명이었다(조선총독부 통계연보). 해방 직후 일본인 치과의사들은 도일하게 되었다.

6) 해방 당시 한국(북한포함)에 등록된 한국인 치과의사수는 362명, 그 중 북한에 남은 구강의사수는 105명(1946)이었다. 해방 직전 한성치과의사회 회원이었거나 경기권에 개업했던 조선인 치과의사들 (1944년 177명)중 대다수가 남한에 남았다고 추정된다.(보건일꾼증감표, 치계, 한국 근현대치과의료체계의 형성과 발전).

전국적인 중앙 치과의사회로의 성장이 불가능했고 조선치과의사회의 지부로 가입 후에도 해체를 중용당해야 했다. 요컨대 식민기 조선인 치과의사단체의 자주적인 성장은 일제의 식민지 의료정책에 의해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해방 후 한성치과의사회 회원들은 조선치과의사회(1945~) 결성에 주춧돌이 되었다. 따라서 협회의 모체 성립요건을 인적 구성의 연속성이나 전국적 규모의 중앙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대로 볼 것인가, 완결체⁷⁾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리라 본다.

그 중 1945년 발족한 조선치과의사회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연원으로 보는 임경빈 선생님의 입장에 대해 주목해보자. 조선치과의사회가 한국인들의 구강보건향상을 목표로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첫 번째 전국적인 치과의사단체라는 점에서 일면 타당해 보인다. 이는 한성치과의사회는 일제하 한민족의 치과의사회라는 민족성을 띄기는 하지만 경성부치과의사회와 견주며 활동하다가 합쳐졌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서울치과의사회의 전신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더하고자 한다. 첫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연원을 해방 이후로 본다면 ‘식민기 역사적 실체로 존재한 조선치과의사회(1921~)와 한성치과의사회의 역사적 위상은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이다.

둘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모체가 반드시 국제적으로 국적을 인정받는 공식단체여야 하는가’ 이다. 단체의 법적·국제적⁸⁾ 인정 역시 단체를 구성하는 활동주체가 처한 역사적 정황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7) 식민기 한성치과의사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신이 되기 위해서 한성이라는 지역성을 뛰어 넘어 한민족 치과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하게 된 과정에 대한 구체적 실증이 필요하다. 식민기 한성과 경기도 거주 치과의사 수는 전체의 60%(1925), 30%(1943)였고, 치재상은 87% 이상이 한성에 모여 있었다. 한성치과의사회가 경성부치과의사회와는 독립적으로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지부로 가맹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어떻게 타 지역 조선인 치과의사들과 연계되어 대표성을 지니게 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

8) 법적 국제적 공식기관이라는 것은 현재의 입장에서 완결체로 바라본 치과의사단체의 모습이 아닐까, 개항기 대한제국에는 치과의사법이 없었으며, 일제하 총독부의 치과의사법은 일본에서는 불법화한 입치사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치과의사법과 단체법의 존재는 한 국가의 근대적 발달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한 국가 내에서 법정치과의사회로의 공식화는 식민기 조선치과의사회와도 무관하고, 해방 후 조선치과의사회(1945~)는 박정희 정권의 의료법 개정(1962.3.20) 때에야 가능해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기념일에 대한 공청회’ 녹취록

<주제발표>

1. 치협 창립기념일 제정경위 - 변 영남

창립기념일 제정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81년 4월 25일 경주보문단지 내 관광센터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30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회장은 지현택, 의장은 이종수 선생님이었습니다.

협회 자료실의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서울지부와 군진지부가 합동으로 일반안전 제16호 치협 창립기념일 제정안을 제출하였고, 안전의 요지는 “개인, 단체, 국가 등 모든 곳에 생일이 있으나 치협은 아직 생일이 없기에 이를 제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가져야 한다. 창립일은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 총회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박명규 군진대의원은 “이 문제는 제안 설명이 필요없다고 본다.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일이나 6월 9일로 정했으면 어떨지를 제안한다.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든지, 집행부에 있을 여러 역사자료를 이용해 타당한 날짜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 이에 당시 이종수 의장은 이를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이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발표자가 지현택 당시 협회장과 많은 전화통화와 대화를 나눈 결과, 날짜 결정에는 당시에도 많은 고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이나 단체가 역사를 갖는 것에 공감하며, 대외적으로도 역사가 긴 것이 좋고 회원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셔서 총회 발의안대로 조선치과의사 창립기념일로 정했다고 배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치과의사회 창립 과정을 살펴보면,

- 당시 경성치과의사회(함석태 등 수명의 한국치과의사 소속)에서 발기한 전국단위의 전선(全鮮) 치과의사회 창립총회가 1921년 10월 2일 은행집회소에서 오전 8시부터 개최됐다.

- 경성치과의사회 회장(일본인), 창립위원 전선(全鮮) 각도 대표 23명, 이 회의 특성은 개인 참여에 의한 임의 친목모임, 그러나 1941년 일본 의사회법에 따라 법정단체가 돼서 당시는 모든 단체가 강제적으로 조선치과의사회에 통합되도록 돼 있었음.

- 1930년 김 연권 씨가 이사, 이성모 씨가 평의원, 1941년 조 동흠 씨가 조선치과의사회 부회장, 1943년 함 석태 부회장 보선된 내력을 갖고 있다.

저는 사실 주제발표를 하지만 창립기념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변 석두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하다보니 그대로 뒤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의견을 제시하겠다.

첫 번째, 어떤 이유에서든 이 땅에 전국 규모의 치과의사회가 조직된 것은 조선치과의사회가 최

초였다. 몇 분 안 되는 한국 치과의사가 참여했다.

두 번째, 일본인이 중심이 된 친목의 단체였으나 구강검진 등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야 함. 조선치과의사회에서 학교에서 구강건강을 계몽하고 누가 글을 쓴 것이 있는데 이를 인정해야 한다.

셋째, 협회 창립기념일을 정할 당시 집행부가 심사숙고해서 정한만큼 큰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 긴 역사가 좋다고 생각한다.

2.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일 복원 - 신 재의

1925년 6월 9일을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일 복원이라고 말하고 싶다. 창립일을 복원하는 목적은 민족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협회사편찬위원장으로 2010년에 발간할 협회사의 방향은 “첫째, 세계수준의 한국 치의학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을 조명토록 하겠다. 둘째 세계수준의 한국 치의학을 이끌어 온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활동과 협회를 이끌어 온 역대 회장과 임원의 공적을 기리고자 한다. 셋째, 협회사가 ‘치과의사의 봉사하는 단체로서의 협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넷째, 폭 넓은 치과의사로서 치과의료 문화상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협회의 자랑스런 홍보물이 되겠다” 이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먼저 ‘대한’이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치과의사라는 직업적 전문성을 띄어야 한다. 협회에 속한 치과의사로서의 단체 활동의 기록이 있어야겠다.

복원의 필요성은 변영남선생님이 1980년 초에 창립일을 정할 때 충분한 논의와 많은 자료의 검토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말도 맞지만 이후 많은 자료가 새로 발굴됐다. 자료들 중 2004년 협회지 제42권 제2호 108~137쪽에 제가 발표한 게 있다. 조선치과의사회는 일본인 치과의사가 일본인 치과의사를 위한 단체였다. 제42권 제10호에 제가 발효한 내용 중에 한성치과의사회는 한국인 치과의사가 한국인 치과의사만으로 한국인 치과의사를 위한 단체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런 보고를 통해 민족 정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치의학의 역사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한국근대사,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와 역사인식을 같이하게 된다.

해방 후에 치과의사회가 생기게 된 순서를 보면 1945년 9월 5일 오후 3시 서울에 있는 치과 의사들의 발기로 종로구 수송동 수송국민학교에서 조선치과의사회와 한성치과의사회의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모였다. 이 내용은 조선치계에 나와 있다. 이병태 선생이 2005년에 서치회사 편찬 직전에 저에게 줘서 보게 됐다. 거기에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 치과계를 건설하자’는 말이 나와 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조선치과의사회와 한성치과의사회가 됐다.

그 책에 보면 일제강점기 하의 조선치과의사회를 서병서 씨는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과 멸시”, 박명진 씨는 “과거 36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악독한 압박과 질고”, 문기옥 씨는 “왜(倭) 제국주의의 강압적 식민정책”, 박용덕 씨는 “일본 침략주의적 구속”이라고 밝히고 있는 등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압박과 착취’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 치과의사회였다고 조선치과의사회를 평하고 있다.

조선치과의사회는 1945년 12월 9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면서 창립됐다. 이 자리에서는 애국가 합창까지 해가면서 조선치과의사회를 만들었다.

1974년 경에 먼저 협회사를 만들 때, 한국치과의학사 개관이라는 글을 쓸 때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를 만들면서 한성치과의사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조선치계 86쪽에 서병서씨가 쓴 글을 보면 광복 후 설립된 조선치과의사회 성격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 치과계를 건설하자”라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자주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내용이다. 일제강점기하고 달리 이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주적인 단체를 만들자는 의미이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치과의사회의 성격은 조선치과의사회라는 이름만 같을 뿐 압박과 착취 등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치과의사회였다.

그 후에 안중서씨의 연구회지 69쪽에 기고문에는 ‘한성치과의사회는 1920년경에 창설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회는 차차 커져서 한국인만으로서의 치과의사회로 태평양 전쟁 초기까지 운영되다가 일시 중단되고 8.15 후에 재결성 되더니 이제 다시 발전되어 이른바 오늘날의 대한치과의사회라는 법정단체가 됐다’고 말한 것이다.

박명진의 연구회지 10쪽 글에는 1925년에 조직되었던 한성치과의사회가 일본 관헌의 간섭으로 1940년(1942년)에 폐지됐다가 해방 후인 1946년(1945년)에 조선치과의사회로 다시 발족해 오늘날의 협회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연구회지 24쪽에 신인철 씨는 해방 후 1945년 11월에 재경 한국인치과의사들이 과거 해체했던 한성치과의사회를 다시 부활해 지금의 서치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치과임상이라는 잡지에서는 1985년 12월 35쪽에 한성치과의사회는 전조선의 치과의사를 포괄하는 한국인 치과의사 단체였고, 광복 후에 결성된 조선치과의사회는 한성치과의사회의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1925년 6월 9일 한성치과의사회가 설립되고 1942년 10월 1일 한성치과의사회가 통폐합되고, 1945년 12월 9일 조선치과의사회가 생기고, 1949년 5월 29일 대한치과의사회가 발족된 뒤 1952년 3월 16일 법정단체인 대한치과의사회가 생기고 1959년 4월 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순서로 바뀌게 된다.

생일을 찾자는 얘기는 변석두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셨다. 1974년 2월 ‘생일 없는 고아’였다고 했으나 실제 생일은 있었다. 1960년에 나온 잡지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한성치과의사회를 부활 계승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못 보셨다. 1918년 조선치과의사회가 생겼는데 함석태, 한동찬이 참석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증거가 없다. 당시 조선치과의사회는 임의단체로 참석에 강제성이 없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 사진을 보면 한국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확인됐다. 조선치과의사회의 설립은 조선에 있는 일본인 치과의사 나라자끼와 도내가와 들이 입치사와 관계가 원활치 못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도움을 얻기 위함이었을 뿐이다.

3. 치협과 서치의 연혁에 대한 소고 - 임 경빈

한민족출신 서구식 치과의사들의 활동상이 한국 치과계의 활동상으로 선불리 간주되는 것은 위험. 한국사와 치협사는 같은 범주 안에 속하기 때문.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승인한 조선치과의사회(이후 전조선치과의사회로 개칭) 및 산하 일개지부의 회원으로의 활동이(대한민국 공식법인인 치협

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기능과 역할은 유사해도 국적 등 정체성에 대한 인식 및 위상이 너무 달라진다.

먼저 조선치과의사회는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에 래선한 일본인 치과의사 몇몇이 경성에서 구락부 형태의 치과의사 모임을 결성했다. 이는 한국의 최초 치과의사 단체인 경성치과의사회(1912.1.16)의 모체가 됐다. 이후 일본인 및 외국인 치과의사들이 곳곳에서 활동했고, 최초의 서구식 치과의사 교육기관 경성치의학교에서 일본인과 한민족출신 치과의사들이 배출돼 전국으로 그 활동이 퍼짐. 그 뒤 경성치과의사회가 모태가 되고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모여 중앙집권적 조선치과의사회를 발족(1921.10.2)시켰다.

일본치과의사들의 주도하에 한민족 출신 서구식 치과의사 포함 친목, 학술, 권익옹호 등을 도모키 위한 단체. 그러나 전 일본치과의사회의 한 지부의 성격이었을 뿐 국가의 대표성과는 거리가 먼 일본 지역치과의사단체 수준일 뿐.

다음 한성치과의사회는 일제하 일본에 유학해 치과의사면허를 획득한 한민족 출신 서구식 치과의사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서 배출된 한민족 출신 재경 치과의사들 위주로 1925년 발족. 발족 당시 회원들은 이미 재경 일본인 치과단체인 경성치과의사회 회원이었음. 이들은 서구식 치의학습득한 신지식인이었으며, 해방 후 새로 발족하는 한성치과의사회(1945.11), 조선치과의사회(1945.12.9)의 창립주역이었다. 그러나 등록단체인지, 임의단체인지 가늠할 증거가 없어 성격과 위상을 알 수 없다. 이후 한성치과의사회는 일본의 전시동원체제에 총독부의 명령으로 경성치과의사회에 해체 흡수됨.

이후 한성치과의사회는 일제강점기의 계승임을 표방하기도 꺾끄러웠고 국대안을 반대했으나 국대안을 찬성하는 회원들이 경성치과의사회를 창립함에 따라 일그러진 모습을 드러냄.

결론적으로, 치협이 기념일을 정하려면 일제강점기하에서 일본치과의사회의 한 지부이지만 한국 치과의사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해방공간의 와중에 발족했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신생 대한민국 치과계의 모습이 유연하다고 생각한다.

<지정 토론>

1. 현행 창립기념일에 대해 - 조 영수

변영남 선생님 발표의 지정 토론을 하게 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는 모두 식민지 시기인 1920년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만약 치협이 1921년 10월 2일이 아닌 다른 날을 창립기념일로 택하는 경우, 적어도 대한간호협회보다 역사가 뒤쳐지는 모양을 감수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각각 영국과 미국의 식민지였다. 두 나라 모두 치과의사협회의 연원을 식민지 시기에 두고 있다. 우리가 만약 일본이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였다면 논란의 양상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한두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치과계 구성원 전체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 결정해야 하는 자리라면돼야 할 것이다. 밑에서부터 지역단위에서부터 의견을 내서 방기해 뒀던 이 문제를 다루는 출발점이 오늘 공청회가 됐으면 한다.

2.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의 창립에 그 법통 연원을 뒤야 하는 까닭 - 김 평일

일제 강점기에 많은 임시정부가 있었다. 헌법에는 상해임시정부를 법통으로 삼는다고 했다. 다른 임시정부들이 양보해 합의했다.

많은 분들이 조선치과의사회에 한 사람의 조선인도 없을 수 있냐고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조선총독부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아부를 하고 있었다. 이등박문 사살 후 동상을 세우자며 이등박문을 애도하는 조선인이 많았다. 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인가? 조선인들이 조선치과의사회에 있었는가를 따질 필요 없다. 그들은 모두 변절자들이다. 한성치과의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아까 임경빈 선생이 한성치과의사회는 태극기를 걸어놓는 등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 그것은 불가능하므로 따질 필요 없다.

당시 일제강점기의 치욕의 역사를 우습게 봤다. 함석태 선생을 찾아가 '조선인들이 조직을 만들려한다'고 해서 부탁해 만든 것이 한성치과의사회다. 조선치과의사회의 회장은 일본인(테라우치 마사유키)이었다.

필리핀 얘기가 나왔다. 필리핀은 미국에 심정적으로 적극 동조하는 단체들도 있고 가까운 관계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다.

총회 당시에도 깊게 논의하지 못하고 대충 협회 창립일을 정해 버렸다.

3. 후학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연원에 대해 드리는 다섯 가지 질문 - 이 주연

한 단체의 역사적 연원을 따지려면 첫째, 각 치과의사단체의 창립목적과 활동내용, 조직형태, 조직주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둘째, 대한치과의사협회로의 성장을 주도해 온 주체의 시작을 따지는 것. 셋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 대한민국 치의들을 대표하는 전국 규모 사단법인체이고, 일본인 주도의 조선치과의사회와 피지배민족인 조선인들의 한성치과의사회가 차지할 수 있는 위상은 다르다.

협회의 모체 성립요건을 인적구성의 연속성이나 전국적 규모의 중앙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태로 볼 것인가, 완결체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임경빈 선생이 주장했듯 1945년에 발족한 조선치과의사회는 한국인들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첫 번째 전국 치과의사단체라는 점에서 일면 타당해 보인다고 한 의견에 주목한다.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연원을 해방 이후로 본다면 식민기 역사적 실체로 존재한 조선치과의사회와 한성치과의사회의 역사적 위상은 어떻게 놓을 것인가와 치협의 모체가 반드시 국제적으로 국적을 인정받는 공식단체여야 하는가를 묻고 싶다.

<자유토론>

이 재봉 교수 :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치과, 구강보건에 전력한 증거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일본사람들이든 미국사람들이든 우리나라의 치과발전에 도움이 됐다면 기원으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치과의사협회가 아니라고 본다.

유 석천 총무이사 : 김 평일 선생님께 질문, 치욕의 역사도 역사 당시 모든 백성들이 할 수 없이 목숨을 위해 친일을 한 사람들을 매도할 수 없을 듯 하다. 당시 대의원 총회의 결정 상황을 아는 데로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변 영남 : 김 평일 선생은 잘못 알고 있다. 변 석두 선생이 생일 없는 것에 대해 제안했고,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날짜를 정하지 못했으니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고려해 임원진에 일임했다.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다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 등 여러 안을 두고 고심하고 정한 것이다. 생일을 만들기로 하고 날짜를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한 것은 고민을 하고 당시 자료를 고려해 정한 것이다.

이 수구 협회장 : 신 재의 선생께 질문드린다. 1925년 6월 9일을 한성치과의사회의 설립일로 복원하자고 했는데 날짜가 6월 9일이라는 구체적 증거는 있는가? 확실한 날짜는 없는 것 같아 보인다. 또, 초대 회장은 누구로 해야 하나?

신 재의 : 날짜는 없고 연도는 있다. 6.9제인 것도 있고, 6월 9일은 오 응서 선생님이 해방 후 정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1925년 4월 15일 졸업 후 회를 창립했다. 봄, 가을로 정기회를 두 번 갖는다는 기록이 있어 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 초대회장은 함 석태, 박 명진으로 기록이 나와 있다. 다음부터는 이사장 제도가 생긴다.

이 수구 : '복원'이라는 말은 옳지 않은 것 아니냐. 6월 9일 자체도 기록이 희미한데 그것을 복원이라고 말할 수 있나? 1946년부터 이야기 된 날짜인 게 6월 9일인데... 1925년 이전에 6월 9일을 기념한 적이 있습니까?

변 영남 : 과거 일본인들은 6월 4일을 충치예방일로 기념했다.

이 병태 : 현재 문제는 3가지 안, 즉 ① 현행대로, ② 10월 2일에서 6월 9일로, ③ 향후 연구검토 후 공청회를 더 열어 논의하기로 하는 안 중, 몰랐던 사실을 임원과 치과계가 많이 알도록 해

논의하자. 여론이 기울면 정하자.

박 선욱 : 변 영남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잃어버린 역사도 역사다. 한반도에 치과의사가 나타나 구강보건을 위해 노력했느냐가 중요. 역사는 길면 좋은 것 같다. 경성치과의사회도 중요하고 입치사도 중요하다 역사로 따지면 그들도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경성치과의사회가 1911년에 만들어졌다면 그들도 중요하다.

변 영남 : 경성치과의사회는 서울지역에 국한된 조직이기 때문에 치협으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홍 예표 : 공청회니까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유하는 자리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충국 :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모두 논리적으로 맞기는 하다. 따라서 우리 단체의 성격, 즉 전문가 단체라는 점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공헌하는가가 인종, 민족, 국가를 떠나서 더 중요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2만 치과의사의 비전이 가장 적합한 의견으로...

양 승욱 : 해방이후와 해방 전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치협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1921년은 소멸됐다고 봐야 하고 1925년은 휴지, 휴면 상태에서 부활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시각이라고 본다.

차 혜영 : 피에르 포샤르학회와 같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치과의사도 기념하는데 인종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일본 사람이 국내에서 활동한 최초의 치과의사라면 그들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일본동창회

- 故 데지마 아기라 회장 一週忌를 맞이하여

김 회경¹⁾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일본 동창회 故 데지마 아기라(手嶋 東, 사진) 회장 서거 一週忌를 애도하면서 한일우호친선에 기여한 업적을 회상해본다.

故 데지마 아기라 회장 서거일은 2008년 9월 27일(당년 91세)였다. 그는 1939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고 현역 입대하여 奉天예비사관학교 졸업, 육군소년비행병학교 중대장, 자위대에 18년 근무, 1944년 9월 퇴임 후 후꾸오까(福岡)시 하가다(博多)구에서 개업하였다.



1. 회장 취임과 서울 모교 방문

1990년 7월 14일 경치전 동창회 회장 대행인 하세가와 도시나가(長谷川年長)로부터 인수받아 회장에 취임하였다. 신임 데지마 회장은 경성치전 동창회 운명이 2~3년일 것임을 예측하면서 '앞으로 2년간 열심히 나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임사를 하셨다고 한다.

회장으로 취임한지 2년째인 1991년 5월 25-26일 후꾸오까 하가다 도큐(福岡博多東急)호텔에서 경성치과의학전문 동창회 총회가 거행되었다. 이 총회에 이 춘근 서울치대 동창회장이 초청되어 서울치대 1기생도 동행할 것을 권유받아 1기생 10명도 동행하게 되었다. 총회 목적은 회원의 고령화로 인하여 회 운영이 유지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총회 진행 중, 동창회가 해산하기 전에 모교 방문을 한 후 해산하자는 제의가 의결되었다.

1992년 2월 15~16일 데지마 회장과 다기 마사노리(瀧 正典) 부회장이 내한하여 이춘근 회장, 지헌택 부회장과 모교 방문에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한 타협을 하였고, 1992년 5월 29일~6월 1일, 3박 4일 예정으로 일본 동창회원과 그 가족, 대만회원 2명 포함, 111명 대가족이 내한하여 세종호텔에 숙박하였다. 방문행사는 선후배 간에 한일우호친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5월 29일 : 호텔 도착, 등록, 휴식

5월 30일 : 모교 방문, 창경원, 비원, 대연각 이태원 쇼핑, 동기생 간친회

5월 31일 : 서울시내관광, 올림픽경기장, 남산, 북악스카이웨이.

16:00 강연 : 한국치과계의 현황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이 승우 학장

1) 金熙耿, 의학박사, 서울치대 제2회 졸(1948년)

- 또 하나의 만엽집 이 냉희 여사
- 환영사: 이 춘근 동창회 회장
- 축사 : 데지마 아기라 일본 동창회 회장
- 축사 : 장문괴(張文魁) 대만 동창회 회장

3박 4일의 여정도 지나가 6월 1일은 작별을 고하는 날이 왔다. 서로가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건강상태에 대한 심려가 걱정되었으나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종료되어 감사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일본 동창회원과 그 가족 110명을 인솔하여 내한한 총책임자 데지마 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 경치전 일본 동창회 해산선언

모교 방문 후 귀국한 데지마 회장은 1992년 8월 8일 제45회 총회를 오카야마(岡山) 로얄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오카야마를 택한 것은 경치전 설립자인 나기라 다쓰미(有樂達見) 경치전 교장의 고향이란다. 총회 참석 회원과 가족 인원은 총 188명, 제45회 총회에서 경치전 동창회 해산선언을 하였다.

이와 반면 로얄호텔에서는 재건 총회가 거행되고 있었다. 1991년 제44회 후꾸오카 총회에 참석했던 서울치대 1기생 10명이 1945년에 작별한 동기생과 46년 만에 재회와 동시에 경우회 재건문제를 논하였고 총회 석상에서 경치전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후학 후배교육에 봉직하시던 요고다 세이조(横田成三), 마기야마 마사후미(牧山正文), 도구마루 사다기(徳丸定樹) 교수와 재회하였고 1943년 입학 동기생 13명과 60대 중반에 재회, 46년 전의 결끄러운 감정은 사라지고 이산가족을 맞이하는 기쁨이었으니 상호간에 경우회 재건을 결의, 1992년 8월 8일 오카야마 로얄호텔에서 재건총회를 거행하였다.

3.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일본 동창회 탄생

1993년 11월 28일 : 1992년 5월 모교 방문 시 서울치대 이 승우 학장 강연 중 경성치과의학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회원임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발언과 지헌택 부회장이 번역해 발송한 동창회 회칙을 기초로 데지마 전 회장이 발기인이 되어, 경치전 동창회가 해산 선언한지 1년 3개월이 지난 1993년 11월 28일 탄생하여 초대 회장으로 데지마 아기라 회장이 선출되었다.

4. 동창회 기관지 「저경」 일본 동창회 「회보」

「저경」이 어느 회부터 발간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필자가 시초로 접하게 된 것은 1991년 5월 경치전 제44회 총회에 참석시 130호, 131호를 시초로 접하여 동창회 기관지이며 년 4회 정도 발행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1기생 10명도 데지마 회장과 초면 인사를 하게 되었다.

5. 데지마 회장과 필자의 인연

1993년 11월 28일 새로이 데지마 회장이 취임한 후 서신을 보내 동창회 기관지 「저경」에 모

교 소식 기사를 게재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찬성이라는 서신과 그 책임을 필자가 담당하라는 연락이 왔다. 기사 내용은 주로 「치의신보」에 의거하여 모교 교수진의 동태, 동창회원(1925~1945)의 동정, 원로치과의사 학수회, 경우회 소식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발송하는 역할이다. 「저경」지에 최초로 게재된 것이 저경 139호로 '치과병원 준공 소식'이었고 기사는 계속 송신되었으나 1995년 11월 1일 144호를 끝으로 폐간되었고, 1994년 7월 1일 서울대학교 일본 동창회 회보가 발행되었다.

「저경」동창회 회보의 주관은 데지마 회장이 직접 관여하였고 보조 역할은 야다베 히데쓰구(矢田部英世), 세기야 야스노리(關屋保憲)가 하였다. 격려의 서신에 신바람 나서 더욱 열심히 송고하였으나 2006년 데지마 회장의 건강상태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하여 동창회 회보도 40호(2005.8.1)를 끝으로 발간이 중지되었다. 12년간 데지마 회장과 필자의 관계는 사제지간처럼 맺어졌고 선후배간으로 돈독한 유대정신을 유지해 왔다.

6. 치과대학 동창회 명부 수정(1925~1945)

지헌택 동창회 회장 시절 2000년 동창회 명부에서 우연하게 일본 선배 성명에 誤字가 많은 것을 발견, 이대로 방치해 두면 영원히 수정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수정 작업은 어느 정도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고민하다 최후 결심 끝에 데지마 회장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구원의 손길을 서신으로 전한 바, 1996년 5월, 2000년 7월, 2001년 6월, 2002년 8월, 2003년 2월, 2004년 2월 발행된 동창회 명부를 송부해 주신 덕분에 12대 양 원식 회장(2002~2004), 13대 백 순지 회장(2006), 14대 홍 예표 회장(2008), 3대를 걸쳐 1925년~1945년 일본 선배 성명, 주소 등이 수정되었다.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출신 선배님 오자(誤字)를 수정하지 못한 것이 한(恨)이 된다.

7. 경우회와 데지마 회장

1992년 8월 경우회가 재결성되면서 2006년까지 12년간 경우회는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나 연령은 속일 수 없는 것, 노화 현상으로 자연 소멸되기 시작하였다. 그간 한국, 일본을 오고 가면서 경우회에 데지마 회장께서 참석 횟수는 한국에 오신 것이 1997년 FDA 총회, 2003년 서울치대 80주년 기념식 참석, 일본에서는 1994년 카고지마(鹿兒島), 1998년 노도한토(能登半島), 2000년도 교토(京都), 나라(奈良) 등에 참석하셨다.

언제인가 저경지에 자기는 젊은 시절 스모프로 심신(心身)을 단련하여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피력하신 바 있으나 노화현상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듯, 91세로 서거하셨다. 항상 인자하시고 후배를 사랑하고 지도편달 하시던 선배이시고 형님 같은 분이셨다. 서거하신 故 데지마 아기라 회장의 서거 1주년을 맞이하여 명복을 기원하며 이글을 바친다.

* 후기

2009년 6월 20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일본동창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산선언을 하였다는 소식이 동창회 회계감사 오가다 나오지로(緒方直次郎) 감사로부터 서신 연락이 왔다. 경성치과의학

교 졸업생 73명, 경치전 졸업생 912명, 합계 985명 중 1990년 데지마 회장이 동창회를 인수받을 때 생존자는 495명이었으나 그간 서거하신 회원이 저경 또는 동창회 회보에 발표되어 342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데지마 회장 생존 시에 생존자가 153명이었다고 하나 최근 소식통에 의하면 생존자가 40~50명 정도 일 것이란 정보이다.

* 등장인물명

手嶋 東 (데지마 아기라)

長谷川年長 (하세가와 도시나가)

李 春根

瀧 正典 (다기 마사노리)

李 勝雨

張文魁 (장문괴) 대만회원

柳樂達見 (나기라 다즈미) 경치전 교장

横田成三 (요고다 세이조) 교정학 교수

牧山正文 (마기야마 마사후미) 조직학 교수

徳丸定樹 (도구마루 사다기) 조직학 조교수

池 憲澤

矢田部英世 (야다베 히데쓰구)

關屋保憲 (세기야 야스노리)

梁 源植

白 純之

緒方直次郎 (오가다 나오지로)

洪 禮杓

1960년 '치과의사 면허 소송' 사건

조 영수¹⁾

1. 들어가며

1960년 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사회부에 공문(公文)을 보내 한 회원의 '치과의사 자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보건사회부는 이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면허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그 치과의사는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받았고, 이 무렵 4·19 혁명으로 보건사회부장관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교체되었다. 해가 바뀌기 전, 보건사회부는 면허취소 처분이 '사무착오'였다고 해명하면서 면허를 재교부하였다.

상당기간 개업 중이던 치과의사의 자격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문제 삼은 것이나 정부가 면허를 취소했다가 우려곡절을 거쳐 반복한 것이나 혼한 일은 아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면허를 취소한 근거, 또 재교부의 이유는 무엇이었나?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정부 공문서철²⁾을 토대로 그 과정과 배경을 탐색해 본다.

2. '면허취소' - 봄

1960년 3월 11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종서³⁾)가 보건사회부(장관 손창환⁴⁾) 앞으로 제출한 공문은 다음과 같이 한 문장에 불과했다.

“「韓齒 제24호」(단기 4293.3.11) : 치과의사 자격 조회에 관한 건 - 首題의 건에 관하여 本會에서 조사한 결과 A市內에서 개업하고 있는 B⁵⁾의 치과의사 자격에 대하여 疑問되는 점 이 有하오니 一次 조사하여 보아 주시기를 仰望하나이다.”

권익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는 문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구체적인 내막은 알 수 없으나 단순한 '의문' 이상의 그 무엇이 있었다고 여겨지

1) 대한치과의사학회 부회장

2)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 『치과의사면허취소』, 1960 (국가기록원 문서번호 BA0103938). 총 168쪽, 시기별로 7건이 分綴되어 있다. ① 치과의사면허취소에 관한 건(출두통지의 건) (1960.4.25, 155-168쪽), ② 치과의사면허취소에 관한 소원각하의 건 (1960.5.20, 130-154쪽), ③ 행정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건 (1960.5.20, 126-129쪽) ④ 가처분 취소신청의뢰에 관한 건 (1960.7.11, 121-125쪽), ⑤ 치과의사 면허취소에 관한 건 (1960.7.22, 114-120쪽) ⑥ 치과의사 면허재교부에 관한 건(1961.1.11, 1-111쪽). ⑦ 소송수행촉진에 관한 건 (1961.6.21, 112-113쪽).

3) 安鍾書(1879~1968), 서울 출신, 경성치과학교 제1회 졸(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총무, 세브란스 병원 치과 근무, 텐진(天津) 남개대학 치과교의, 조선치과의사회 회장(1945), 대한치과의사(협)회장(4회),

4) 孫昌煥(1909-1966), 경남 출신.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의학부 졸(1940년), 이화의대부속병원장, 보건사회부 장관(57.6.17~60.4.28), 대한적십자사총재(2회).

5)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사본(寫本)에는 개인 신상기록이 삭제되어 있음. 이 글의 초점은 면허자격 시비에 휘말렸던 치과의사 개인이 아니라 면허 취소, 재교부를 야기한 당시 행정당국, 치과계의 난맥상 및 시대적 상황임.

는 대목이다. 보건사회부에 직접 방문, 제출하였던 것인지 공문 접수일도 같은 날(3.11)이었다.

보건사회부는 지방에 있는 B에게 「면허증 지참하여 3월 25일 오전 11시까지 당부(當部) 의무과로 출두」 하라고 '통지'하였다(3.18). B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 그는 서울로 올라가는 대신 '각서'(覺書)에 무인(拇印)을 찍어 제출하였다.

‘소생(小生) 보건사회부 보건과에 3월 31일까지 면허증과 인감(印鑑) 지참하여 출두(出頭)치 안하면 면허증 취소하여도 무방(無妨)하나이다. 4293.3.28. 保健部 醫務科長⁶⁾ 귀하’

이처럼 다소 의외의 문구는 B의 자의(自意)가 아니라 행정 당국이 제시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당국을 상대로 자신을 지켜낼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B는 보건사회부에 출두하지 않았다.

4월 7일 보건사회부 의정국은 '치과의사 면허취소에 관한 건'을 내부 품의(稟議)하였다. 당시 의정국은 윤유선⁷⁾ 국장, 윤현찬 의무과장, (치과관련) 주무(主務)는 강국형 치무(齒務)담당관⁸⁾이었다. 품의서에는 면허 취소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조회가 有한 B는 下記와 같은 사유로 그 면허를 취소함이 可하오 리까. 裁決을 仰請하나이다.

一. 인적사항 (생략)

二. 서류검토사항 : 檀紀 4284(1951)년 7월 16,17일 兩日間 시행한 치과의사 자격검정시험 제2부 시험에 응시하여 보철학 한 과목은 합격한 사실이 있으나, 제2부의 잔여과목 '구강 외과학, 교정학, 보존학' 은 합격한 사실이 없이 1951년도 후기 치과의사 자격검정시험 제3부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므로 면허를 취소함이 可하다고 사료함...(後略)“

치과의사검정시험은 원래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에 부족한 치과의사를 단기간에 공급하기 위해 1921년부터 시행했던 제도이다. 이 시험은 해방 후에도 시행되었는데⁹⁾ 제1부(기초과목 학술 시험), 제2부(임상과목 학술시험), 제3부(實地시험)를 차례로 통과해야만 했다. 전란 중이던 1951년 부산에서 제2부(7월, 11월) 및 제3부(12월) 시험이 있었다. 이 시험을 치렀던 B의 '합격'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보건사회부의 판단이었다. 시험 성적, 채점 결과 등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품의는 이튿날 장관 결제를 받고 바로 시행되었다. 의정국장은 B에게 「치과의사 자격검정시험 제2부 초과과목을 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면허를 취소한다」고 통보하였고 B는 「면허취소통지서」를 수령했다(4.15). 그런데 의정국장은 다시 「귀하에 통첩한 치과의사 면허취소의 건에 관하여

6) 애초 '醫務課 齒務係長'이라고 썼다가 줄을 그어 '齒務係長'을 지우고 '醫務課長'으로 수정되어 있음. 1960년 3월 현재 보건사회부 편제에 치무과는 없었고 의무과에 치무담당관이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101쪽).

7) 尹裕善(1910~?) 충남 아산, 윤보선의 사촌, 배재고보, 세브란스의전, 동경제대(의학박사), 보건후생부 성병과장(1947), 방역과장/만성병과장(1948), 존스홉킨스대 보건대학원(공중보건학. 1948), 보건부 의정국장(1954~55), 중앙방역연구소장(1956), 보건사회부 의정국장(1958~1960.6), 국립의료원장(1967), 연세의대 교수, 한양의대 학장.

8) 姜國馨,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15회 졸(1943). 당시 관련 공문의 '主務'에는 모두 그의 인장이 찍혀 있다. 나중에 (60년 8월) 치무과가 생긴 뒤 공석(空席)이던 치무과장의 결제 난에도 그의 도장이 대리(代理)로 찍혀 있다.

9) 1946년 2월 임시특별시험 이후 매년 春期(4~5월) 및 秋期(10~11월)에 시행.

同 통첩문 수령(접수) 일자를 조속히 回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4.18), B는 「下達하신 본인의 치과의사 면허취소 통보를 1960년 4월 15일 무위 접수하였기에 회보하나이다」라고 재차 확인해 주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한 보건사회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A시 관할 C도지사에게 공문으로 '치과의사 면허취소' 사실을 통보하였다(4.25). 이처럼 마치 미리 준비해 둔 것처럼 '면허취소'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B의 반응은 반발이나 항변보다 체념과 수용에 가까워 보였다.

3. 반전(反轉) - 여름

그 무렵, 사회는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 이승만의 폭정과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켈기는 4·19혁명으로 터져 나왔다. 4월 26일 대통령은 권좌에서 내려오고 자유당은 몰락했다. 이틀 뒤 보건사회부 장관이 물러나고 뒤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사퇴하였다¹⁰⁾. 이승만이 물러난 이튿날이자 장관 사퇴 바로 전날이라는 절묘한 시점(4.27)에 서울고등법원은 '치의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子本』 4293년 行申 제10호.

신청인 : B, (대리인 : 변호사 박세영¹¹⁾)

피신청인 : 보건사회부 장관 손창환

치의면허 취소처분 집행 정지결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如左 결정한다. [主文] 피신청인의 단기 4293.4.8자 保醫 제633호로 신청인에 대한 보건사회부 장관 손창환의 치의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본건에 대한 本案 訴訟 判決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4293.4.27. 서울고등법원 특별 제1호 재판장, 판사 金在沃, 김영국, 조규대

B가 변호사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점과 배경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는 최종 판결까지 개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일견 단순명료해 보이던 사건의 양상은 이제 달라졌다. 보건사회부는 신임 장관¹²⁾을 피신청인(피고)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대처해야 했다. 회장서리 체제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4월 말, B가 소속된 C지부 치과의사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보낸 항의성 공문¹³⁾에는 이 사건의 파장과 문제점, 핵심 쟁점이 잘 드러나 있다.

“... 지방 일간신문에... 부정이 발각되어 면허를 취소당한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이곳 보건행정당국 및 우리 회를 공격하는 大書特記한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서 일반사회는 물론 이려니와 우리 의료계에 적지 않은 物議와 파문을 이르켜...,

其後 B씨는... 보사부장관 손창환 씨를 걸어 행정소송을 提起하고 서울고등법원의 면허취

10) 자유당 중앙위원이던 안중서 회장 등 자유당 계열 임원들의 사표는 치협 임시이사회(1960.5.10)에서 수리되었다(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101쪽 ; 이주연. 한국 근현대 치과의료체계의 형성과 발전, 해안, 2006, 359쪽).

11) 박세영(朴世英), 1916년 생, 검사, 변호사

12) 김성진(金晟鎭) : 1905년 생, 충남 부여, 경성제대 의학부(1930) 의학박사(1936), 조선의사회 경기도지부 임원(1944.11) 국회의원, 보건사회부 장관(60.4.28~60.8.19).

13) [공문] C도치과의사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귀하, '치과의사 면허취소에 관한 건', 단기 4293년 4월 30일.

소처분 집행에 대한 訴訟 判決시까지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계속 개업을 하겠끔 되어 있는 현실임으로....

만일 주무장관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輕率히 면허를 아무 근거 없이 취소하였다고 하며는 잠시나마 개인의 既得 利權을 박탈한 만큼 경제적으로 보나 또 명예 損傷으로 보나 도저히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로서도 회원의 이권을 옹호하는 견지에서 默默地 좌시할 문제가 아니라고 사료되오며,

반면에 면허취득에 있어 小毫라도 부정이 있거나 혹은 이 부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고 이 소송에 있어서 非常한 手法을 써가면서까지 소송을 有利化하게끔 만든다는 점이 추호라도 있다면, 우리 회로서는 정당한 회원들의 이권을 옹호하고 부정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또는 부패된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단연히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이처럼 행정당국과 B, 어느 쪽이든 잘못 내지 부정을 저질렀을 개연성과 책임을 구분, 적시(摘示)하였는데, 특히 '非常한 手法' 운운한 점이 주목된다. 어느 쪽이든 패소(敗訴)하는 경우 나름대로의 파장이 예상된다.

B는 5월 4일, '善處하여 주심을 仰望'하는 소원장(訴願狀)을 보건사회부에 제출하였고, 보건사회부의 대응은 변화가 없었다. 「1951년 7월에 시행한 제2부 시험에서 보철학 1과목은 합격하였으나 귀하가 주장하는 1951년 11월에 시행한 제2부 시험에서 1과목도 합격한 사실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B의 訴願을 '각하'하였다. 보건사회부는 모(某) 변호사를 행정소송 대리인으로 선임(5.20)하고, B에게 이력서 제출을 요청(5.25)하는 등 소송에 적극 대처하기 시작했다.

6월 들어 윤유순 의정국장은 '손창환 전(前) 장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부정선거에 참가하라는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조사(6.1)¹⁴⁾받고 교체되고, 후임 의정국장으로 이용승¹⁵⁾이 임명되었다(6.15)¹⁶⁾.

이 즈음 보건사회부는 B에 대한 폐업조치의 가능성까지 우회적으로 타진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의 관할 C도지사(道知事)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이 나오지 않는 한, 해당 齒科醫業에 폐업조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貴見 如何하든지 至急 回示」를 요청했던 것이다(6.30). 이에 보건사회부는 "...당부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0조 2항에 의한 동 가처분 정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있음으로..." 등을 내용으로 회신을 작성(7.11)하는 동시에, 소송 대리인 변호사에게 '가처분 취소신청'을 의뢰하는 공문을 아래와 같이 기안(起案)하였다.

"... 1960.4.27 서울고법 특별 제1부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결정되었기로 당부로서는 행정소송법 제10조 2항에 의한 동 처분에 대한 정지처분 신청을 時急 제출하여 주시기를 敬望하나다.

B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검정시험 규정 제8조¹⁷⁾ 위법자로서 고의적으로 當部의 사무작오를 法的으로 합리화하여¹⁸⁾ 궁극 당부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한편 국가고시의 존엄성을 모

14) '우정(郵政), 의정(醫政) 양(兩) 국장 환문(還門)', 동아일보 1960.6.2.

15) 李溶昇(1917~?) 경기 수원, 경성의전, 의학박사(1945), 필리핀 국립대 보건대학원(1952), 국립중앙보건소장(1948). 보건사회부 보건과장(1954).

16) '정부 인사', 동아일보 1960.6.15.

17) [규정] 제8조, 부정행위를 한 자

독하려는 의도 하에 여사한 소송을 제기하여 당부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 현재도 의료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바, 이는 당부 국민의료행정상의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사례이니 이를 본 소심 판결時까지 가처분 취소결정 신청을 시급히 제기하여야 함...”

이처럼 B를 ‘고의적으로... (행정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국가고시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위법자’로 몰아세웠다. 그런데 여기서, 앞뒤 문맥에 맞지 않아 보이는 문구인 ‘사무착오’를 보건사회부가 슬며시 언급한 사실이 주목된다. 도대체 무엇이 ‘사무착오’이며, B가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합리화’하였다는 것인가? 이미 내용은 파악하였으되 공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향후 상황의 전개에 따른 불가피한 파장까지 고려하여 미리 복선(伏線)으로 깔아둔 것은 아니었을까. 아무튼,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정지처분’은 보건사회부가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기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정국장은 이 기안을 ‘보류’하였다. 소송대리인이 난색을 표명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가처분에 대한 정지처분’ 신청이 여의치 않았거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음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지처분 신청을 제기’라는 내용으로 C 도지사에게 보내려던 공문은 폐안(廢案)되었다. 결국 새로 작성한 회신(7.22)에서 “... (가처분이) 사실상 효력 발생이 부여된 것임으로 同件 本訴審 판결時까지는 의법 폐업조치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라고 물러섰다. 보건사회부는 이제 특별한 대책 없이 추이를 관망할 수밖에 없었다.

8월 12일, 허정 과도정부는 보건사회부 직제에서 치무계를 치무과로 승격, 설치하였다. 그러나 과장 발령 없이 공석(空席) 상태에서 여전히 강국형(姜國馨) 치무담당관이 치무행정을 맡고 있었다. 8월 23일 출범한 장면 내각의 신임 보건사회부 장관 신현돈¹⁹⁾은 3주 만에 교체되고 다시 나용균²⁰⁾ 장관이 취임하였다(9.12).

4. 실증(實證) - 가을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 특별 제1부는 ‘원고로부터 문서제출 申立²¹⁾이 有한 바 그 이유가 穩當하므로... 피고가 所持중인 1951~52년도 치과의사시험 관계서류 一切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주문(主文)의 판결을 보건사회부 장관(피고)에게 보냈다. 보건사회부 실무자는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도 可하온지 裁決하여 주심을 仰請’하였다(10.11). 원고(B)의 당당함과 피고(보건사회부장관)의 위축이 대조적이다.

보건사회부가 보관 중이던 ‘1951~52년도 치과의사 시험서류철’은 2책(冊)이었다. 이를 법원에 제출(10.12)한 이후 의정국은 신임장관에게 이 사건의 경과를 종합 보고하였다(10.19).

“1. 면허취소 이유 : 1960년 3월 11일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조사의뢰...(중략)... 1951

18) 밀줄 필자

19) 申鉉燾(1904-1965), 경북 안동, 경성의전 졸, 경성의전 부속병원 내과, 산부인과, 대동청년단(1945), 제헌의원, 보사부장관(60.8.23~60.9.12), 도지사(전북, 경북), 내무부장관.

20) 羅容均(1896-1984). 전북 정읍, 와세다대 정경대 중퇴, 재동경유학생 독립선언으로 투옥(1919),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 영국 런던대 정치경제학, 극동인민대표회의 대표(1921), 한민당(1945), 제헌의원, 국회부의장, 보사부장관(60.9.12~61.1.29).

21) 개인이 국가나 공공 단체에 어떤 사항을 청구하기 위하여 의사 표시를 함.

년 치과의사 자격검정시험 제2부 ...부당히 면허증을 받은 자 임으로²²⁾ 1960년 4월 8일자 취소 되었음.

2. 면허취소 후 : 행정소송(4.27) 이후 계속 A市內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며 당부로서는 000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음.”

이어지는 '검정시험 응시자격'²³⁾ 항목에서는, B가 1949년 5월 시험 당시에 제출했던 이력서에 기록된 '일본 대판부립 00상업학교 졸업' 부분에 대해 이미 보건사회부의 확인 절차가 있었다²⁴⁾. 또한 B의 첫 번째 시험(初試)이었던 1948년 9월의 검정시험 당시에 '어떻게 응시자격이 부여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없'음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주요 쟁점은 아니었다²⁵⁾.

관련 서류철에 의하면 B는 1부에서 3부까지 총 7차례 검정시험을 치렀다(표1). 제1부 시험은 1948년 9월에 해부학, 위생학 과목합격을 시작으로, 1949년 5월 약리학, 1949년 10월 병리학, 1950년 4월 생리학, 생화학, 세균학 과목합격으로 모두 통과하였다. 이후 1951년 7월 시험에서 보철학 합격²⁶⁾, 11월 구강외과학, 교정학, 보존학 과목합격으로 제2부 통과, 12월 3일~5일 부산시 교통병원 치과에서 시행했던 제3부 實地시험은 구강외과, 보존, 보철 세 과목 모두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품의서는 “전과목 합격으로 되어 있으나 제1부 시험은 관계서류철이 없으므로 합격을 인정하기에는 至難”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1부 시험 결과 서류'의 존재 여부 역시 쟁점은 아니었다.

표1, B의 1~3부 검정시험 시행연월, 수험번호, 합격과목

응시부별	시행연월	수험번호	합격과목
1부	1948. 9	17	해부, 위생
	1949. 5	9	약리
	1949.10	13	병리
	1950. 4	1	생리, 생화학, 세균
2부	1951. 7	20	보철
	1951.11	38	구강외과, 교정, 보존
3부	1951.12	62	보철, 보존, 구강외과

핵심 쟁점은 1951년 11월 26~27일 서울의과대학 부산출장소 회의실에서 시행되었던 제2부 시험의 결과이다. 의정국 의무과의 '1951년도 치과의사 시험서류철, 제1,2책(冊) 채점 검토사항'은 서로 상반된 2가지 결과를 보여주었다(표2). 첫째, 제1책 '제2부 합격자 일람표'(194쪽)의 합격자 명부(4명)에 B의 이름이 없으며, '제2부 과목성적 일람표'(196쪽)에 수험번호 43, B의 성적이 '전과목 낙제'로 되어 있다. 둘째, 제1책 '제2부 합격자 일람표'(235쪽)의 합격자 명부(6명)에 B가 들어 있으며, 제2책 45-46쪽 사이에 '사입(射入)되어 있는' 시험성적표 1장에 수험번호 38, B의 성적이 '전과

22) 이 부분은 추후 '자(者) 임으로'에서 '자(者)로 오인(誤認)하고'로 수정, 날인(捺印)된다.

23) 중등학교 혹은 고등보통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수업연한 3년 이상의 치과의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 치과의학교에서 3년 이상의 치과의학 과정 수료자 (조선경찰법령집 하권 제4집, 의무, 치과의사시험규정 제4조).

24) 대판부 총무부 교육과로부터 '그 학교가 현재 所在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받음(1960.9.8).

25) 실제 '주 23'과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았다.

26) 당시 과목별 점수는 '구강외과학 缺, 교정학 15점, 보철학 60점, 보존학 50점' (1951.7.23. 保醫 호, 치과의사시험위원장, '1951년도 치과의사자격검정시험 제2부 및 과목합격자 발표에 관한 건')

목 합격'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서류철에는 '합격과 낙제' 두 결과가 공존(共存)하고 있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서류철 제2책 중간에 '끼워져' 있었다는 시험성적표 1장의 진위(眞僞) 여부이다. 보건사회부는 해당 용지의 紙質과 筆跡으로 보아 적어도 1951년 당시의 담당자가 '당시' 사용하던 종이에 기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²⁷⁾.

표2. 'B'의 제2부 및 제3부 검정시험 과목별 성적

	시기	수험번호		구강외과	교정	보철	보존	근거 서류	
2부	7월	20		缺	15	60	50	제2부 시험성적표	
	11월	43	낙제	43	30	25	40	제2부	제1책 196쪽
		38	합격	60	60	합	65	시험성적표	제2책 44~45쪽(사입)
3부	12월	62		60	-	60	60	제3부 시험성적표	

이제 남은 것은, 1951년 11월 제2부 시험의 두 결과 중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것이었다. '합격'(수험번호 38)의 경우 서류철 중간에 시험성적표가 끼워져 있었다는 점이 의심스럽고, 학술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60, 60, 65'인 것이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진위(眞僞)를 단정할 수 없다. '낙제'(수험번호 43)의 경우 7월에 이미 합격했던 보철 과목에 대한 점수(25점)까지 부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채점표가 조작되었을 경우를 가정할 때, '합격을 낙제로' 바꾸려는 경우보다 '낙제를 합격으로' 바꾸려는 경우의 개연성이 더 클 것이다. 어쨌든 전시(戰時) 피난지 부산에서 벌어졌던 일을 9년이 지나서 정확히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국가시험의 시행과 그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은 보건사회부의 책임이다. 동일인에 대해 두 개의 수험번호와 두 가지 채점 기록을 담은 행정서류철을 앞에 놓고 보건사회부는 참으로 난감하였을 것이다. 지난 3월에 이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경솔한' 면허 취소였고, 만일 확인하고도 무시했다면 문제가 더 중차대하다. 보건사회부는 법정에서 이런 내용이 공개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을 것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든 보건사회부는 잃을 것 밖에 없었다.

이 무렵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기총회(10.12~13)에서 회장서리체제를 마감하고 한동찬²⁸⁾ 회장, 윤재욱²⁹⁾, 서영규 부회장의 새 집행부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보건사회부의 치무과 폐지 방침에 직면하여 중앙위원회(11.18), 임시총회(12.4)를 소집하는 비상한 상태였다. '1960년 8월에 치무과 설치가 확정됐으나 보사행정 당국이 치협과 상의 없이 極秘의 방법으로 보건사회부 치무과 폐지안을 上申한 독재성을 규탄'하고 "보사부 장관 및 차관을 불신임"하며, "치무과 폐지의 경우 곧 전 치과의사의 면허증을 당국에 반환할 것을 결의"³⁰⁾하고 성명서 채택 등 총력 궐기하였다.

27) "1951년 치과의사 시험철 제1책, 제2책 共に 당시 담당자 000의 필적으로 인정되며 그 2책에 45페이지 46페이지 사이에 사입되어 있는 성적표 용지 지질 잉크색은 동련 제1책 195페이지 용지 지질 잉크색과 같으며 동책 196페이지의 용지 지질 및 잉크색은 동책 235페이지, 194페이지와 같음"

28) 동경치과대학전문학교 졸업(1916), 평양시치과의사회장, 북조선 인민위원회 상업국장(1946), 민주당 중앙위원

29) 尹在旭. 1910년 생, 검정시험 출신, 서울치과의사회장(1948), 제헌국회의원, 민의원(1954).

30) '치협, 투쟁의 역사 계속 - 1960년 치무과 폐지 관련 결의문·성명서 원본 발건' 치의신보, 제1562호, 2007.7.9자

5. 허망한 결말 - 겨울

보건사회부는 11월 7일 '국립도서관에 직원을 파견하여 1950년도 관보철에서 B에 관련된 서류를 발견'하였다. 대한민국 관보 제370호(1950.5.30)에 당시 구영숙³¹⁾ 보건사회부 장관이 '치과의사검정시험위원장' 자격으로 발표했던 1부 합격자 명부에 B의 이름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1부 시험 결과 서류'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은 아니었으나 보건사회부는 이를 부내(部內)에 공람(供覽)하고 국면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였다³²⁾.

앞서 언급했던 품의서(10.11)의 표지와 두번째 쪽 사이에 원래 서류의 1/2정도 크기의 작은 부전지(附箋紙)³³⁾ 1장이 사입(射入)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의정국장이 11월 25일에 친필로 작성한 것이었다.

"B의 면허취소를 취소하여 면허를 再交付토록 조치하고, '金00'에 대하여는 再次 00히 調査한 후에 합격한 사실이 없다고 認定될 때에는 면허를 취소토록 할 것.

25/Nov. 1960. 의정국장 李溶昇 (印)"

B의 '면허를 재교부'한다? 상반된 두 결과가 공존하는데 어떻게 이런 조치를 지시할 수 있었을까? 갑자기 등장한 '金00'은 누구인가? 서류철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단 B가 치렀던 1~3부 시험에 대한 지원자, 합격자, 성적표, 채점표³⁴⁾ 등 다량의 사본(寫本)이 첨부되어 있어, 그 내용을 수차례 교차(交叉)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의정국장이 지시한 조치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B의 '합격'과 '낙제' 점수를 보여주는 '제2부 각 과목 성적표'는 1951년도 시험철 '제1책 196쪽'과 '제2책 45-46쪽' 사이 사입(射入) 두 곳에 실려 있었다(표2). 각 성적표에는 응시자 10명의 수험번호, 이름, 과목별 성적이 적혀 있는데, 단 한 군데만 제외하면 두 성적표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였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전자(前者) - '제1책 196쪽'의 성적표에는 수험번호 43이 B, 수험번호 38이 金00로 되어 있었고, 후자(後者) - '제2책 45-46쪽' 사이에 사입(射入)된 성적표에는 반대로 수험번호 38이 B, 수험번호 43이 金00로 되어 있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이 똑같은데 단지 B와 金00의 이름이 서로 뒤바뀌어 있었다.

두 성적표가 각각 언제 작성된 것인지, 또한 성적표에 B와 金00의 이름이 뒤바뀌어 있는 것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위조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³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을 종합하면 후자의 내용이 '참'이고 전자의 내용이 틀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제1책 196쪽' 성적표의 내용을 무시한다면, B의 수험번호는 둘이 아니라 하나(38번)이고 그에 대한 혐의(嫌疑)는 모두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 된다. 그것이 보건사회부 의정국의 최종 판단이었다.

의정국장이 메모지를 작성한 바로 그 날 B에게 출두통지가 있었다. "귀하가 제기한 행정소송

31) 1892년생. 세브란스의전 졸. 보건사회부장관(1948.6.4~1950.11.4) ; 1951.12.9. 保醫00호, 치과의사시험위원장, 1951년 추기(秋期) 제3부 합격자 발표의 건.

32) 공람(供覽), 1960.11.8, '치과의사(B) 면허 취소에 관한 건', (장관 결제 12.8)

33) 문건이나 서류에 간단한 의견을 써서 덧붙이는 쪽지, 메모지.

34) 채점표의 경우, B가 치른 1951년 7월 교정과 시험의 시험위원은 이유경이었고, 11월 수험번호 43(낙제) 시험에서 구강외과학 과목의 시험위원은 김용관, 보철학 과목은 박명진이었다.

35) 이 시기 사본(寫本)은 필사(筆寫)이므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 또는 의도적 오서(誤書)가 있을 수 있다.

사건에 있어 상의지사(相議之事)가 있사오니 통지서 수령 즉시 당부 치무과에 출두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11.25)”. 그로부터 2주에 걸쳐 B(대리인)와 보건사회부는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품의(12.5)를 거쳐 재결(裁決)되었다(12.7).

「...계속하여 엄밀히 조사한 결과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검정시험 제1,2,3부의 部別 시험에 합격한 사실, 관보와 당부 備置서류 상으로 확인되었아옴기 (檀紀 4293년 4월 9일자 면허취소는 사무적 착오로 생한 것임), B의 면허 취소를 취소하고 재교부토록 조치함이 可하오리까, 裁決을 仰請하나이다.

추신 : 본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1960. 행제49호)한 소송사건의 당사자인 B로부터 別紙 訴取下書 사본과 각서 등 각 1通式을 제출케 하여 첨부하나이다.

* 行第49호 「訴取下書」 ...당사자간 원만 해결되었으므로 자에 소송 訴를 取下하나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辯護士 000, 서울고등법원 귀하.

* 「覺書」 ...본건에 係한 一切(사건으로 인하여 생한 損害)의 被害사실에 대하여 귀부와는 再論치 않겠아오니 이에 각서를 差入하나이다. 1960.12.5, 보건사회부장관 나용균 귀하」

이렇게 보건사회부는 ‘면허 취소는 사무적 착오’였음을 천명하였다. ‘각주 22’와 같이 ‘부당히 면허증을 받은 ‘者 임으로’」를 「...‘者로 誤認하고’」로 수정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을 것이다. B는 ‘부당히 면허증을 받은 (위법)자’가 아니라 그렇게 ‘오인’된 피해자로 바뀌었다. B에게 ‘치과의사 면허를 교부코저’ 품의된 서류(12.7)에서 그 사유를 적는 ‘이서’(裏書) 내용에 아래 괄호 부분과 같이 줄을 그어 지운 문구가 있음은 흥미롭다. 국장급에서 이미 방침이 결정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선에서는 여전히 ‘부당면허’라는 표현을 구사하였다가 삭제되는 흔적을 남긴 것이다.

「(부당면허 취득으로) 1960.4.8일자 면허대장에서 말소된 면허 00호는 사무착오로 판명되어 재교부함. - 檀紀 4293년 12월 7일 보건사회부장관 나용균」

의정국장은 B에게 “相議之事가 有하오니... 즉시 명함판 사진 2매와 인장을 지참, 당부 치무과에 출두”할 것을 알렸고(12.7), B는 12월 12일자로 새 면허증을 교부받고 수령증(受領證)을 남겼다. 보건사회부는 C道 문교사회국장(12.12)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장(1961.1.11)³⁶⁾에게 이를 알려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취소하였든 B의 면허증은 사무착오로 확인되어 재교부하오니 양지하시기 양망하나이다」

6. 남은 이야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바라던 바 치무과는 존속되었고 김판술³⁷⁾ 장관 재임시기인 1961년 4월, 그동안 공식이던 치무과장 발령(오응서 과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곧이어 터진 5·16으로 치무과는 다시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결의문과 성명서를 동원하였던 1960년과 달리 ‘국가재건최고회의

36) 해를 넘겨서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알린 것은 당시 큰 현안이었던 ‘치무과 존폐 논란’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7) 金判述(1909~2009), 교토대 농림화학과(1937), 민주당, 민중당, 민한당, 평민당, 보건사회부 장관(61.1.30~61.5.18).

의장에게 陳情書를 내기도 하였으나 奏效를 얻지 못하고 폐지³⁸⁾되고 말았다.

5·16 직후 보건사회부 장관은 다시 바뀌었다. 지난 1년 동안 6번째 교체였다. 장덕승³⁹⁾ 신임 장관은 1961년 6월 21일, 국과장 및 산하기관장에게 '소송수행 促進'을 하달하였다. '5월 말 현재 계류 중인 5,320건의 소송에 대해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拂拭하고 5·16 혁명정신을 소송에 반영시켜 적극적이고 성실한 소송을 수행하여... 국민의 혁명정부에 대한 신임을 돈독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당시 기존의 행정소송에 문제가 많아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던 점을 파악한 '혁명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했던 것이다.

1945년 해방 후 일본인이 빠져나간 치과의료계에는 인력, 시설,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취약과 혼란이 적지 않았다. 또한 치과계의 일부 지도급 인사들이 교육, 조직, 행정 등 각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빈발하였다. 미군정기 보건후생부 치무국의 주요 업무는 치과의사 면허 및 등록이었던 바⁴⁰⁾, 무자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일도 발생하였다⁴¹⁾. 1950년대 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52년~53년에 걸쳐 치과의사 면허를 부정 취득한 2명에 대해 보건부에 건의하여 이를 취소하도록 조치'⁴²⁾하기도 했다.

1960년 '치과의사 면허소송' 사건이 1952년~53년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과 결과가 달랐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경솔한 면허 취소'를 자초한 원인이 서류 검토의 부실함이었는지, 허위 정보를 맹신한 성급함이었는지, 의도적이고 편향적인 해석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단순한 '사무 착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요청 직후 충분한 검토와 확인 과정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었던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1960년 '치과의사 면허소송' 사건의 배경으로, 행정부의 전횡(專橫)과 그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4·19 등 사회 민주화와 법치(法治)의 확대 등을 들 수도 있겠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국가의 공적 영역(행정)과 민간 영역(치과계) 간의 '관계'가 195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그 본성(本性)이 변화하였음⁴³⁾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실제 1950년대 중반 이후 입치사(入齒師) 또는 한지(限地) 치과의사 문제 등으로 국가권력과 치과의사단체는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였다⁴⁴⁾. 특히 치무과는 국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浮沈)을 반복하였는데, 치무행정부서의 '성격'에 대한 정부와 치과계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1960년 '치과의사 면허소송'은 과연 행정의 횡포에 맞선 개인의 승리인가? 우리가 합리성, 법, 민주 등 근대적 개념과 제도에 가치를 부여하고 식민지 이후 그러한 근대적 가치들이 더더욱 나날이 발전되고 있다고 믿는 중에도 소위 '근대성'의 마수(魔手)는 우리의 건강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행동을 굴절시켜 온 것은 아닌가?

38)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101쪽.

39) 張德昇(1914-1962), 평북, 서울의대, 공군의무감, 중장 예편, 보건사회부 장관(61.5.20-7.6).

40) '치과의사 면허와 등록, 4월 15일까지' 「大東新聞」, 1947.3.6자 2면.

41) '무자격자에 면허 - 치과의무국장 瀆職' 「현대일보」, 1947.2.14자 2면.

42)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72쪽. 당시 집행부는 안 중서 회장(1950.5~1954.6) 체제였음.

43) 조선의료령(1944)의 극복이자 계승(?)이었던 '국민의료법' 제정(1952)은 의료단체의 법정단체화를 강제하였다.

44) 1955 12.2 保제2351호 보건사회부장관, 법제실장 귀하, 「입치(入齒)영업자의 자격 부여 및 그 명칭에 관한 건」

1957 법무 제316호. 법령질의철.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입치영업자의 업무부여 및 그 명칭에 관한 건」

학회활동

1. 정기총회 : 2009년 3월 17일(화), 서울대 치과병원 직원식당 회의실
2008년도 회무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2009년도 사업계획안, 예산안 심의 의결
2. 치협 창립기념일에 관한 공청회 : 2009년 9월 9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
3. 학술집담회 : 1차 2009년 3월 17일(화), 서울대 치과병원 직원식당 회의실
연제 : “치과대학 학제변화” (류 인철 부회장)

2차 2009년 5월 19일(화), 서울대 치과병원 직원식당 회의실
연제 : “산업체 구강검진제도의 변천사” (변 영남 명예회장)

3차 2009년 9월 15일(화), 서울대 치과병원 직원식당 회의실
연제 : “북한치과진료” (이 병태 명예회장)

4차 2009년 11월 17일(화), 함춘원
연제 :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의 민족의식” (신 재의 명예회장)
* 역대회장 간담회 및 송년회
주제; 1) 대한치과의사협회 기원, 2) 치과의사학 교육
4. 이사회 : 1차: 2009년 4월 21일(화) 오전 8시, 프레스센터 지하 전통찻집
안건 : 치과의사학회 방향설정을 위한 토론회 제안의 건
임경빈 선생님께서 1968년 미공군 군사고문단 학회 증서 1점 치의학박물관에 기증

2차: 2009년 6월 23일(화) 오전 8시, 프레스센터 지하 전통찻집
안건 : 대한치과의사협회 설립일 변경 복원을 위한 공청회 실시에 대한 건

3차: 2009년 10월 20일(화) 오전 8시, 프레스센터 지하 전통찻집
안건 : 치과대학 내 치과의사학교실 개설 건의의 건.

4차: 2009년 12월 1일(화) 오전 8시, 프레스센터 지하 전통찻집
안건 :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대회 참여 및 포스터발표 내용의 건, 학회 50년사
발간 계획의 건, 학회지 합본 및 학회지 발간 준비의 건.
5. 학회지 발간 : 제 28권 1호 통권 30호, 2009년 발행

大韓齒科醫史學會

회 장 배 광식	감 사 변 영남	종신명예회장 이 한수
부 회 장 이 준규	김 평일	명예회장 김 정균
조 영수		이 병태
류 인철		박 승오
		임 경빈
		신 재의
총무재무이사 이 우철	이 사 김 종만	변 영남
학술이사 강 신익	이 사 홍 예표	직전회장 김 평일
교육이사 김 재형	이 사 홍 경택	
정보통신이사 박 영준	이 사 임 용준	
국제이사 최 창균	이 사 이 종찬	
이 사 허 정규	이 사 이 주연	
이 사 이 홍수		

학회50년사편찬위원회	김 정균(위원장)	신 재의	김 평일	이 우철
학회지편집위원회	이 병태(위원장)	조 영수	배 광식	정 진형 김 희진
의철학윤리위원회	김 수남(위원장)	권 호근	강 신익	

大韓齒科醫史學會誌

The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제28권 제1호 통권30호 2009년

Vol 28, No 1, 2009

2009년 12월 23일 인쇄

2009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배 광식

편집인 이 병태

발행소 大韓齒科醫史學會 110-768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보존과

전 화 2072-1634

전 송 2072-3859

인 쇄 동광문화사

大韓齒科醫史學會誌 제28권 제1호 통권 30호 2009년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의 민족의식

신 재의

산업근로자 구강검진제도의 변천과정

변 영남

북한이탈주민의 구강상태 및 진료현황

신 덕재

특집 :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기념일에 대한 공청회

주제발표 1. 치협 창립기념일 제정경위

변 영남

2.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일 복원

신 재의

3. 치협과 서치의 연혁에 대한 소고

임 경빈

지정토론 1. 현행 창립기념일에 대해

조 영수

2.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에 그 법통 연원을 두어야 하는 까닭

김 평일

3. 후학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연원에 대해 드리는 다섯 가지 질문

이 주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일본 동창회 一故 데지마 아기라 회장 一週를 맞이하여

김 희경

1960년 '치과의사 면허소송' 사건

조 영수